

2016 절차 요람

Rotary



2016 절차 요람

〈절차 요람〉의 목적은 로타리 지도자들이 그들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로타리 정책과 절차를 잘 이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절차 요람〉은 3년마다 개최되는 규정심의회 종료 후에 개정, 출간되어 모든 로타리클럽과 RI 임원들에게 배부됩니다. RI 정관 문서나 기타 법적 문서 그리고 본 〈절차 요람〉에 수록된 내용 중에 그 의미나 해석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영어로 제작된 절차 요람을 공식 원문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절차 요람〉에는 다음과 같은 로타리 거버넌스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국제로타리 정관
- 국제로타리 세칙
-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 권장 로타리클럽 세칙
- 국제로타리 로타리재단의 세칙

로타리 정책과 절차는 로타리 웹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로타리 정책 규약](#)과 [로타리재단 정책 규약](#)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절차 요람〉의 보충 자료인 〈로타리 자원 가이드〉도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원 가이드는 클럽과 지구를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자원과 자료들에 대한 목록으로서 각 주제에 대한 URL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로타리 정책에 관한 질문이 있으실 경우 한국지국(www.rotary.org/cds)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존 휴코
사무총장

Copyright © 2016 Rotary International
One Rotary Center
1560 Sherman Avenue
Evanston, IL 60201-3698 USA

All rights reserved.

목차

제1부	로타리 사명 수행	
1	지도 원리	3
제2부	거버넌스 문서	
2	국제로타리 정관	11
3	국제로타리 세칙	17
4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77
5	권장 로타리클럽 세칙	89
6	국제로타리 로타리재단의 세칙	93
	색인	103

일러두기

〈절차 요람〉에 표시된 출처 표시는 다음과 같다:

- RCP* [로타리 정책 규약](http://www.rotary.org/myrotary/en/learning-reference/policies-procedures/governance-documents), 현행 이사회 정책이 수록된 문서, 영어 본문은 [www.rotary.org/myrotary/en/learning-reference/policies-procedures-governance-documents](http://www.rotary.org/myrotary/en/learning-reference/policies-procedures/governance-documents)에서 찾을 수 있다.
- TRFC* [로타리재단 정책 규약](http://www.rotary.org/myrotary/en/learning-reference/policies-procedures/governance-documents), 현행 재단 이사회 정책이 수록된 문서. 영어 본문은 [www.rotary.org/myrotary/en/learning-reference/policies-procedures-governance-documents](http://www.rotary.org/myrotary/en/learning-reference/policies-procedures/governance-documents)에서 찾을 수 있다.
- RIC 국제로타리 정관. 본 〈절차 요람〉에서 찾을 수 있다.
- RIB 국제로타리 세칙. 본 〈절차 요람〉에서 찾을 수 있다.
- SRCC 로타리재단 세칙. 본 〈절차 요람〉에서 찾을 수 있다.
- 00-00 국제대회 또는 규정심의회 결의 사항이다. 첫 번째 숫자는 이 결의안을 채택한 규정심의회와 국제대회의 개최 연도를 나타낸다. 두 번째 숫자는 채택된 제정안의 항목 번호이다. 예를 들어 (80-102)는 1980년에 개최된 규정심의회 제정안 번호 102호를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제정안 80-102”라 칭한다. RI 국제대회는 1998년도 규정심의회 결정에 따라 입법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지만, 그 이전에 취해진 조치들은 여전히 절차 요람에 수록된다.
- *참조:** RI 이사회와 재단 이사회는 매년 수 차례의 회합을 열고 RI 정책과 재단 정책을 개정한다. 따라서, 본 책자에 인용된 RCP와 TRFC의 내용이나 숫자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가장 최근의 정보는 rotary.org 를 방문하여 [거버넌스 문서](#)의 로타리 정책 규약과 로타리재단 정책 규약을 참조한다.

제1부

로타리 사명 수행

1 지도 원리

자신이 보유한 기술과 열정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리더들이 함께한 로타리의 100년 역사는 전세계 로타리안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한다. 로타리클럽 및 지구는 로타리의 사명 증진을 위해 그리고 프로페셔널리즘과 봉사에 대한 헌신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거버넌스 문서 외에도 로타리의 기본 원칙과 가치 성명서를 숙지해야 한다. 다음은 로타리안과 로타리클럽이 로타리에의 동참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치 성명서와 기본 원칙 중 선별된 내용이다. 또한 로타리 웹사이트의 [거버넌스 문서](#) 페이지에서 로타리 자원 가이드도 보충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가이드는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참조 자료들의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1923년 사회봉사 성명서

다음은 1923년 국제대회에서 채택된 사회봉사에 대한 성명서로, 이후 여러 대회를 거치며 수정되었으며 본 성명서의 역사적 가치를 감안하여 절차요람에 수록했다. (RCP 8.040.2)

로타리에서 사회봉사는 로타리안이 개인생활이나 사업 및 지역사회 활동에 있어서 항상 봉사의 이상을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봉사의 이상을 실천함에 있어 많은 클럽들이 회원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개발해왔다. 로타리안과 로타리클럽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로타리의 방침을 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확고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 1) 로타리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욕망과 남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의무 및 그에 따른 충동 사이에서 항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삶의 철학이다. 이는 '가장 훌륭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거두어 들인다'는 실질적인 윤리 원칙을 기초로 하는 '초아의 봉사' 철학이다.*
- 2) 로타리클럽은 주로 로타리의 봉사 철학을 받아들이고 다음과 같은 일을 추구하는 사업가 및 직업인을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첫째, 직업과 인생에 있어 성공과 행복의 진정한 기초인 봉사의 원리를 집단적으로 함께 연구한다. 둘째, 자기 자신과 지역사회에 봉사의 원리를 로타리안 전원이 함께 실질적으로 보여준다. 셋째, 각자 개인적으로 봉사의 원리를 사업과 일상 생활에서 실천한다. 넷째,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생생한 교훈과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로타리안은 물론 비회원도 봉사의 원리와 실천을 받아들일도록 고취한다.

- 3) RI는 다음을 위하여 존재하는 단체이다.
 - 가) 로타리 봉사 이상의 수호, 발전 및 세계적인 확산
 - 나) 로타리클럽의 설립, 격려, 지원 및 관리 감독
 - 다) 로타리클럽의 문제점을 연구하기 위한 일종의 정보 교환소로서, 각 클럽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강제성을 띠지 않은 유익한 제안을 통해 각 클럽의 운영 방법과 사회봉사 활동의 표준화를 모색한다. 사회봉사 활동의 경우, 이미 많은 클럽들에

* RI의 두 번째 모토를 '가장 훌륭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거두어 들인다'로 수정한 규정심의회 결의안 10-165를 채택.

의해 널리 그 가치가 입증되고 RI 정관에 제시된 로타리 강령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만 그 표준화를 추진한다.

- 4) 봉사하는 사람은 실천해야 하므로, 로타리는 단순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며, 로타리 철학 또한 주관적인 철학이 아니라 객관적인 활동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리고 로타리안 개개인과 로타리클럽은 봉사의 원리를 실천하여야 한다. 따라서 로타리클럽의 단체 활동은 여기에 규정된 지침에 따라 권장된다. 각 로타리클럽은 매 회계연도마다 하나의 주요 사회봉사 활동을 후원하되, 가급적 매년 그 활동의 성격을 달리하고 그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활동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에 바탕을 두며 클럽 회원 모두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물론 이에 앞서 각 클럽은 클럽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사회봉사를 하도록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
- 5) 각 로타리클럽은 지역사회에 적합한 사회봉사 활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자율권을 갖지만, 로타리 강령의 취지에서 벗어나거나 로타리클럽이 조직된 주 목적을 저해하는 봉사 활동은 금해야 한다. RI는 전반적인 봉사 활동을 연구하고 표준화하여 발전시키며 그에 대해 유용한 제안을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클럽에게도 특정한 사회봉사 활동을 지시하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
- 6) 각 로타리클럽이 사회봉사 활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권장된다.
 - 가) 로타리는 그 회원 수가 제한적이므로, 시민 전체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광범위한 사회봉사 활동은 지역사회 전체를 대변하고 이를 위해 활동하는 적절한 시민 단체나 여타 조직이 없는 지역에서만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상공회의소가 있는 곳에서 로타리클럽이 그 기능을 침해하거나 대신 맡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로타리안은 봉사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이에 속달한 개인으로서 상공회의소의 일원이 되어 활동할 수 있으며, 그 지역사회의 시민으로서 모든 다른 선량한 시민들과 함께 전반적인 사회봉사 활동에 관심을 갖고, 능력이 허락하는 한 자금 조달과 봉사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 나) 일반적으로 어느 로타리클럽이건 특정 후원 사업을 완수하는 책임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떠맡을 준비나 의지 없이는 그 사업이 아무리 유익한 활동이라 할지라도 이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 다) 로타리클럽이 봉사 활동을 선택할 때 홍보가 그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로타리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한 방법으로서 클럽이 훌륭하게 수행한 유익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홍보 활동을 해야 한다.
 - 라) 로타리클럽은 활동의 중복을 피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이미 다른 단체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 마) 로타리클럽이 기존 단체들과 협력하여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존 단체의 능력이 목적 달성에 불충분한 경우 필요에 따라 새로운 단체를 만들 수 있다. 로타리클럽이 중복되는 신규 단체를 만들기 보다는 기존 단체를 개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바) 로타리클럽은 모든 활동 중에서 선전자로서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며 최대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로타리클럽은 지역사회 문제점을 찾아 그것이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대처 방안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해결할 필요성을 인식시켜 지역사회 전체가 책임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로타

리클럽만이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한 로타리클럽은 그 사업을 시작하고 주도하여 이끌어가되, 해당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모든 단체의 협력을 얻어야 하며, 로타리클럽 자체의 공로를 최소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협력 단체에 모든 공로를 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 사) 일반적으로 모든 로타리안 개개인의 노력이 요구되는 봉사 활동이 클럽의 단체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보다 로타리의 근본 취지에 보다 잘 부합된다. 이는 로타리 클럽의 사회봉사 활동이 회원들에게 봉사를 훈련시키기 위한 실습 기회로만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RCP 8.040.1., 23-34, 26-6, 36-15, 51-9, 66-49)

1992년 사회봉사 성명서

1992년 규정심의회에서 사회봉사에 대한 다음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로타리 사회봉사는 모든 로타리안에게 봉사의 이상을 개인생활과 사업, 그리고 지역사회 생활에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증진시킨다.

봉사의 이상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로타리클럽이 실시하는 여러 활동들은 훌륭한 봉사의 기회를 회원에게 제공해왔다. 로타리안을 위한 지침, 나아가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로타리의 방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인정한다.

사회봉사는 모든 로타리안이 '초아의 봉사'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다. 사회봉사는 모든 로타리안과 로타리클럽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익에 봉사하기 위한 헌신이며 사회적 책임이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클럽에게 다음이 권장된다.

- 1) 지역사회 내에서 봉사의 기회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평가에 클럽 회원을 참여시킨다.
- 2) 사회봉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원 각각의 독특한 취미와 직업상의 재능을 활용한다.
- 3) 모든 사회봉사 활동은 규모에 관계없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합하며 지역사회 내에서의 클럽의 위치와 능력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 4) 인터랙트클럽, 로타랙트클럽, 로타리 지역사회 봉사단 및 기타 이들이 후원하는 각종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회봉사에 기울이는 노력을 조율한다.
- 5) 국제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로타리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를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한다.
- 6)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고 가능한 경우, 필요한 자원 제공을 포함하여 지역사회를 참여시킨다.
- 7) 사회봉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RI 방침에 따라 다른 단체들과 협조한다.
- 8) 사회봉사 프로젝트에 대한 일반인의 적절한 이해를 얻도록 한다.
- 9) 다른 단체들이 사회봉사 활동에 동참하도록 권장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 10) 적절한 경우 프로젝트를 지속시키는 책임을 지역사회와 다른 봉사 단체, 기타 기관에 넘김으로써 로타리클럽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한다.

전세계 로타리클럽의 연합체인 RI는 사회봉사의 필요성 및 봉사 활동에 관한 소식을 전달할 책임이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로타리안, 로타리클럽 및 지구의 일치된 노력을 통해 로타리 강령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수시로 제안할 책임이 있다. (92-286)

핵심 가치

로타리는 로타리안으로서 갖추어야 할 5대 기본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로타리 전략계획의 일부인 핵심 가치로서 2007년에 채택하였다. 이러한 핵심 가치는 이후 이사회에 의해 재확인되었으며, 전세계 로타리안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RCP 26.010.2.) 국제로타리의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다:

- 친목
- 정직
- 다양성
- 봉사
- 리더십

핵심 가치에 대한 설명은 로타리 [웹사이트](#)를 참조한다.

‘네 가지 표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 1) 진실한가?
- 2) 모두에게 공평한가?
- 3)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 4) 모두에게 유익한가?

‘네 가지 표준’은 1932년에 허버트 J. 테일러에 의해 1932년에 창안되었으며, 테일러는 이후 국제로타리 회장을 역임했다. (RCP 33.070.)*

로타리 강령

로타리의 목적은 봉사의 이상을 모든 가치 있는 사업 활동의 기초가 되도록 고취하고 육성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힘써 행하는 데 있다:

첫째, 봉사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우의 범위를 넓힌다.

둘째, 사업과 전문직업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진가를 인식하며, 로타리안 각자는 자기 직업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직업의 품위를 높인다.

셋째, 로타리안 각자의 개인 생활이나 사업 활동 및 사회 생활에서 봉사의 이상을 실천한다.

넷째, 봉사의 이상으로 결합된 사업인과 전문직업인들은 세계적 우의를 통하여 국제간의 이해와 친선과 평화를 증진한다. (RIC 4, SRCC 5)

*‘네 가지 표준’의 전제 및 사용

‘네 가지 표준’을 전제 또는 사용하는 유일한 목적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높은 도덕적 수준을 정립하고 유지하는 데 있다. ‘네 가지 표준’을 판매나 이익을 늘리기 위한 광고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네 가지 표준’을 적용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회사, 단체, 기관의 문헌 또는 편지지 상단에 이 문구를 삽입할 수 있다. ‘네 가지 표준’의 사용은 상기에 명기된 형식을 따라야 한다.

5대 봉사 부문

로타리 봉사 부문은 로타리클럽 활동의 철학적, 실질적 근간을 이룬다:

1. 첫 번째 봉사 부문인 클럽봉사는 클럽이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회원들이 클럽 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2. 두 번째 봉사 부문인 직업봉사의 목적은 사업과 직업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진가를 인식하며, 모든 직업에서 봉사의 이상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회원들은 사업 및 직장에서 로타리의 원칙에 따라 활동하며, 클럽이 사회 문제와 필요를 해소하고자 실시하는 프로젝트에서 직업 기술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3. 세 번째 봉사 부문인 사회봉사는 클럽이 속한 지역사회 또는 도시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펼치는 클럽 회원들의 다양한 봉사 활동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 다른 자원봉사자나 단체와 함께 활동한다.
4. 네 번째 봉사 부문인 국제봉사는 로타리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돕기 위한 클럽의 모든 활동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그들과의 서신 연락이나 대화를 통하여 그 나라의 국민과 문화, 관습, 업적, 염원, 문제 등에 익숙해짐으로써 국제 이해와 선의 그리고 평화를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5. 다섯 번째 봉사 부문인 청소년봉사는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이 리더십 개발 활동, 국내외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 참여, 그리고 세계 평화와 이해 증진에 기여하는 교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달성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증진시킨다. (SRCC 6)

로타리클럽의 목적

로타리클럽의 목적은 로타리 강령을 추구하고, 5대 봉사 부문을 바탕으로 봉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뿐 아니라 회원 증강을 통해 로타리의 발전에 기여하고 로타리재단을 지원하며, 클럽 차원을 넘어서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이다. (SRCC 3)

청소년과의 활동을 위한 행동 선언문

국제로타리는 모든 로타리 활동 참가자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활동에서 만나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신체적으로나 성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모든 로타리안과 그 배우자와 파트너, 다른 모든 자원봉사자들의 의무이다. (RCP 2.100.1.)

국제로타리 모토

‘초아의 봉사’와 ‘가장 훌륭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거두어 들인다’가 로타리의 공식 모토이며, 이 중 ‘초아의 봉사’가 로타리의 주 모토이다. (50-11, 51-9, 89-145, 01-678, 04-271, RCP 33.080.)

국제로타리 사명

타인에게 봉사하고, 정직을 고취시키며, 비즈니스와 각 직업분야 및 지역사회 리더들 간의 친교를 통해 세계이해와 친선, 평화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RCP 26.010.1)

로타리재단 모토

‘인류애의 실천’이 로타리재단의 모토이다. (TRFC 7.090.1.)

로타리재단 사명

로타리재단의 사명은 보건증진, 교육 지원 그리고 빈곤 퇴치를 통해 세계이해와 친선, 평화 증진을 이룩하려는 로타리인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TRFC 1.030.)

제2부

거버넌스
문서

2 국제로타리 정관

조	제목	페이지
1	정의	11
2	명칭 및 성격	11
3	목적	11
4	강령	11
5	회원	11
6	이사회	12
7	임원	13
8	관리	13
9	국제대회	13
10	규정심의회	14
11	회비	14
12	재단	14
13	회원의 호칭 및 휘장	14
14	세칙	14
15	해석	14
16	개정	15

국제로타리 정관

제1조 정의

국제로타리 정관과 세칙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은, 문맥상 분명히 다르게 정의할 필요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1. 이사회: 국제로타리 이사회
2. 클럽: 로타리클럽
3. 회원: 명예회원 외의 로타리클럽 회원
4. 연도: 7월 1일에 시작되는 12개월의 기간
5. RI: 국제로타리
6. 총재: 로타리 지구의 총재

제2조 명칭 및 성격

이 단체의 명칭은 ‘국제로타리(Rotary International: RI)’이다. RI는 전 세계 로타리클럽의 연합체이다.

제3조 목적

RI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로타리 강령을 촉진하는 프로그램과 활동을 추구하는 국제로타리의 회원인 로타리클럽과 지구를 지원한다.
- (나) 전 세계에 로타리를 격려, 권장, 확대, 그리고 감독한다.
- (다) RI의 활동을 조정하고 전반적으로 이를 지도한다.

제4조 강령

로타리의 목적은 봉사의 이상을 모든 가치 있는 사업 활동의 기초가 되도록 고취하고 육성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힘써 행하는 데 있다:

- 첫째, 봉사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우의 범위를 넓힌다.
- 둘째, 사업과 전문직업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진가를 인식하며, 로타리안 각자는 자기 직업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직업의 품위를 높인다.
- 셋째, 로타리안 각자의 개인 생활이나 사업 활동 및 사회 생활에서 봉사의 이상을 실천한다.
- 넷째, 봉사의 이상으로 결합된 사업인과 전문직업인들은 세계적 우의를 통하여 국제간의 이해와 친선과 평화를 증진한다.

제5조 회원

제1항 - 구성: RI의 회원은 본 정관 및 세칙에 규정된 의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클럽들로 구성된다.

제2항 - 클럽의 구성:

- (가) 클럽은 선량한 인격과 정직성 및 리더십을 갖추고, 사업이나 종사하는 직업 분야 그리고/또는 지역사회에서 평판이 좋은 성인으로서, 소속 지역사회 그리고/또는 전 세계를 위해 봉사하려는 의지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클럽 회원은 클럽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 직장 또는 주거지를 가져야 한다. 회원이 클럽의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으로부터 전출하는 경우라도, 소속 클럽의 이사회가 이를 허락하고 해당 회원이 회원 자격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경우 그 클럽의 회원 자격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 (나) 클럽은 회원들이 특정 사업이나 직업, 그리고 특정 종류의 지역사회 활동에 편중되지 않도록 회원 구성을 균형있게 유지하여야 한다. 클럽이 동일한 직업분류에 이미 5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직업분류에 더 이상의 정회원을 선출할 수 없다. 단, 회원수가 50명 이상이며 그 직업분류에 클럽 정회원의 10퍼센트 이상 초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은퇴한 회원은 직업분류의 총 회원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클럽의 직업분류 제한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직 회원, 전 회원, 로타랙터, 또는 RI 이사회가 규정한 로타리 동창의 직업분류로 인해 이들이 정회원으로 선출되는 일이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만약 회원이 자신의 직업분류를 변경시킴으로써 직업분류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클럽은 그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원을 새 직업분류의 회원으로 계속 보유할 수 있다.
- (다) RI 세칙은 클럽의 정회원과 명예회원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자격 요건을 정하여야 한다.
- (라) “클럽”이란 단어가 부적절한 의미를 지니는 국가에 소재한 로타리클럽들은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 명칭에 “클럽”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항 - 정관 및 세칙의 승인. RI 가입 증거가 수여되고 이를 수령하는 모든 클럽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본 정관과 RI 세칙, 그리고 그에 따라 개정된 모든 규정의 기속을 받으며, 그러한 규정들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수락, 승인하고, 또 동의하여야 한다.

제4항 - 예외. 본 정관과 RI 세칙 또는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의 기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로타리 이사회는 시험 프로젝트로 1,000개의 클럽 한도 내에서 본 정관 및 RI 세칙에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가진 클럽들을 RI 회원으로 영입하거나, 클럽의 재조직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시험 프로젝트의 시행 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한 시험 프로젝트 시행 종료 시, 회원으로 영입되었거나 재조직이 허용되었던 모든 클럽들은 당시에 유효한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채택해야 한다.

제6조 이사회

제1항 - 구성. 이사회는 정원은 19명이다. RI 회장은 이사회 이사인 동시에 의장이 된다. RI 차기회장도 이사회 이사이다. 나머지 17명의 이사는 세칙의 규정에 따라 지명, 선출된다.

제2항 - 권한. RI의 모든 업무와 기금은 본 정관과 RI 세칙, 그리고 1986년 일리노이 주 일반 비영리법인법 및 그 개정에 따라 이사회에 지휘 감독을 받는다. RI의 기금에 대한 그러한 지휘 감독을 행함에 있어, 이사회는 예산 또는 세칙에 의거하여 확정된 예산에 따라, 어느 회계연도라도 그 경상수입이나 일반 잉여금을 RI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이사회는 잉여금에서 지출하여야 했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다음 국제대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채가 RI의 순자산에 초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항 - 총무. RI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총무가 되나, 이사회에 의사진행에 대한 투표권은 없다.

제7조 임원

제1항 - 호칭. RI 임원은 회장, 부회장, 기타 이사, 사무총장, 재무, 지구총재 그리고 영국 및 아일랜드 RI 회장, 직전 회장, 부회장 및 명예 재무로 한다.

제2항 - 선출 방법. RI 임원은 세칙 규정에 따라 지명, 선출된다.

제8조 관리

제1항 - 영국 및 아일랜드, 샤넬 군도 그리고 아일 오브 맨 (Isle of Man)에 위치한 클럽들은 ‘영국 및 아일랜드 RI(RIBI - Rotary International in Great Britain, and Ireland)’로 불리는 관리 구역에 속하게 되며, 그들의 권한, 목적 그리고 기능 등은 RI 규정심의회와 RI 정관 및 세칙에 의해 승인된 “영국 및 아일랜드 RI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제2항 - 클럽의 관리는 이사회의 전반적인 감독하에 행해지며,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감독 형태 중 한 두 가지를 병행하되 그러한 감독은 항상 정관 및 세칙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가) 이사회에 의한 클럽 감독.

(나) 지구에 편성된 클럽인 경우, 지구총재에 의한 클럽 감독.

(다)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규정심의회가 승인한 방법에 의한 감독.

(라) 영국 및 아일랜드 RI에 의한 영국 및 아일랜드, 샤넬 군도 그리고 아일 오브 맨에 위치한 클럽들의 감독.

제3항 - RI 와 클럽들은 로타리 조직의 신속한 운영과 비용 절감을 위하여 업무 운영을 전산화할 것이 권장된다.

제9조 국제대회

제1항 - 시기 및 장소. RI 국제대회는 매년 회계 연도의 최종 3개월 기간 중 이사회가 정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개최한다. 단,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항 - 특별 국제대회. 비상사태의 경우, 회장은 이사회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 특별 국제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항 - 대표

(가) 각 클럽은 국제대회에 최소한 1명의 대의원을 보낼 권리가 있다. 회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클럽은 초과 회원 50명당 또는 그 과반수에 대하여 1명씩 추가 대의원을 보낼 수 있다. 대의원 수는 국제대회 개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 현재의 클럽 회원 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클럽은 클럽에게 부여된 1표 또는 그 이상의 투표권 행사를 한 대의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나) 각 클럽은 국제대회에 그 클럽의 대의원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을 보내 대회에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투표할 의무가 있다.

제4항 - 특별 대의원. 현재 클럽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RI 임원과 전 RI 회장은 국제대회의 특별 대의원이 된다.

제5항 - 선거인과 투표. 신임장을 가진 대의원, 합법적인 위임장 소지자, 그리고 특별 대의원 등은 국제대회의 투표 기구를 구성하는 선거인이 된다. 투표는 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제10조 규정심의회

제1항 - 목적. 규정심의회가 RI의 입법 기구가 된다.

제2항 - 일시 및 장소. 규정심의회는 매 3년마다 4월, 5 월 또는 6월 중에 개최하되, 가급적 4월에 개최하도록 한다. 심의회의 일시와 장소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그러나 이사회가 재정적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른 국가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하지 않는 한, 심의회는 RI 세계본부 인근 지역에서 개최한다.

제3항 - 절차. 심의회는 정식으로 상정된 안건들을 심의, 결정하며 그 결정은 RI 세칙에 따라 각 클럽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4항 - 대의원 자격. 심의회의 대의원의 자격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항 - 입법안 채택을 위한 임시 회의. 이사회는, 재적 이사 90 퍼센트의 투표로, 입법안 채택을 위한 규정심의회 임시 회의 개최가 요구되는 긴급사태가 발생하였다고 결의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러한 임시 회의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며, 소집 목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임시 회의에서는 긴급사태와 관련하여 이사회가 제출한 입법안에 한해서만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있다. 임시 회의에서 논의될 입법안은 RI 정관 문서에 명시된 제출 기한과 절차 등에 따르지 않아도 되나, 다만 시간이 허용하는 한, 정관상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시 회의에서 채택된 안건은 본 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추후 클럽들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비

각 클럽은 회원 1인당 RI 회비를 연 2회 납부하거나, RI 이사회가 정한 날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재단

제1항 - RI 세칙 규정에 따라, RI 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운영한다.

제2항 - RI에 접수된 모든 기부금과 금전 또는 재산의 유증 또는 이로 인한 RI의 소득, 그리고 국제대회가 승인한 RI의 잉여금은 모두 재단의 재산이 된다.

제13조 회원의 호칭 및 휘장

제1항 - 정회원. 클럽의 각 정회원은 로타리안이라고 부르며, RI의 휘장, 배지 및 기타의 기장을 착용할 수 있다.

제2항 - 명예회원. 클럽의 각 명예회원은 명예 로타리안이라고 부르며, 동 클럽의 명예회원 자격이 존속되는 동안 RI의 휘장, 배지 및 기타의 기장을 착용할 수 있다.

제14조 세칙

규정심의회는 RI의 관리를 위하여 이 정관에 저촉되지 않는 한 추가 조항을 규정한 세칙을 채택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제15조 - 해석

본 정관 및 RI 세칙, 그리고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의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이다” 등은 의무 조항이며, “할 수 있다”, “한다” 등은 보다 너그러운 허용의 뜻이 들어있다. 남성 또는 여성 인칭대명사는 남녀 모두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우

편”, “우승” 및 “우편 투표” 등의 용어에는 비용 절감과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전자우편(이메일)과 인터넷 기술을 포함한다.

제16조 개정

제1항 - 개정 요건. RI 정관은 규정심의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대의원 3분의 2의 찬성투표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제2항 - 제안자. RI 정관 개정은 클럽, 지구대회, 영국 및 아일랜드 RI심의회나 대회, 규정심의회, 또는 이사회 만이 세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3 국제로타리 세칙

조	제목	페이지
1	정의.....	17
2	국제로타리 회원 자격.....	17
3	RI 회원 자격의 포기, 정지 및 종결.....	18
4	클럽 회원 자격.....	20
5	이사회.....	21
6	임원.....	24
7	규정심의회.....	27
8	결의심의회.....	30
9	규정심의회 및 결의심의회 의원.....	31
10	국제대회.....	38
11	임원의 지명 및 선거에 관한 일반 규정.....	41
12	회장 지명 및 선거.....	43
13	이사의 지명 및 선거.....	49
14	총재 지명 및 선거.....	54
15	관리 집단 및 관리 구역 단위.....	58
16	지구.....	59
17	위원회.....	65
18	재정 사항.....	67
19	명칭 및 휘장.....	70
20	기타 회의.....	71
21	공식잡지.....	72
22	로타리 웹사이트.....	73
23	로타리재단.....	73
24	면책.....	74
25	중재와 화해.....	74
26	개정.....	75

국제로타리 세칙

제1조 정의

문맥상 명백히 다른 정의가 요구되지 않는 한, 국제로타리 세칙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1. 이사회: 국제로타리의 이사회
2. 클럽: 로타리클럽
3. 정관문서: 국제로타리 정관 및 세칙, 그리고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4. 총재: 로타리 지구의 총재
5. 회원: 명예회원 외의 로타리클럽 회원
6. RI: 국제로타리
7. RIBI: 영국 및 아일랜드의 로타리 관리 구역 단위
8. 위성 클럽: 스폰서 클럽의 회원들이 속할 수 있는 잠재적 클럽
9. 연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12개월의 기간

제2조 국제로타리 회원 자격

- 2.010. RI에 대한 가입 신청
- 2.020. 클럽의 소재지
- 2.030. 클럽에 의한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의 채택
- 2.040. 흡연
- 2.050. 클럽의 합병

2.010. RI에 대한 가입 신청

RI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클럽은 이사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와 함께 이사회가 정한 가입비를 납부한다. 입회비는 미화로 납부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액수를 클럽 소재국 통화로 납부한다. 회원 자격은 이사회가 신청서를 승인한 날짜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10.1. 신규 클럽

신규 클럽 창립을 위한 회원 수는 최소한 20명이어야 한다.

2.020. 클럽의 소재지

클럽은 신규 클럽 결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직업분류 수를 갖춘 지역에서 결성될 수 있다. 1개 이상의 클럽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역에도 신규 클럽이 결성될 수 있다. 인터랙티브 활동을 실시하는 클럽의 소재지는 전 세계이거나 클럽 이사회가 결정한 바를 따른다.

2.030. 클럽에 의한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의 채택

회원으로 가입한 모든 클럽은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채택하여야 한다.

2.030.1. 표준 클럽 정관의 개정

표준 클럽 정관은 정관문서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이에 따른 개정 사항은 자동적으로 각 클럽 정관에 적용된다.

2.030.2. 1922년 6월 6일 전에 창립된 클럽

1922년 6월 6일 전에 창립된 모든 클럽은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채택하여야 한다. 단, 해당 클럽 중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과 상이한 정관을 갖고 있는 클럽은 1989년 12월 31일까지 상이한 부분의 정확한 원문을 이사회에 송부해 확인을 받았을 경우 기존 정관하에 활동을 지속해갈 권한을 갖는다. 각 클럽 특유의 조항은 해당 클럽의 표준 클럽 정관에 부록의 형식으로 추가되며, 그 내용은 개정된 표준 클럽 정관에 보다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클럽에 의해 개정될 수 없다.

2.030.3. 이사회에 표준 클럽 정관에 대한 예외

이사회는 표준 클럽 정관과 일치하지 않는 개별 클럽의 정관 조항이 RI 정관 및 세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동 조항을 승인할 수 있다. 이러한 승인은 지역 법규나 관습에 따르기 위한 경우 혹은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만 주어진다. 승인은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2.040. 흡연

흡연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회원 개개인과 내빈들은 RI의 이름하에 개최되는 모임 및 기타 행사 중에 흡연을 자제할 것이 권장된다.

2.050. 클럽의 합병

동일 지구 내에서 합병을 추진하고자 하는 2개 이상의 클럽은 이사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당 클럽 모두 RI에 대한 재정적 및 기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상태여야 한다. 1개 이상의 클럽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역에도 합병을 통해 클럽이 결성될 수 있다. 합병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각 클럽이 합병에 동의했음을 보이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역사적 기록이나 역사상의 목적을 위해 새로 합병된 클럽이 합병 대상 클럽 1개 혹은 전부의 명칭, 창립일자, 휘장 및 기타 표식을 유지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제3조 RI 회원 자격의 포기, 정지 및 종결

- 3.010. 클럽의 RI 탈퇴
- 3.020. 클럽의 재결성
- 3.030. 클럽에 대한 이사회에의 징계, 자격 정지 및 자격 종결 권한
- 3.040. 자격이 정지된 클럽의 권리 포기
- 3.050. 자격이 종결된 클럽의 권리 포기

3.010. 클럽의 RI 탈퇴

RI에 대한 재정적 및 기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클럽은 RI에서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이사회가 이를 수락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탈퇴 클럽의 RI 가입증서는 사무총장에게 반납되어야 한다.

3.020. 클럽의 재결성

자격이 종결된 클럽이 재결성되거나 동일한 지역에 신규 클럽이 결성되는 경우, 이사회는 동 클럽이 가입 조건으로 가입비나 이전 클럽의 RI 체납금을 납부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3.030. 클럽에 대한 이사회에의 징계, 자격 정지 및 자격 종결 권한

3.030.1. 회비 미납 또는 회원 미보고에 따른 자격 정지 및 종결

이사회는 회비나 RI에 대한 기타 의무적 납부액, 혹은 지구 기금에 대한 정해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클럽의 RI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종결시킬 수 있다. 이사회는 제때에 클럽 멤버십 변동을 보고하지 않는 클럽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3.030.2. 기능 상실에 따른 자격 종결

이사회는 그 어떠한 이유로든 해산되거나,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지 않거나, 혹은 그 외의 방식으로 기능을 상실한 클럽의 RI 회원 자격을 종결시킬 수 있다. 기능 상실로 클럽의 자격을 종결시키기 전에, 이사회는 지구총재에게 자격 종결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3.030.3. 재단의 스튜어드십 정책 위반에 따른 자격 정지 및 종결

이사회는 로타리재단 기금을 유용하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로타리재단의 스튜어드십 정책을 위반한 개인을 회원으로 보유한 클럽의 RI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종결시킬 수 있다.

3.030.4. 소송에 따른 자격 종결

이사회는 정관 문서에 명시된 모든 시정 방안을 시도하기 이전에 RI 이사, 재단 이사, 임원, 직원 등을 포함하여 RI와 로타리재단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시작하거나 지속하는 클럽, 또는 이러한 소송을 시작하거나 지속하는 개인을 회원으로 존속시키는 클럽에 대해 그 회원 자격을 정지 혹은 종결시킬 수 있다.

3.030.5. 청소년 보호 법규 위반에 따른 자격 정지 및 종결

이사회는 로타리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해 소속 회원이 청소년 보호 법규를 위반하였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을 시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클럽의 RI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종결시킬 수 있다.

3.030.6. 정당한 사유에 의한 징계

이사회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 클럽을 징계할 수 있되, 이를 위해 반드시 징계 사유와 청문회 개최 일시 및 장소가 명시된 문서를 청문회 개최로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해당 클럽의 회장과 총무 앞으로 우송하여야 한다. 클럽이 소속된 지구의 총재 혹은 총재가 지명한 전 총재가 지구 경비로 이러한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다. 클럽은 청문회에서 클럽을 대표할 변호사를 선임할 권한을 갖는다. 청문회 후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클럽에 대한 징계 또는 자격 정지 조치를 내리거나, 만장일치로 클럽을 퇴출시킬 수 있다.

3.030.7. 자격 정지 기간

이사회는 미납되었던 회비나 RI에 대한 기타 의무적 납부액 혹은 지구 기금에 대한 정해진 분담금이 완불된 경우, 로타리재단 기금을 유용하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로타리재단의 스튜어드십 정책을 위반한 회원의 멤버십이 종결된 경우, 로타리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제기된 청소년 보호 법규 위반 혐의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음을 보이는 증거가 제시된 경우, 또는 징계 조치를 야기한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회원 자격이 정지된 클럽을 복권시킬 수 있다. 다른 모든 경우에 있어, 6개월 이내에 자격 정지 사유가 시정되지 않을 시 이사회는 해당 클럽의 자격을 종결시키게 된다.

3.040. 자격이 정지된 클럽의 권리 포기

이사회에 의해 자격이 정지된 클럽은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RI 세칙이 허용하는 클럽의 권리를 일체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RI 정관이 허용하는 클럽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한다.

3.050. 자격이 종결된 클럽의 권리 포기

클럽은 회원 자격 종결과 함께 RI의 명칭과 휘장 및 기타 표식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상

실한다. 또한 회원 자격이 종결되는 시점부터 RI의 재산에 대한 그 어떤 소유권도 가질 수 없다. 사무총장은 이러한 전 클럽의 회원 가입 증서를 회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조 클럽 회원 자격

- 4.010. 클럽 회원의 종류
- 4.020. 정회원
- 4.030. 이적 또는 전 로타리안
- 4.040. 이중 회원
- 4.050. 명예회원
- 4.060. 공직 보유자
- 4.070. 회원 자격에 대한 제한
- 4.080. RI 직원
- 4.090. 출석보고서
- 4.100. 다 클럽 출석
- 4.110. 회원 자격 조항에 대한 예외

4.010. 클럽 회원의 종류

클럽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의 2종류의 회원을 보유할 수 있다.

4.020. 정회원

RI 정관 제5조 2항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클럽의 정회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4.030. 이적 또는 전 로타리안

클럽의 회원은 이적 회원 또는 전 회원을 정회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이적 또는 전 회원의 정회원 추천은 해당 후보자의 이전 소속 클럽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클럽의 직업분류 제한이 일시적으로 초과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적 또는 전 회원의 직업분류로 인해 동 후보자의 정회원 선출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타 클럽에 채무를 진 후보자는 회원 자격을 갖지 못한다. 전 회원을 입회시키려는 클럽은 반드시 동 후보자에게 이전 소속 클럽으로부터 재정적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증빙서류를 받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적 또는 전 로타리안을 정회원으로 입회시키기 위해서는 이전 소속 클럽의 이사 회로부터 해당 후보자가 동 클럽의 회원이었음을 확인하는 증서가 수령되어야 한다. 클럽은 현 회원 또는 전 회원이 타 클럽에서 회원 후보로 고려되는 것과 관련하여 동 클럽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재정적인 채무의 유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증빙서류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회원은 현 또는 전 클럽에 대한 채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4.040. 이중 회원

본 클럽과 그 위성클럽일 경우를 제외하고, 그 어떤 사람도 2개의 클럽에서 동시에 정회원 자격을 보유할 수 없다. 그 어떤 사람도 동일한 클럽에서 동시에 정회원과 명예회원 자격을 보유할 수 없다.

4.050. 명예회원

4.050.1. 명예회원의 자격요건

로타리의 이념을 증진하는 데 탁월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로타리의 대의를 지원함에 따라 로타리의 친구로 간주되는 사람은 1개 이상의 클럽에서 명예회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명예회원 기간은 해당 회원이 소속된 클럽의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4.050.2. 권리 및 특전

명예회원은 회비를 면제받되, 클럽 내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클럽의 어떤 직책도 보유할 수 없다. 명예회원은 직업분류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소속 클럽의 모든 회합에 참석하고 클럽의 다른 모든 특전을 누릴 수 있다. 명예회원은 로타리안의 초대 없이 타 클럽을 방문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소속 클럽 외의 클럽에서 어떤 권리나 특전도 행사할 수 없다.

4.060. 공직 보유자

지정된 기간 동안 공직을 수행하도록 선출 또는 임명된 사람은 해당 공직의 직업분류하에 클럽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다. 단, 이 제한은 학교, 대학 및 기타 교육기관에 재직하고 있거나 법관으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클럽의 정회원이 지정된 기간 동안 공직을 수행하도록 선출 또는 임명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기존 직업분류에 의거하여 정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4.070. 회원 자격에 대한 제한

제2.030.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RI 회원 가입일자와 관계없이 그 어떤 클럽도 정관 조항을 통하여 혹은 그 외의 방식을 사용하여 성별,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적 지향을 근거로 회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RI 정관 또는 세칙에 명백히 규정되지 않은 회원 자격요건을 부과할 수 없다. 본 조항에 위배되는 클럽 정관 조항이나 부과된 기타 조건 일체는 무효이며 효력을 갖지 못한다.

4.080. RI 직원

모든 클럽은 RI에 의해 고용된 직원을 회원으로 보유할 수 있다.

4.090. 출석보고서

각 클럽은 매월 마지막 정기모임 후 15일 이내에 지구총재에게 월별 출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구에 소속되지 않은 클럽은 사무총장에게 동 출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100. 타 클럽 출석

모든 회원은 타 클럽 또는 위성클럽의 정기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특전을 갖는다. 단, 과거에 정당한 사유로 본인의 회원 자격을 종결시킨 클럽의 모임에는 참석할 수 없다.

4.110. 회원 자격 조항에 대한 예외

클럽은 본 세칙의 제4.010. 및 4.030~4.060.항에 부합하지 않는 규칙 또는 요건을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 또는 요건은 동 세칙 조항들에 명시된 규칙 또는 요건을 대체한다.

제5조 이사회**5.010. 이사회 임무****5.020. 이사회 결의사항의 공개****5.030. 이사회 결의에 대한 이의 제기****5.040. 이사회 권한****5.050. 이사회 회의****5.060. 통신수단을 통한 투표****5.070. 집행위원회****5.080. 이사직의 공석**

5.010. 이사회회의 임무

이사회회는 RI의 목적 증진, 로타리 강령의 실현, 로타리의 근본 원리에 대한 연구 및 교육, 로타리의 이념과 윤리 및 고유한 특성의 보존, 전 세계에 걸친 로타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이라든가 무엇이든 수행할 책임을 진다. 이사회회는 국제로타리 정관 제3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 계획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사회회는 각 존의 전략 계획 실행을 총괄 감독하며, 매 규정심의회에서 전략 계획의 추진 경과를 보고한다.

5.020. 이사회 결의사항의 공개

이사회 회의 및 결의에 대한 의사록 일체는 해당 회의 또는 결의 후 60일 이내에 로타리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모든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식 기록상 의사록에 첨부된 모든 부록 역시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되어야 한다. 단, 이사회가 기밀사항이거나 소유권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자료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5.030. 이사회 결의에 대한 이의 제기

이사회 결의에 대한 이의 제기는 이사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 규정심의회 지구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우편 투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의 신청은 한 클럽이 최소 24개 타 클럽의 동의를 얻어 정식 절차를 통해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동의하는 클럽들의 절반 이상이 이의 신청 클럽의 지구와 다른 지구에 소재하여야 한다. 이의 신청과 이에 대한 동의는 해당 이사회 결의가 있는 후 4개월 이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은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우편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 신청은 클럽의 정기모임에서 정식으로 채택되고 회장과 총무에 의해 증명된 결의안의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우편 투표에 있어 지구 대의원들은 해당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할 것인지 그 여부만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의 신청이 차기 규정심의회 개최일 전 3개월 이내에 접수되는 경우 이는 규정심의회에 상정되어 이사회 결의의 유효 여부가 결정된다.

5.040. 이사회회의 권한

5.040.1. RI 업무의 지휘 및 감독

이사회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RI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 (가) 로타리의 정책을 수립한다.
- (나) 사무총장의 정책 집행을 평가한다.
- (다) 정관 및 세칙, 그리고 1986년의 일리노이 주 일반 비영리법인법과 그 개정 조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에 부여된 기타 권한을 행사한다.

5.040.2. 임원과 위원회의 통제 및 감독

이사회회는 RI의 모든 임원, 차기 임원, 차차기 임원, 그리고 위원회를 통제하고 감독한다. 이사회회는 청문회를 거쳐 정당한 사유로 임원이나 차기 임원, 차차기 임원, 또는 위원회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해임 대상자에게는 청문회가 열리기 최소한 60일 전까지 해임 사유를 담은 서면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통지서에는 청문회 개최 일시와 장소가 명시되어야 하며, 그 전달을 위해 인편이나 우편, 또는 기타 신속한 통신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해임 대상자는 청문회에서 본인을 대표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임원, 차기 임원, 차차기 임원, 또는 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기 위한 투표는 이사회 전체의 3분의 2가 찬성하여야만 통과될 수 있다. 이사회회는 또한 제6.120.항에 규정된 추가적 권한을 갖는다.

5.040.3. RI 전략 계획 실행에 대한 감독

각 이사는 자신이 선출된 존과 해당 분할/연계 존의 RI 전략 계획 실행을 감독한다.

5.050. 이사회 회의**5.050.1. 시간, 장소 및 통지**

이사회는 이사회가 결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또는 회장의 소집에 의해 회의를 갖는다. 사무총장은 통지 절차가 생략되지 않는 한 회의 시작일로부터 최소한 30일 전까지 모든 이사들에게 회의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사회 회의는 매년 적어도 2회 이상 개최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이사들이 직접 모이는 회의 대신, 텔레컨퍼런스, 인터넷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 장비를 활용하여 공식 회의를 가질 수 있다.

5.050.2. 정족수

모든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족수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로 한다. 단, RI 정관 또는 세칙에 더 많은 인원의 투표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안은 예외로 한다.

5.050.3. 연도별 첫 번째 회의

차기 이사회는 연례 국제대회 직후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 시간과 장소는 차기 회장이 지정한다. 동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은 7월 1일 이후에 이사회 회의를 통해 또는 제 5.060.항에 명시된 방법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승인이 있는 후에야 효력을 갖게 된다.

5.050.4. 추가 참석자

회장 피지명자는 이사회 회의에 투표권이 없는 멤버로 참석한다.

5.060. 통신수단을 통한 투표**5.060.1. 비공식 회의**

이사들은 참여자 전원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텔레컨퍼런스용 전화기, 인터넷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 장비를 활용하여 이사회 회의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회의에 참여하는 이사는 해당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060.2. 비공식 의결

이사회는 직접 모이지 않더라도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 서면 동의에 의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5.070. 집행위원회

이사회는 당연직을 포함한 이사회 구성원 중 최소 5명 최대 7명으로 이루어진 집행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적어도 매년 사무총장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사회 회의 사이의 기간에 이사회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권한은 RI 정책이 확립되어 있는 사안에 국한된다. 집행위원회는 본 조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위임 사항에 따라 기능을 수행한다.

5.080. 이사직의 공석**5.080.1. 교체 이사**

어떠한 이유로든 이사직이 공석이 될 경우, 이사회는 해당 이사가 선출된 존(또는 존 내의 구역)에서 같은 시기에 선임된 교체 이사를 남은 임기 동안의 이사로 선출한다.

5.080.2. 교체 이사의 이사직 수행 불능

어떠한 이유로든 교체 이사가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사회의 나머지 구성원들이

공석이 생긴 존(또는 존 내의 구역)에서 새로 이사를 선출한다. 투표는 회장의 결정에 따라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 혹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시된다.

제6조 임원

- 6.010. 국제대회에서의 임원 선출
- 6.020. 부회장 및 재무의 선임
- 6.030. 사무총장의 선출 및 임기
- 6.040. 이사의 재선 불가
- 6.050. 임원의 자격요건
- 6.060. 임기
- 6.070. 회장직의 공석
- 6.080. 차기 회장직의 공석
- 6.090. 부회장직 또는 재무직의 공석
- 6.100. 사무총장직의 공석
- 6.110. 장애로 인한 이사의 직무 수행 불능
- 6.120. 지구총재직의 공석
- 6.130. 임원의 보수
- 6.140. 임원의 임무

6.010. 국제대회에서의 임원 선출

연례 국제대회에서 선출되는 임원은 RI의 회장, 이사 및 지구총재, 그리고 RIBI의 회장, 부회장 및 명예 재무이다.

6.020. 부회장 및 재무의 선임

부회장과 재무는 새로 취임하는 회장이 첫 번째 이사회 회의에서 임기 2년차 이사들 중에서 선임하며, 각각 7월 1일부터 1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6.030. 사무총장의 선출 및 임기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의해 선출되며 그 임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선출은 현임 사무총장 임기 마지막 연도의 3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신임 사무총장의 임기는 선출 이후의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사무총장은 재선출될 수 있다.

6.040. 이사의 재선 불가

본 세칙 규정이나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사로서의 전체 임기를 마친 사람은 회장이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

6.050. 임원의 자격요건

6.050.1. 클럽 회원

RI의 각 임원은 클럽의 회원으로서 클럽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6.050.2. 회장

RI의 이사로서 전체 임기를 마친 사람만이 RI 회장 후보자로 지명될 수 있다. 단, 전체 임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이사회가 본 항의 취지를 충족시킨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6.050.3. 이사

RI의 지구총재로서 전체 임기를 마친 후 최소한 3년이 경과된 사람만이 RI 이사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다. (단, 전체 임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이사회가 본 항의 취지를 충족시킨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후보자는 추천되기 전 36개월의 기간 동안 최소한 2개 이상의 연수회와 1개 이상의 국제대회에 참석하였어야 한다.

6.060. 임기**6.060.1. 임원**

회장, 이사, 지구총재를 제외한 각 임원의 임기는 선출 이후의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1년의 임기 동안 혹은 후임자가 정식으로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모든 이사는 2년의 임기 동안 혹은 후임자가 정식으로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6.060.2. 차기 회장의 직책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선출된 다음 연도에 차기 회장 및 이사회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차기 회장은 부회장으로 선임될 수 없으며, 차기 회장으로 1년의 임기를 마친 후 회장으로 취임한다.

6.060.3. 이사의 직책

이사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 연도의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6.070. 회장직의 공석

회장직이 공석이 될 경우, 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고 나머지 이사회 구성원들 중에서 새로운 부회장을 선임한다. 이사회의 공석은 본 세칙 제5.080.항에 따라 충원된다.

6.070.1. 회장직 및 부회장직의 동시 공석

회장직과 부회장직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경우, 이사회는 (차기 회장을 제외한)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 그 회장이 새로운 부회장을 선임한다. 이사회의 공석은 본 세칙 제5.080.항에 따라 충원된다.

6.080. 차기 회장직의 공석**6.080.1. 차기 국제대회 전의 공석**

차기 국제대회 폐회 전에 차기 회장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 회장 지명위원회는 해당 차기 회장이 회장으로 재임하기로 예정되었던 연도에 회장직을 맡을 새로운 회장 피지명자를 선출한다. 이러한 선출 절차는 예정된 지명위원회의 정규 회의에서 또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회의 소집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우편 투표나 기타 신속한 통신수단을 통해 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6.080.2. 지명위원회 절차에 의한 충원

지명위원회는 제12.050. 및 12.060.항에 따라 선출된 회장 후보자를 새로운 회장 피지명자로 지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지명위원회는 새로운 차기 회장 피지명자를 선출해야 한다.

6.080.3. 회장의 공석 충원 의무

회장은 차기 회장직의 공석을 충원하기 위한 지명 절차를 결정한다. 이러한 절차에는 클럽들에게 지명위원회의 보고서를 전달하여 클럽들에 의한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규정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제12.060., 12.070. 및 12.080.항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공석이 생긴 일자가 국제대회에 근접해

있어 지명위원회 보고서를 모든 클럽들에게 우송하여 국제대회 개최 전에 클럽들이 도전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사무총장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방식으로 지명위원회 보고 내용을 통지하며, 클럽 대표들은 국제대회장에서 직접 도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6.080.4. 취임 직전의 공석

국제대회 폐회 후 회장 취임 직전에 차기 회장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 이러한 공석은 7월 1 일부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6.070.항의 규정에 따라 충원된다.

6.080.5. 공석과 관련된 우발적 사태

회장은 본 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우발적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취해야 할 절차를 결정한다.

6.090. 부회장직 또는 재무직의 공석

부회장직이나 재무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 회장은 임기 2년차 이사 중 1명을 선임하여 잔여 임기를 채우도록 한다.

6.100. 사무총장직의 공석

사무총장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 이사회는 이사회가 정한 날로부터 최고 5년까지의 임기를 수행할 로타리안 1명을 선출한다.

6.110. 장애로 인한 이사의 직무 수행 불능

이사가 장애를 비롯한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이사회 전체의 4분의 3의 찬성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이사는 이러한 판명이 이루어진 즉시 이사직을 상실하고 본 세칙 규정에 따라 교체된다.

6.120. 지구총재직의 공석

6.120.1. 부총재

지구총재 지명위원회는 차기총재의 추천을 받아 선임 직후 연도에 활동이 가능한 전 총재 중 1명을 부총재로 선임할 수 있다. 부총재의 역할은 총재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총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총재를 대체하는 것이다. 지명위원회가 부총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차기총재가 전 총재 중에서 1명을 부총재로 선임할 수 있다.

6.120.2. 이사회와 회장의 권한

부총재가 없는 경우, 이사회는 나머지 임기 동안의 총재직 공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자격있는 로타리안을 선출할 권한을 갖는다. 이사회에 의해 공석이 충원될 때까지는 회장이 자격있는 로타리안을 총재 대행으로 임명할 수 있다.

6.120.3. 총재의 일시적인 직무 수행 불능

부총재가 없는 경우, 회장은 총재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동안 자격있는 로타리안을 총재 대행으로 임명하여 총재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6.130. 임원의 보수

사무총장은 보수를 받는 유일한 임원이다. 보수의 액수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른 임원이나 회장 피지명자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수립한 경비 정산 정책을 의거한 적절하고 서류로 증빙된 지출을 환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 감사 표시, 사례비 등을 포함한 그 어떤 지급도 이루어질 수 없다.

6.140. 임원의 임무

6.140.1. 회장

회장은 RI의 최고 임원이다. 이에 따른 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전 세계 로타리안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리더로서 활동한다.
- (나) 이사회 의장으로서 모든 이사회 회의를 주재한다.
- (다) RI를 대표하는 제1 대변인이 된다.
- (라) 모든 국제대회 및 기타 RI 국제 회의를 주재한다.
- (마) 사무총장에게 자문을 제공한다.
- (바) 이사회가 부여하는 그 외의 임무와 책임을 수행한다.

6.140.2. 차기 회장

차기 회장은 본 세칙과 이사회 이사 자격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무와 권한만을 가지되, 회장 또는 이사회에 의해 추가적인 임무를 부여받을 수 있다.

6.140.3.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RI의 최고운영책임자이다. 최고운영책임자로서, 사무총장은 이사회와 감독하에 RI의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그리고 이사회 정책의 집행과 재정 운영을 포함한 RI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회장과 이사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사무총장은 또한 이사회가 수립하는 정책을 로타리안과 로타리클럽들에게 전달한다. 사무총장은 사무국 직원의 감독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이사회에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사회 승인을 받아 동 보고서를 국제대회에 제출한다. 사무총장은 자신의 성실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 요구에 따라 보증이 수반된 일정 금액을 담보로 제공한다.

6.140.4. 재무

재무는 정기적으로 사무총장으로부터 RI 재무 정보를 수령하고 RI의 재무 관리에 대해 사무총장과 협의한다. 재무는 이사회에 적절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례 국제대회에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무는 이사회 이사 자격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무와 권한만을 가지되, 회장 또는 이사회에 의해 추가적인 임무를 부여받을 수 있다.

제7조 규정심의회

- 7.010. 입법안의 종류
- 7.020. 입법안 제안자
- 7.030. 지구의 클럽 입법안 승인
- 7.035. 제정안 및 입장성명안 제출 마감일
- 7.037. 정식으로 제안된 입법안, 하자있는 입법안
- 7.040. 입법안의 검토
- 7.050. 이사회에 의한 입법안 심사
- 7.060. 긴급 입법안의 심의

7.010. 입법안의 종류

규정심의회에서 심의되는 입법안은 제정안과 입장성명안에 한한다. 정관문서를 개정하기 위한 입법안을 제정안이라 한다. RI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입법안을 입장성명안이라 한다.

7.020. 입법안 제안자

제정안은 클럽, 지구대회, RIBI의 전체심의회 및 대회, 규정심의회, 그리고 이사회가 제안할 수 있다. 입장성명안은 이사회만이 제안할 수 있다. 이사회는 로타리재단 이사회의 사전 동의 없이 재단과 관련된 입법안을 제안할 수 없다.

7.030. 지구의 클럽 입법안 승인

클럽이 제안한 제정안은 지구대회, 지구입법회, 또는 RIBI 지구심의회에서 소속 지구 내 클럽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정안을 지구대회, 지구입법회, 또는 RIBI 지구심의회에 회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해당 제정안은 지구총재가 실시하는 우편 투표를 통해 지구 클럽들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우편 투표는 제14.040.항에 규정된 절차를 최대한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 사무총장에게 전달되는 모든 제정안에는 지구대회, 지구입법회, 또는 RIBI 지구심의회에서 혹은 우편 투표를 통해 심의되어 승인을 얻었다는 지구총재의 증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 어느 지구도 1회의 규정심의회에 대해 5개를 초과하는 제정안을 제안 또는 승인할 수 없다.

7.035. 제정안 및 입장성명안 제출 마감일

제정안은 규정심의회 개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제정안을 규정심의회 개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제안하여 사무총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 입장성명안은 규정심의회 폐회 전 언제든지 이사회에 의해 제안되어 규정심의회에서 의결될 수 있다.

7.037. 정식으로 제안된 제정안, 하자있는 제정안 또는 입장성명안

7.037.1. 정식으로 제안된 제정안

다음은 모두 충족하는 제정안은 정식으로 제안된 제정안이다:

- (가) 본 세칙 제7.035.항에 제시된 마감일까지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었다.
- (나) 입법안 제안자에 관한 세칙 제7.020.항의 요건에 부합한다.
- (다) 클럽에 의해 제안된 경우, 지구의 승인에 관한 세칙 제7.030.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 (라) 제안자가 입법안에서 다루어진 문제나 사안을 밝히고 그 대처 방안을 설명한 300단어 이하의 취지 및 효과 성명을 제공하였다.

7.037.2. 하자있는 제정안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제정안은 하자있는 제정안이다:

- (가) 서로 상충되는 2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
- (나) 정관문서의 모든 관련 부분을 개정하지 않는 경우
- (다) 해당 입법안의 채택이 현행 법규에 저촉되는 경우
- (라)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RI 정관 또는 RI 세칙에 저촉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거나, RI 세칙을 RI 정관에 저촉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 (마) 시행 또는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7.037.3. 하자있는 입장성명안

입장성명안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제안하려는 RI의 입장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이는 하자있는 입장성명안이다.

7.040. 입법안의 검토

정관 및 세칙 위원회는 규정심의회 회부를 위해 사무총장에게 제출된 모든 입법안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다:

7.040.1. 이사회를 대신해, 하자있는 입법안을 수정하기 위한 적절한 변경사항을 제안자에게 권고한다.

7.040.2. 이사회를 대신해, 내용면에서 유사한 입법안들의 제안자들에게 각각의 제안을 대체할 절충안을 권고한다.

7.040.3. 제안자들이 절충안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입법안들의 목적을 가장 잘 표현한 대체안을 이사회에 권고하여 이를 사무총장이 규정심의회에 회부하도록 한다.

7.040.4. 입법안이 정식으로 제안된 것인지 하자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이사회에 제시한다.

7.040.5. 위원회가 하자있는 것으로 판단한 입법안을 사무총장이 규정심의회에 회부하지 않을 것을 이사회에 권고한다.

7.040.6. 제9.140.2.항에 정의된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7.050. 이사회에 의한 입법안 심사

이사회는 (정관 및 세칙 위원회를 통해) 모든 입법안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입법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제안자에게 알릴 가능한 한 수정 조치를 취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7.050.1. 유사한 입법안

내용면에서 유사한 입법안이 제출되었을 경우, 이사회는 (정관 및 세칙 위원회를 통해) 제안자들에게 절충안을 권고할 수 있다. 제안자들이 이러한 절충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는 정관 및 세칙 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유사한 입법안들의 목적을 가장 잘 표현한 대체안을 규정심의회에 회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각 절충안 또는 대체안에는 절충안 또는 대체안임이 명시되어야 하며, 기존 마감일자가 적용되지 않는다.

7.050.2. 규정심의회에 회부되지 않는 입법안

이사회는 제7.040.4항에 의거한 정관 및 세칙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특정 입법안이 정식으로 제안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규정심의회에 회부하지 않도록 지시해야 한다. 또한 입법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규정심의회에 회부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사회가 이러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사무총장은 이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의 두 경우 모두, 해당 입법안이 규정심의회에서 심의되도록 하려면 제안자는 규정심의회 대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050.3. 수정안 제출 및 입법안의 규정심의회 회부

입법안에 대한 모든 수정안은 이사회가 (정관 및 세칙 위원회를 통해) 마감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규정심의회 개최 전년도 3월 31일 이전까지 제안자에 의해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7.050.2.항의 적용하에, 사무총장은 마감일까지 제출된 수정안을 포함하여 정식으로 제안된 모든 입법안을 규정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7.050.4. 입법안의 공표

사무총장은 정관 및 세칙 위원회의 검토에 따라 정식으로 제안된 것으로 인정된 모든 입법안과 그 각각에 대한 제안자의 취지 및 효과 성명을 규정심의회 개최 연도의 9월 30일 이전

까지 각 지구총재, 규정심의회 대의원, 그리고 이를 요청하는 클럽의 총무에게 1부씩 제공한다. 제출된 입법안은 로타리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7.050.5. 규정심의회에 의한 입법안 심의

규정심의회는 정식으로 제안된 입법안과 제출된 수정안을 심의하고 이에 대해 결의한다.

7.060. 긴급 입법안의 심의

이사회는 전체 이사회 3분의 2의 찬성으로 긴급상황이 발생했음을 선포하고 다음과 같이 입법안의 심의를 허가할 수 있다:

7.060.1. 규정심의회에 의한 긴급 입법안 심의

규정심의회 임시 회의에 제안된 입법안은 각 정관문서에 명시된 입법안 제출 마감일 규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시 회의에서 심의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정관문서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7.060.2. 입법안의 채택

이 조문들에 의거, 규정심의회가 긴급 입법안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출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대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조 결의심의회

8.010. 결의심의회 개최

8.020. 결의안

8.030. 결의안 제안자

8.040. 지구의 클럽 결의안 승인

8.050. 결의안 제출 마감일

8.060. 정식으로 제안된 결의안, 하자있는 결의안

8.070. 결의안의 검토

8.080. 이사회에 의한 결의안 심사

8.010. 결의심의회 개최

결의심의회는 매년 개최된다. 결의심의회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개최되어야 한다.

8.020. 결의안

결의심의회 의견을 표명하는 제안서를 결의안이라 한다.

8.030. 결의안 제안자

결의안은 클럽, 지구대회, RIBI의 전체심의회 및 대회, 그리고 이사회가 제안할 수 있다.

8.040. 지구의 클럽 결의안 승인

클럽이 제안한 결의안은 지구대회, 지구입법회, 또는 RIBI 지구심의회에서 소속 지구 내 클럽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무총장에게 전달되는 모든 결의안에는 지구대회, 지구입법회, 또는 RIBI 지구심의회에서, 혹은 우편 투표를 통해 심의되어 승인을 얻었다는 지구총재의 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8.050. 결의안 제출 마감일

결의안은 결의심의회에서 심의되기 전년도의 6월 30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결의심의회 폐회 전에는 언제든지 이사회에 의해서도 제안되어 결의심의회에서 의결될 수 있다.

8.060. 정식으로 제안된 결의안, 하자있는 결의안**8.060.1. 정식으로 제안된 결의안**

다음은 모두 충족하는 결의안은 정식으로 제안된 결의안이다:

- (가) 본 세칙 제8.050.항에 제시된 마감일까지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었다.
- (나) 결의안 제안자에 관한 세칙 제8.030.항의 요건에 부합한다.
- (다) 클럽에 의해 제안된 경우, 지구의 승인에 관한 세칙 제8.040.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8.060.2. 하자있는 결의안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결의안은 하자있는 결의안이다:

- (가) 정관문서의 조문 또는 정신에 위배되는 조치를 요하거나 그러한 의견을 표명한 경우
- (나) RI 프로그램의 범주에서 벗어난 경우

8.070. 결의안의 검토

정관 및 세칙 위원회는 결의심의회 회부를 위해 사무총장에게 제출된 모든 결의안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을 이사회에 권고할 수 있다:

8.070.1. 결의안이 정식으로 제안되었는지를 권고한다.

8.070.2. 위원회가 하자있는 것으로 판단한 결의안을 사무총장이 결의심의회에 회부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8.080. 이사회에 의한 결의안 심사

이사회는 (정관 및 세칙 위원회를 통해) 모든 결의안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결의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제안자에게 이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여야 한다.

8.080.1. 심의회에 회부되지 않는 결의안

이사회는 정관 및 세칙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특정 결의안이 정식으로 제안되지 않았거나 하자있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이를 심의회에 회부하지 않도록 지시해야 한다. 이사회가 이러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사무총장은 이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080.2. 결의심의회에 의한 결의안 심의

결의심의회는 정식으로 제안된 결의안을 심의하고 이에 대해 의결한다.

8.080.3. 결의안의 채택

결의안은 결의심의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대의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될 수 있다.

제9조 규정심의회 및 결의심의회 의원

- 9.010. 규정심의회 및 결의심의회 의원
- 9.020. 투표권을 갖는 심의회 의원의 자격요건
- 9.030. 심의회에 파견되는 지구 대의원의 임무
- 9.040. 대의원 임기
- 9.050. 임원의 직함과 임무
- 9.060. 지명위원회 절차에 의한 대의원 선출
- 9.070. 지구대회에서의 대의원 선출
- 9.080. 우편 투표에 의한 대의원 선출

- 9.090. 통지
- 9.100. 자격심사위원회
- 9.110. 무임소 의원
- 9.120. 심의회 정족수
- 9.130. 심의회 절차
- 9.140. 심의회 운영위원회, 정관 및 세칙 위원회의 임무
- 9.150. 심의회 의결사항
- 9.160. 개최지 선정
- 9.170. 심의회 임시 회의
- 9.180. 임시 규정

9.010. 규정심의회 및 결의심의회 의원

규정심의회 및 결의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투표권을 갖는 의원과 투표권을 갖지 않는 의원으로 구성된다:

9.010.1. 대의원

제9.060., 9.070. 및 9.080.항의 규정에 따라 각 지구의 클럽들은 1명의 지구 대의원을 선출한다. 지구에 소속되지 않은 클럽은 편의에 맞는 지구를 지정하여 그 대의원이 클럽을 대표하도록 한다. 대의원은 투표권을 갖는 의원이 된다.

9.010.2. 의장, 부의장 및 의사진행법 전문가

심의회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의사진행법 전문가는 심의회 개최 직전 연도에 차기 회장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며, 3년 동안 혹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투표권을 갖지 않으나, 자신이 회의를 주재하는 중 표결 결과가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표를 행사할 수 있다.

9.010.3. 정관 및 세칙 위원회

정관 및 세칙 위원회 위원은 투표권을 갖지 않는 심의회 의원으로, 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이에 따른 임무 및 책임사항은 제9.140.1. 및 9.140.2.항에 규정된 바와 같다.

9.010.4. 회장, 차기 회장, 이사 및 사무총장

회장과 차기 회장, 그 외의 이사회 구성원, 그리고 사무총장은 투표권을 갖지 않는 심의회 의원이 된다.

9.010.5. 전직 회장

RI의 모든 전직 회장들은 투표권을 갖지 않는 심의회 의원이 된다.

9.010.6. 로타리재단 이사

로타리재단 이사회에 의해 선출된 재단 이사 1명은 투표권을 갖지 않는 심의회 의원이 된다.

9.010.7. 무임소 의원

회장에 의해 임명된 경우, 최대 3명까지의 무임소 의원이 투표권을 갖지 않는 규정심의회 의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무임소 의원은 아래 제9.110.항에 규정된 임무와 책임을 지며, 심의회 의장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수행한다.

9.020. 투표권을 갖는 심의회 의원의 자격요건

9.020.1. 클럽 회원

각 심의회 의원은 클럽의 회원이어야 한다.

9.020.2. 전직 임원

각 대의원은 선출 당시 RI 임원으로서 임기를 완전히 마친 경력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구 내에 이러한 전직 임원이 없음을 지구총재가 증명하고 RI 회장이 인정한 경우 지구총재 또는 차기 총재로서 임기를 완전히 마치기 전인 로타리안이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9.020.3. 자격요건

심의회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대의원은 필요한 자격요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야 하며, 이러한 대의원의 자격요건과 임무, 책임사항을 이해하였고, 동 임무와 책임을 맡아 성실히 수행할 자격과 의지 및 능력을 지녔으며, 규정심의회 전 기간 동안 회의에 참석함은 물론 결의심의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명시한 진술서에 서명하여 이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020.4. 부적격자

투표권이 없는 심의회 의원 또는 RI, 지구, 클럽의 정규직 봉급제 직원은 투표권을 갖는 심의회 의원이 될 수 없다.

9.030. 심의회에 파견되는 지구 대의원의 임무

대의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가) 클럽의 심의회 입법안 준비 과정을 지원한다.
- (나) 지구대회 또는 기타 지구 회의에서 제안된 입법안과 결의안을 논의한다.
- (다) 지구 로타리안들의 입장과 견해를 파악해 둔다.
- (라) 심의회에 회부된 모든 입법안 및 결의안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검토하여 그에 대한 견해를 해당 심의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 (마) RI의 객관적인 입법자 역할을 수행한다.
- (바) 규정심의회 전 기간 동안 회의에 참석한다.
- (사) 결의심의회에 참여한다.
- (아) 심의회 폐회 후 심의 내용을 지구 클럽들에게 보고한다.
- (자) 지구 클럽들이 향후 심의회에 제안할 입법안 또는 결의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9.040. 대의원 임기

각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연도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대의원은 3년 동안 또한 후임자가 선출되어 확정될 때까지 봉사한다.

9.050. 임원의 직함과 임무

심의회의 임원진은 의장, 부의장, 의사진행법 전문가, 그리고 총무로 구성된다.

9.050.1. 의장

의장은 심의회의 주재자가 되며, 세칙 및 기타 해당 의사규칙에 명시된 임무와 일반적으로 의장직에 적용되는 임무를 수행한다.

9.050.2. 부의장

부의장은 의장의 결정에 따라 또는 상황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재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의장의 결정에 따라 의장을 지원한다.

9.050.3. 의사진행법 전문가

의사진행법 전문가는 의사진행 절차에 관하여 의장과 심의회에 자문을 제공한다.

9.050.4. 총무

사무총장은 심의회 의 총무가 되거나, 회장의 승인하에 다른 사람을 총무로 임명할 수 있다.

9.060. 지명위원회 절차에 의한 대의원 선출

9.060.1. 선출

대의원과 교체 대의원은 지명위원회 절차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도전 제기 및 그에 따른 선거를 포함한 지명위원회 절차는 규정심의회 개최 2년 전 연도에 시행, 완료되어야 한다. 지명위원회 절차는 본 항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4.020.항에 규정된 지구총재 지명위원회 절차에 기반하여야 한다. 대의원 후보자는 지명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9.060.2. 지명위원회 위원 선출 방식을 채택하지 못한 경우

지명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 방식을 채택하지 못한 지구는 현재 해당 지구 클럽의 회원이며 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전 지구총재 전원을 지명위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대의원 후보자는 지명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9.060.3.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의 직무 수행 불능

대의원과 교체 대의원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재는 지구 내 클럽의 다른 자격 있는 회원을 심의회 대의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9.070. 지구대회에서의 대의원 선출

9.070.1. 선출

지구가 지명위원회 절차를 활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은 해당 지구의 연례 지구대회에서, 혹은 RIBI 지구의 경우 지구심의회에서 선출될 수 있다. 선거는 규정심의회 개최 2년 전 연도에, 혹은 RIBI 지구의 경우 규정심의회 개최 2년 전 연도의 10월 1일 후에 개최되는 회의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9.070.2. 추천

클럽은 대의원으로 봉사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표명한 지구 내 클럽의 자격있는 회원 중 1명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클럽은 추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클럽 회장과 총무가 이러한 추천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추천서는 총재에게 전달하여 지구대회에 참가하는 클럽의 선거인들에게 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070.3.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의 선출

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규정심의회 및 결의심의회 대의원이 된다. 후보자가 2명 뿐일 경우,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한 후보자가 교체 대의원이 되어 대의원의 직무 불능 시에 한해 대의원 역할을 수행한다. 후보자가 3명 이상일 때 선거는 단일이양식으로 이루어지며, 이 경우 후보자 1명이 과반수를 득표한 시점에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교체 대의원이 된다. 각 클럽은 클럽의 모든 투표권을 행사할 선거인 1명을 지정해야 한다. 2표 이상의 투표권을 갖는 클럽은 모든 표를 동일한 후보자에게 행사하여야 한다. 3명 이상의 후보자에 대해 단일이양식 투표가 요구 또는 실시될 경우, 2표 이상의 투표권을 갖는 클럽은 모든 표에 후보자들에 대한 동일한 선호 순서를 명시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9.070.4. 단일 후보자

지구 내 후보자가 1명뿐일 때에는 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총재는 동 후보자

를 심의회 대의원으로 선포하며, 이와 더불어 지구 내 클럽의 자격있는 회원 중 1명을 교체 대의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9.070.5. 클럽의 대의원 추천

후보자를 추천하는 클럽이 후보자의 소속 클럽이 아닌 경우, 추천이 수락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소속 클럽이 이러한 추천에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하며, 클럽 회장과 총무가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9.080. 우편 투표에 의한 대의원 선출

9.080.1. 이사회의 우편 투표 승인

상황에 따라, 이사회는 지구가 우편 투표를 통해 심의회 대의원과 교체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재는 대의원 후보자 추천에 대한 공식 요청문을 준비하여 지구 내 모든 클럽의 총무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모든 추천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클럽 회장과 총무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천서는 총재가 정한 마감일 이전까지 총재에 의해 수령되어야 한다. 총재는 위와 같이 추천된 자격있는 후보자들이 가나다순으로 명시된 투표용지를 제작, 각 클럽에 송부해 우편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본인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총재가 정한 마감일 이전까지 서면 접수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는 투표용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각 클럽은 최소한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회원 수가 25명을 초과하는 클럽은 추가 회원 25명당 또는 그 과반수에 대하여 추가로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회원 수는 투표 예정일 이전의 가장 최근 클럽 회비 청구서 날짜를 기준으로 한 클럽의 회원 수에 의거한다. 그러나 이사회에 의해 RI 회원 자격이 정지된 클럽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총재는 본 세칙에 규정된 우편 투표 절차를 진행할 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9.080.2. 우편 투표에 의한 선출

지구대회에 출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인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도 심의회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을 우편 투표에 의해 선출하도록 결의할 수 있다. 우편 투표는 해당 연례 지구대회 바로 다음 달에 실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투표는 제9.080.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9.080.3. 클럽의 대의원 추천

후보자를 추천하는 클럽이 후보자의 소속 클럽이 아닌 경우, 추천이 수락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소속 클럽이 이러한 추천에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하며, 클럽 회장과 총무가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9.090. 통지

9.090.1. 사무총장에 대한 대의원 선출 보고

지구총재는 심의회 대의원과 교체 대의원이 선출된 직후 그 명단을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090.2. 심의회 대의원 명단 공표

사무총장은 각 심의회 개최일로부터 최소한 30일 전에 지구총재들이 보고한 대의원 명단을 각 대의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9.090.3. 의장, 부의장 및 의사진행법 전문가 명단 공표

사무총장은 의장, 부의장 그리고 의사진행법 전문가의 명단을 모든 클럽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9.100. 자격심사위원회

회장은 규정심의회에 앞서 회동할 자격심사위원회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는 각 대의원들의 신임장을 검토, 확인한다. 위원회의 모든 결의사항은 규정심의회에 의해 검토될 수 있다.

9.110. 무임소 의원

제안된 입법안들이 공표된 직후, 규정심의회 의장은 각 무임소 의원에게 입법안을 배정하여야 한다. 무임소 의원은 배정받은 모든 입법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심의가 순조로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이 중 규정심의회 토의에서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입법안이 있을 경우 그 채택에 대한 찬반 견해와 관련해 심의회에 정보를 제공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9.120. 심의회 정족수

각 심의회의 정족수는 투표권을 갖는 규정심의회 의원의 2분의 1이다. 모든 투표 의원은 투표에 회부된 각 안건에 대하여 1 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대리인에 의한 투표는 심의회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9.130. 심의회 절차

9.130.1. 의사규칙

제9.140.항의 적용하에, 각 규정심의회는 심의 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의사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은 세칙에 부합되어야 하며 자기 규정심의회에 의해 변경될 때까지 유효하다. 각 결의심의회는 심의회 운영위원회가 채택한 의사규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9.130.2. 이의 제기

의장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규정심의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의장의 결정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규정심의회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9.140. 심의회 운영위원회, 정관 및 세칙 위원회의 임무

의장, 부의장, 그리고 정관 및 세칙 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회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규정심의회 의장이 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9.140.1. 심의회 운영위원회의 임무

심의회 운영위원회는 규정심의회 의사규칙과 입법안 심의 순서를 추천하며, 결의심의회 의사규칙과 심의 순서를 채택한다. 또한 가능한 경우 규정심의회를 위해 입법안 또는 그 개정안에서 운영위원회나 규정심의회에 의해 확인된 하자를 정정하기 위한 수정안을 입안한다. 아울러 운영위원회는 규정심의회가 채택한 입법안들이 완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칙 및 표준 클럽 정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이러한 개정 내용이 명기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규정심의회에 제출한다.

9.140.2. 정관 및 세칙 위원회 위원의 추가 임무

정관 및 세칙 위원회는 입법안들이 공표되기 전에 모든 입법안들의 취지 및 효과 성명을 검토, 승인한다. 입법안 공표 직후, 규정심의회 의장은 정관 및 세칙 위원회의 각 위원에게 입법안들을 배정한다. 정관 및 세칙위원회 위원은 배정받은 모든 입법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목적과 배경, 효과, 그리고 하자 여부에 대한 정보를 규정심의회에 제공할 준비를 갖춘다.

9.150. 심의회 결의사항

9.150.1. 의장의 보고

의장은 규정심의회와 결의심의회 각각의 폐회 후 10일 이내에 해당 심의회의 결의 내용에 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사무총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9.150.2. 사무총장의 보고

사무총장은 규정심의회와 결의심의회 각각의 폐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심의회에서 채택된 모든 입법안 또는 결의안에 대한 심의회 결의에 관한 보고서를 각 클럽 총무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규정심의회 보고서에는 채택된 입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려는 클럽이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이 첨부되어야 한다.

9.150.3. 심의회 결의에 대한 반대

입법안 채택에 대한 규정심의회 결의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클럽들이 제출하는 양식은 클럽 회장의 서명 확인을 받아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사무총장에게 의해 수령되어야 한다. 이 날짜는 보고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최소한 2개월 후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규정심의회 결의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클럽들로부터 정식으로 접수된 모든 양식을 검토, 집계하여야 한다.

9.150.4. 심의회 결의의 효력 유보

클럽들이 보유한 투표권 중 최소한 5퍼센트를 대표하는 클럽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양식을 제출할 경우, 해당 입법안에 대한 심의회 결의의 효력은 유보된다.

9.150.5. 우편 투표에 의한 클럽 투표

1개 이상의 승인된 입법안의 효력이 클럽들의 반대로 유보되는 경우, 사무총장은 유보 후 1개월 이내에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각 클럽의 총무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투표용지는 효력이 유보된 입법안에 대한 심의회의 결의가 인정되어야 할지를 안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각 클럽은 최소한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회원 수가 25명을 초과하는 클럽은 추가 회원 25명당 또는 그 과반수에 대하여 추가로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회원 수는 규정심의회 폐회 전 가장 최근 클럽 회비 청구서 일자를 기준으로 한 클럽의 회원 수에 의거한다. 그러나 이사회에 의해 RI 회원 자격이 정지된 클럽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클럽의 투표용지는 반드시 클럽 회장에 의해 서명 확인되어야 하고, 투표용지에 명시된 날짜까지 사무총장에게 의해 수령되어야 한다. 이 날짜는 투표용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최소한 2개월 후여야 한다.

9.150.6. 투표위원회 회의

회장은 개표 및 집계를 위한 투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회장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회의를 갖는다. 효력이 유보된 입법안에 대한 클럽 투표는 투표용지 제출 마감일로부터 2주 내에 투표위원회에 의해 집계되어야 한다. 투표위원회는 회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5일 내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투표 결과 보고서에 서명 확인하여야 한다.

9.150.7. 투표 결과

클럽들이 정당하게 행사한 투표수의 과반수가 규정심의회 결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한 경우, 해당 입법안에 대한 심의회의 결정은 효력이 유보된 날로부터 무효화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 유보 결정이 없었던 것처럼 원상태로 복귀된다.

9.150.8. 심의회 결의의 발효일

입법안 혹은 결의안에 대한 심의회 결의는 제9.150.4.항의 규정에 따라 클럽 결정에 의해 유보되지 않는 한, 심의회 폐회 직후 7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한다.

9.160. 개최지 선정

RI 정관 제10 조 2 항에 따라, 이사회는 규정심의회 개최지 선정 시 국적만을 이유로 참석이 배제되는 로타리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9.170. 규정심의회 임시 회의

9.170.1. 통지

이사회는 RI 정관 제10 조 5 항에 따라 규정심의회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 회의 개최 및 심의할 입법안에 대한 통지는 임시 회의 개최 60일 전에 각 지구총재에게 우송되어야 한다. 지구총재는 이를 지구 내 클럽들에게 통보하고 지구를 대표하여 임시 회의에 참석할 로타리안의 성명을 가능한 한 조속히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170.2. 제정안의 채택

규정심의회 임시 회의에서의 제정안 채택은 출석 투표자 3분의 2 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9.170.3. 절차

규정심의회 임시 회의에서는 규정심의회 정규 회의에 적용되는 절차가 적용된다. 단, 다음 두 가지 사항은 예외이다.

9.170.3.1. 결의 보고서

제9.150.2.항에 의한 결의 보고서는 임시 회의 폐회 후 15일 이내에 각 클럽에 송부되어야 한다.

9.170.3.2. 결의에 대한 반대

규정심의회 임시 회의의 결정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는 보고서가 클럽에 송부된 후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9.170.4. 결의 발효일

규정심의회 임시 회의의 결정은 클럽들이 효력 유보를 위해 요구되는 수의 반대표를 제출하지 않은 한 사무총장이 결의 보고서를 송부한 지 2개월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요구되는 수의 반대 의사가 접수된 경우 임시 회의의 결의는 우편 투표에 회부되며, 그 절차는 제9.150.항의 규정을 최대한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

9.180. 임시 규정

임시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으면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0조 국제대회

10.010. 국제대회 개최 일시 및 장소

10.020. 국제대회 참가 요청

10.030. 국제대회 임원

10.040. 국제대회 대의원

10.050. 대의원의 자격 증명

10.060. 특별 대의원

10.070. 등록비

10.080. 국제대회 정족수

10.090. 자격심사 위원회

10.100. 선거인

10.110. 투표위원회

- 10.120. 임원의 선출
- 10.130. 국제대회 프로그램
- 10.140. 대의원 좌석
- 10.150. 특별 협의회

10.010. 국제대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이사회는 RI 연례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일시와 장소를 최고 10년 후에 개최될 국제대회까지 결정할 수 있고, 또 그 개최와 관련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사회는 국제대회 개최지 선정 시 단지 국적을 이유로 로타리안들의 참석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020. 국제대회 참가 요청

연례 국제대회가 개최되기 최소한 6개월 전까지 회장이 공식 국제대회 참가 요청문을 발행하고,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클럽에 우송하여야 한다. 특별 국제대회에 대한 참가 요청문은 대회 개최 60일 전까지 발행, 우송되어야 한다.

10.030. 국제대회 임원

국제대회의 임원은 회장, 차기 회장, 부회장, 재무, 사무총장, 국제대회 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고 사찰로 한다. 회장은 사찰을 임명한다.

10.040. 국제대회 대의원

10.040.1. 대의원

타 클럽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을 제외한 모든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클럽의 회원이어야 한다.

10.040.2. 교체 대의원

대의원 선출 시, 클럽은 대의원 1명당 교체 대의원 1명을 선출할 수 있다. 교체 대의원이 국제대회 참석 요청을 받았을 때 이에 응할 수 없게 되면 두 번째 교체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교체 대의원은 선출된 대의원의 부재 시에만 투표권을 행사할 권한을 갖는다. 두 번째 교체 대의원은 첫 번째 교체 대의원의 부재 시에 그를 대신할 수 있다. 교체 대의원이 대의원으로 봉사할 경우 교체 대의원은 원래의 대의원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040.3. 대의원 교체 절차

대의원 교체는 자격심사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대의원이 교체된 경우, 교체된 대의원은 국제대회가 폐회할 때까지 대의원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자격심사 위원회는 국제대회 주최 클럽 대표단에게 1개 이상의 세션에 대해 대의원을 교체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교체는 선출된 대의원이 국제대회 관리 업무로 인해 국제대회 중에 열리는 특정 세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경우, 교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자격심사 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 통지하여야 한다.

10.040.4. 대리인

대의원이나 교체 대의원을 국제대회에 파견하지 않는 클럽은 RI 정관 제9조 3(가)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은 동일한 지구 내 클럽 회원이면 누구나 될 수 있다. 소속 지구가 없는 클럽들은 어느 클럽의 회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도 무방하다.

10.050. 대의원의 자격 증명

모든 대의원과 교체 대의원 그리고 대리인의 권한은 이들이 대표하는 클럽의 회장과 총무가 서명한 증명서로 증명된다. 해당 증명서가 국제대회에서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되어야만 대의원과 교체 대의원 그리고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060. 특별 대의원

모든 RI 임원과 한 클럽의 회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 RI 회장들은 특별 대의원이 되며, 국제대회에서 표결에 회부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070. 등록비

연령이 16세 이상인 국제대회 참가자는 대회 참가 등록 신청서와 함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비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등록비를 납부하지 않은 대의원이나 대리인은 국제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10.080. 국제대회 정족수

10.080.1. 정족수

전체 클럽 수의 10분의 1을 대표하는 대의원 및 대리인들이 국제대회 정족수가 된다.

10.080.2. 정족수 미달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 문제가 제기되어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 회의의 사회자가 정한 일정 기간 동안 어떠한 투표도 실시할 수 없다. 그 기간은 만나절을 초과할 수 없다. 그 기간이 지난 후, 국제대회는 정족수 출석 여부에 상관없이 국제대회에 적절히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할 수 있다.

10.090. 자격심사 위원회

회장은 국제대회 폐회 전에 자격심사 위원회를 임명하여야 한다. 자격심사 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0.100. 선거인

공식 증명서를 가진 대의원과 대리인 그리고 특별 대의원들이 국제대회의 선거인단을 구성하며, 이들을 선거인이라고 한다.

10.110. 투표위원회

10.110.1. 임명 및 임무

회장은 국제대회 선거인들 중에서 투표위원회를 임명하여야 한다. 그러한 투표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배포 및 투표수 집계를 포함하여 국제대회의 모든 투표 활동을 관장한다. 투표위원회는 회장의 결정에 따라 최소한 5명 이상의 선거인으로 구성된다. 사무총장은 모든 투표용지 인쇄를 책임진다.

10.110.2. 임원 선출 통보

회장은 임원의 지명 및 선출 일시와 장소를 선거인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보는 국제대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0.110.3. 위원회 보고

투표위원회는 투표 결과를 국제대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모든 투표용지를 보관한다. 보고가 채택되면, 투표위원회 위원장은 국제대회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모든 투표용지를 파기하여야 한다.

10.120. 임원의 선출**10.120.1. 선거인의 투표권**

선거인들은 선출될 임원 1명당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10.120.2. 투표

모든 임원의 선출은 비밀 투표로 한다. 후보자가 3명 이상인 경우, 투표는 단일이양식으로 한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인들은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전원 만장일치의 구두 투표를 행사하겠다는 것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10.120.3. 과반수 득표

임원 후보자 혹은 피지명자가 과반수 표를 얻을 경우 선출된 것으로 선언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차점자 및 그 외 득표자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10.120.4. 국제대회에 지명서 제출

사무총장은 RI 회장, 이사, 총재, 그리고 RIBI 의 회장, 부회장, 명예 재무로 정식 지명된 피지명자들의 명단을 국제대회에 제출하여 이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130. 국제대회 프로그램

국제대회 위원회가 보고한 것으로, 이사회가 승인한 프로그램이 모든 회의의 의사일정이 된다. 프로그램은 국제대회 기간 중 이사회 3분의 2가 찬성하면 변경될 수 있다.

10.140. 대의원 좌석

투표가 필요한 본회의에는 자격심사 위원회가 정식 확인한 대의원 수와 동일한 좌석이 대의원 전용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10.150. 특별 협의회

1개 국가 또는 여러 국가에 위치한 클럽들의 로타리안들은 국제대회에서 특별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사회 또는 국제대회 측은 그러한 특별 협의회를 개최할 국가나 국가 그룹들을 수시로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대회 위원회에 그에 따른 지시를 내려야 한다. 그러한 특별 협의회에서는 관련 국가 또는 국가 그룹만의 관심사를 협의할 수 있다. 회장은 그러한 회의 소집 임원을 지명하고, 가능한 한 국제대회 절차 규정에 준하는 협의회 개최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협의회가 소집되면 협의회 의장과 총무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지명 및 선거에 관한 일반 규정**11.010. 최적적 로타리안****11.020. 임원의 지명****11.030. 자격요건****11.040. 지명 부적격자****11.050. 임원 선출****11.060. 선거 운동, 여론 조사 및 유세 지원****11.070. 선거 심사 절차****11.010. 최적적 로타리안**

최적적 로타리안들을 RI 선출직 임원으로 선출해야 한다.

11.020. 임원의 지명

RI 회장, 이사 그리고 총재의 지명은 지명위원회와 클럽이 한다.

11.030. 자격요건

모든 RI 임원 후보자나 피지명자는 클럽의 회원으로서 클럽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1.040. 지명 부적격자.

11.040.1. 지명위원회

서면으로 동의한 지명위원회의 위원, 교체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 (선출 여부에 관계없이),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가 나중에 사임하는 후보자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 등은 해당 지명위원회가 활동하는 연도 동안에는 임원으로 지명될 수 없다.

11.040.2. RI 직원.

클럽, 지구 또는 RI 의 상근 유급 직원은 사무총장직을 제외한 RI 의 어떠한 선출직에서도 봉사할 수 없다.

11.050. 임원 선출

RI의 임원은 본 세칙 제6.010 및 제10.120.항에 따라 연차 국제대회에서 선출된다.

11.060. 선거 운동, 여론 조사 및 유세 지원

RI의 선출직에 최적격 로타리안들이 선출되도록 하기 위해, 선거 운동, 여론 조사, 유세 지원 혹은 기타 활동을 통해 선출 과정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일체 금지된다. 로타리안들은 RI의 선출직을 위해 선거 운동, 여론 조사 또는 유세 지원 활동을 하거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도록 허용하여서도 안 된다. 이사회가 명백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로타리안들은 직접 또는 타인의 대리를 통해 전자매체와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한 브로슈어, 소개자료, 서신 및 기타 인쇄물을 클럽이나 클럽 회원들에게 배포 또는 회람시킬 수 없다. 후보자가 어떤 금지된 활동을 자신을 위하여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후보자는 즉각 그러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대 의사를 밝히고 그러한 행동을 중지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11.070. 선거 심사 절차

11.070.1. 이의 제기

RI 선출직 임원의 선출 절차 또는 RI 선거의 결과와 관련된 이의는 클럽에 의해 서면 제출될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의 제기는 최소한 5 개 이상의 다른 클럽들 혹은 현 RI 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거 서류를 첨부한 모든 이의 제기는 투표 결과 발표 후 21일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지구 또는 존 대회에 파견된 회장 대리도 충분한 규정 위반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회장 대리는 해당 증거를 사무총장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이사회가 수립한 절차에 따라 이의 제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070.2. 이사회 심의

이사회는 그러한 이의 제기를 신중히 심의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이의 제기를 기각하거나, 선출직 후보자를 실격시키거나 또는/동시에 향후 RI 선출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실격시키거나, 기타 이사회가 공평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후보자의 자격을 실격시키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실격 조치에 대한 해당 RI 직책과 기간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이사회는 본 세칙 제11.060.항을 위반하는 로타리안들에 대해 공평하고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한다. 이사회 결정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신속히 전달되어야 한다.

11.070.3. 동일 지구에서의 반복적인 이의 제기

본 세칙 및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조항에도 불구하고,

- (가) 지난 5년 동안 한 지구에서 제11.070.1.항에 의거한 이의 제기가 2건 이상 발생하였고, 동 기간 동안 RI 이사회가 그 중 2건 이상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 이사회는 RI 세칙 및 선거 이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여길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 한해 다음의 조치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실행할 수 있다.
1. 피지명자와 특정 후보자 혹은 후보자 전원의 자격을 선거에서 실격시키고, 지구 내 클럽에서 자격을 갖춘 개인 1명을 선출하여 봉사하게 한다.
 2. 선거 과정에 개입하였거나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지구총재나 차기 총재는 해당 직위에서 해임시킨다.
 3. 선거 과정에 개입하였거나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전 총재는 전 총재의 자격을 박탈한다.
- (나) 지난 5년 동안 한 지구에서 제11.070.1.항에 의거한 이의 제기가 3건 이상 발생하였고, 동 기간 동안 RI 이사회가 그 중 3건 이상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 이사회는 해당 지구를 해산시키고 소속 클럽들을 인근 지구에 편입시킬 수 있다. 본 세칙 제 16.010.1항의 규정은 본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11.070.4. 선거 운동 규정에 대한 후보자의 선서

선출직 후보자 추천에 사용되는 지정 양식에는 후보자가 세칙 규정을 읽고, 숙지하며, 이를 수락하고, 준수하겠다는 것을 확인하는 후보자의 서명 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11.070.5. 선거 심사 절차의 이행

로타리안과 클럽들은 임원직에 선출될 권리 혹은 RI 선거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세칙에 규정된 선거 심사 절차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 만약 로타리안 후보자나 그러한 후보자를 대신하는 클럽이 비로타리 기관이나 기타 분쟁 해결 기관의 중재를 요청하기 전에 선거 심사 절차를 준수,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동 로타리안 후보자는 해당 선거에서 실격당함은 물론, 이사회가 정한 기간 동안 어떠한 RI 선출직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자격을 잃게 된다. 이사회는 선거 심사 절차를 준수, 완료하기 이전에 비로타리 기관이나 기타 분쟁 해결 기관에 중재를 요청하는 클럽이나 로타리안에 대해 제3.030.4항에 의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회장 지명 및 선거

- 12.010. 회장 지명
- 12.020. 회장 지명위원회
- 12.030. 회장 지명위원회 위원의 선출
- 12.040. 위원회 임무 수행 절차
- 12.050. 위원회에 의한 지명
- 12.060. 위원회 보고서
- 12.070. 클럽의 추가 지명
- 12.080. 제12.070.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우발적 사태
- 12.090. 지명서의 국제대회 제출
- 12.100. 우편 투표

12.010. 회장 지명

전 회장 또는 현직 이사는 회장으로 지명될 수 없다.

12.020. 회장 지명위원회

12.020.1. 구성 방식

회장 지명위원회는 RI 이사 지명을 위하여 편성된 34개 존에서 선출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선출된다:

- (가) 짝수 연도에는 모든 홀수 번호 존에서 1명의 위원을 선출한다.
- (나) 홀수 연도에는 모든 짝수 번호 존에서 1명의 위원을 선출한다.

12.020.2. RIBI 출신 위원

RIBI 존 출신의 위원은 RIBI 전체 심의회가 결정한 방법 및 일시에 따라 해당 존 내 클럽들의 우편 투표로 선출된다. RIBI 총무는 그러한 위원의 명단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020.3. 존 소속 클럽 회원

모든 위원은 위원이 선출되는 존에 소속된 한 클럽의 회원이어야 한다.

12.020.4. 지명 부적격자

회장, 차기 회장 및 전 회장은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12.020.5. 자격요건

전 RI 이사만이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모든 지명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선출 당시 전 이사여야 한다. 단, 선출 또는 임명될 수 있는 전 이사가 없는 존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전 총재가 선출 또는 임명될 수 있으며, 그러한 전 총재는 본 세칙 제17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위원 또는 로타리재단 이사로서 최소한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을 지녀야 한다.

12.030. 회장 지명위원회 위원의 선출

12.030.1. 자격있는 후보자에 대한 통보

사무총장은 다음 연도 지명위원회에서 봉사할 자격을 갖고 있는 모든 전 이사들에게 서신을 우송하여야 한다. 그러한 서신은 3월1일과 15일 사이에 발송한다. 서신에는 전 이사가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고려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이름이 명단에 수록되기를 희망하는지 등에 대한 의사를 4월 15일까지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월 15일까지 회답이 없는 전 이사들은 위원회에서 봉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12.030.2. 1개 존에 유자격 전 이사가 1명인 경우

위원회에서 봉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격있는 전 이사가 존에 단 1명밖에 없는 경우, 회장은 그러한 전 이사를 해당 존을 대표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공표한다.

12.030.3. 1개 존에 유자격 전 이사가 2명 이상일 경우

1개 존에 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자격있는 전 이사가 2명 이상 있을 경우, 위원회의 위원과 교체 위원을 우편 투표로 선출한다. 우편 투표에 대한 절차는 아래에 기술된 규정에 따라야 한다

12.030.3.1. 투표용지 준비

사무총장은 투표용지를 준비하여야 한다. 투표는 가능하면 단일이양식으로 한다. 투표용지에는 모든 자격있는 전 이사들의 명단이 가나다순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2.030.3.2. 투표용지 서식

사무총장은 5월 15일까지 존 내 모든 클럽들에게 투표용지 1매를 우송하여야 한다. 투표용지에는 전 이사들의 성명, 소속 클럽, RI 임원 및 국제 위원회 지명 경력과 봉사 기간 등에 대한 약력과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한 투표용지는 6월 30일까지 세계본부 사무총장에게 반송되어야 한다는 안내서를 첨부하여 우송한다.

12.030.4. 클럽 투표

모든 클럽은 최소한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회원 수가 25명이 넘는 클럽은 추가 회원 25명당 또는 그 과반수에 대하여 추가로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회원 수는 투표 예정일 이전의 가장 최근 클럽 회비 청구서 일자를 기준으로 한 회원 수로 결정된다. 그러나 이사회에 의하여 RI 회원 자격이 정지된 클럽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

12.030.5. 투표위원회 회합

회장은 회장이 지명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회합을 개최하여 투표용지를 조사하고 집계할 투표위원회를 지명하여야 한다. 투표위원회의 회합은 7월 10일 이전에 개최되어야 한다. 투표위원회는 회의 폐회 후 5일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투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2.030.6. 위원과 교체 위원 공표

과반수 표를 얻은 후보자가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공표된다. 차점자는 지명위원회 교체 위원으로 공표된다. 위원과 교체 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차점자와 그 다음 득표자도 필요한 경우 고려되어야 한다. 교체 위원은 선출된 위원이 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하여 봉사한다. 존에서 동일한 득표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동수 득표 후보자들 가운데 1명을 지명위원회의 위원 또는 교체 위원으로 지명한다.

12.030.7. 공석

지명위원회에 공석이 생기는 경우, 1월 1일부로 공석이 된 존의 위원회 위원 자격을 갖춘 전 이사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이사를 역임한 전 이사가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12.030.8. 임기

지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연도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년이다. 교체 위원에게 위원회 봉사를 요청할 경우, 교체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잔여 임기 동안으로 한다.

12.030.9.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석

앞의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위원회에 공석이 생길 경우, 이사회는 위원을 지명하여 해당 공석을 충원한다. 공석 충원은 공석이 생긴 동일한 존의 클럽 출신을 지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040. 위원회 임무 수행 절차**12.040.1. 위원회 위원 명단 통보**

사무총장은 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위원 선출 후 1개월 이내에 이사회와 각 클럽에 통보하여야 한다.

12.040.2. 위원장 선출

위원회는 위원장으로 봉사할 위원 1명을 선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소집 즉시 선출한다.

12.040.3. 위원회에 명단 제출

사무총장은 매년 5월 1일과 5월 15일 사이에 RI 회장으로 봉사할 자격을 갖춘 모든 로타리안들에게 서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서신에는 그러한 로타리안들이 회장 피지명자로 고려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회장으로 봉사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자신의 이름이 명단에 수록되기를 희망하는지에 대한 의사를 6월 30일까지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월 30일까지 회답이 없는 사람들은 지명위원회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무총장은 지명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적어도 1주일 전까지 자기 회장으로 고려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위원회와 명단을 요청하는 로타리안에게 전달해야 한다.

12.050. 위원회에 의한 지명

12.050.1. 최적적 로타리안

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회장으로 봉사할 의사를 표명한 전 이사들 중에서 회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적적 로타리안을 지명하여야 한다.

12.050.2. 위원회 회의

위원회는 8월 15일 이전에 이사회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회의를 열어야 한다. 모든 후보자들에게는 이사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위원회와의 인터뷰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12.050.3. 정족수와 투표

회장 지명위원회의 정족수는 12명이다. 위원회의 모든 안건은 과반수 투표로 처리된다. 단, 회장 피지명자 선출의 경우, 최소한 10명 이상의 위원이 해당 피지명자에게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12.050.4. 회장 피지명자의 사임 및 새로운 선출 절차

회장 피지명자가 취임할 수 없게 되거나 회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그러한 피지명자는 더 이상 해당 연도 회장직에 지명 또는 선출될 수 없다. 회장은 그러한 사실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다른 자격있는 로타리안을 회장 피지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12.050.4.1. 위원회의 절차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신하여 그러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2.050.4.2. 위원회 투표 절차

그러한 절차에는 우편 투표나 다른 신속한 통신 수단에 의한 투표 또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회장이 소집하는 긴급 위원회 회의 등이 포함된다.

12.050.4.3. 도전 후보자

위원회가 상기 규정에 따라 다른 피지명자를 선출하여야 할 경우, 이사회 회의의 결정에 따라 도전 후보자 추천서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클럽들에 주어야 한다. 그러한 도전은 제출일자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세칙 제12.070.항에 따라야 한다.

12.050.4.4.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우발적 사태

위원회가 준수하여야 할 절차가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우발적 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 사회는 위원회가 준수할 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12.060. 위원회 보고서

클럽에 우송할 위원회 보고서는 위원회 회의 후 10일 이내에 사무총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무총장은 이를 접수한 후 재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신속한 방법으로, 어느 경우든 30일 이내에 그 보고서의 내용을 각 클럽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070. 클럽의 추가 지명

위원회의 지명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전 후보자들이 지명될 수 있다.

12.070.1. 과거에 심의된 후보자 및 이에 대한 찬성

모든 클럽은 본 세칙 제 12.040.3.항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정식으로 회장 피지명자로 고려되기를 원한다고 통보했던 자격 있는 로타리안을 도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도전 후보자의 명단은 클럽 정기모임에서 정식으로 채택한 결의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한 결의는 지구대회에서 또는 우편 투표를 통하여 지구 클럽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구총재는 그러한 찬성 사실의 증거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의서에는 도전 후보자가 자신의 후보 지원서를 클럽에 제출하여 승인 받을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힌 후보자의 서면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상기 절차는 해당 연도 10월 1일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12.070.2. 도전 후보자에 대한 클럽 통보

사무총장은 추천된 도전 후보자들을 클럽에 통보하고 그러한 도전 후보자를 승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등록 양식을 클럽에 제공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10월 1일이 지난 즉시 그러한 통보와 양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12.070.3. 도전 후보자의 부재

도전 후보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회장은 지명위원회가 지명한 후보자를 회장 피지명자로 발표하여야 한다.

12.070.4. 도전 후보자 승인

11월 15일 현재, 도전 후보자가 가장 최근의 클럽 회비 청구서 일자를 기준으로 RI 회원 자격을 갖고 있는 클럽들 중 1퍼센트 이상의 클럽들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그 중 최소한 반 이상은 도전 후보자 소속 존이 아닌 다른 존 내 클럽들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한 도전 후보자와 위원회의 피지명자를 상대로 본 세칙 제12.100.항에 따라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도전 후보자가 11월 15일까지 전술한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회장은 위원회가 지명한 후보자를 회장 피지명자로 발표한다.

12.070.5. 승인의 유효성

본 세칙 제 12.100.1.항에 규정된 투표위원회는 반송된 승인서와 보고서를 검증, 계산 및 확인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투표위원회가 승인서 숫자가 도전 후보자의 승인 요건을 충족시킬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승인서의 진위에 의심이 가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투표위원회는 이를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장은 발표 전에 RI의 선거 심사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러한 승인서의 유효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후 투표위원회는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080. 제12.070.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우발적 사태

본 세칙 제12.070.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우발적 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사회는 위원회가 취할 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12.090. 지명서의 국제대회 제출

12.090.1. 선출을 위한 회장 피지명자 명단 제출

사무총장은 위원회가 정식으로 지명한 회장 피지명자의 이름을 국제대회에 제출하여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한 피지명자는 우편 투표가 실시되지 않는 한, 선출된 다음 해 7월 1일에 회장으로 취임한다.

12.090.2. 차기 회장직의 공석

차기 회장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 사무총장은 역시 그러한 공석을 충원하기 위해 피지명자의 명단을 국제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한 명단에는 위원회가 지명한 후보자와 클럽이 정식으로 지명한 도전 후보자의 이름을 포함시킬 수 있다. 본 세칙 제12.080.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는, 클럽 대의원들이 국제대회장에서 도전 후보자를 지명할 수도 있다.

12.100. 우편 투표

본 세칙 제12.070.항에서 규정한 우편 투표에 의한 회장 선출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12.100.1. 투표위원회

회장은 클럽이 사용할 투표용지의 준비, 반송 및 집계를 감독할 투표위원회를 지명하여야 한다.

12.100.2. 투표용지 서식

투표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준비하여야 한다. 투표는 가능한 한 단일이양식으로 한다. 투표용지에는 정식으로 추천된 모든 후보자의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명단은 위원회가 선출한 후보자 성명 다음에 모든 후보자의 성명을 가나다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선출한 후보자 성명에는 위원회에 의해 선출되었다는 것이 투표용지에 확실히 명시되어야 한다.

12.100.3. 투표용지 우송

투표위원회는 다음 2월 15일까지 각 클럽에 투표용지 1부를 우송하여야 한다. 투표용지는 4월 15일까지 세계본부 투표위원회에 반송되어야 한다는 안내서와 함께 우송되어야 한다. 그러한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2.100.4. 클럽 투표

각 클럽은 최소한 1 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회원 수가 25 명이 넘는 클럽은 추가 회원 25명당 또는 그 과반수에 대하여 추가로 1 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클럽의 회원 수는 투표 예정일 이전의 가장 최근 클럽 회비 청구서 일자를 기준으로 한 회원 수로 결정된다. 그러나 이사회에 의하여 RI 회원 자격이 정지된 클럽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

12.100.5. 투표위원회 회합

투표위원회는 회장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회합을 가져야 한다. 투표위원회는 투표용지를 검사하고 집계한다. 투표위원회의 회의는 4월 20일 이전에 개최되어야 한다. 투표위원회는 개최 후 5일 이내에 투표 결과 보고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100.6. 투표수의 집계

투표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차기 회장으로 공표된다. 필요한 경우 차점자 및 그 다음 득표자들에 대한 투표수도 고려되어야 한다.

12.100.7. 차기 회장의 발표

회장은 4월 25일까지 차기 회장의 성명을 발표한다.

12.100.8. 동수 득표

우편 투표의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동수 득표 후보자 중 1명이 지명위원회가 지명한 후보자일 경우에는 그 후보자가 차기 회장으로 공표된다. 동수 득표 후보자 중 지명위원회가 지명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동수 득표 후보자 중 1명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한다.

제13조 이사의 지명 및 선거**13.010. 각 존(Zone)별 이사 지명**

13.020. 지명위원회 절차에 의한 이사 피지명자 및 교체 이사 피지명자 선출

13.030. 우편 투표 절차**13.040. RIBI 임원 지명****13.010. 각 존(Zone)별 이사 지명**

이사의 지명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각 존에 의해 실시된다.

13.010.1. 존의 수효

전 세계는 소속된 로타리안 수가 거의 비슷한 34개의 존으로 구분된다.

13.010.2. 지명 일정

각 존은 이사회가 정한 일정에 따라 4년마다 존 소속 클럽 회원 중에서 이사 1명을 지명한다.

13.010.3. 존 경계

존의 최초 경계는 규정심의회 결의로 승인된다.

13.010.4. 주기적인 존 경계 검토

이사회는 적어도 8년마다 각 존의 로타리안 수가 거의 비슷하도록 존의 구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또한 필요에 따라 이와 동일한 목적으로 중간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13.010.5. 존의 재조정

존의 새로운 경계 조정은 이사회가 할 수 있다.

13.010.6. 존 내의 구역

이사회는 한 존 내에서 윤번제로 공평하게 이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존 내 구역을 신설, 조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그러한 구역들은 거의 동등한 로타리안 수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결정한 일정에 따라 RI 이사를 지명하여야 한다. RIBI에 소속된 클럽을 포함하는 존을 제외한 다른 존에서는 존 내 클럽들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경우 어떠한 구역도 신설, 조정, 또는 폐지될 수 없다.

13.010.7. RIBI 존 출신 이사

RIBI 존 출신 이사 또는 RIBI 존 내 구역의 이사는 RIBI 심의회가 결정하는 시기에 우편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존 소속 클럽 또는 존 내의 구역에 소속되어 있는 클럽들에 의하여 지명되어야 한다. 그러한 지명자의 성명은 RIBI 총무를 경유하여 사무총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3.020. 지명위원회 절차에 의한 이사 피지명자 및 교체 이사 피지명자 선출

13.020.1. 지명위원회 절차에 관한 일반 규정

이사 피지명자 및 교체 이사 피지명자는 존 또는 존 내 구역 전체가 RIBI에 속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 절차에 따라 선출된다. 세칙 규정이나 비공식적인 이해에 의해 후보자가 지명될 수 있는 존 내의 지역이 제한된 경우라도, RIBI 지구 및 비 RIBI 지구가 혼합되어 있는 존을 제외한 모든 존의 지명위원회는 전체 존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 존이 2개 이상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존 내 모든 지구의 과반수가 각 지구대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여 존 전체에서의 이사 선출에 동의하지 않는 한, 지명위원회 위원은 이사가 지명될 특정 구역 내 지구들에 의해서만 선출된다.

위 언급된 지구들의 동의가 지명위원회 위원 선출에 대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구 총재는 선출 전년도 3월 1일까지 사무총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동의는 존을 구성하고 있는 지구들이 변경될 경우 무효가 되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 내 지구 과반수가 지구대회 결의안을 채택하여 그 동의를 무효화하고 지구총재가 그러한 무효 결정에 대하여 사무총장의 확인을 받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13.020.2. RIBI 내의 구역 및 비 RIBI 내의 구역으로 구성된 존의 지명위원회 절차

RIBI 내의 구역 및 비 RIBI 내의 구역으로 구성된 존의 이사 피지명자 및 교체 이사 피지명자 선출은 RIBI에 속하지 않는 구역의 지명위원회 절차에 따라 선출된다. 비 RIBI 내의 구역의 지명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구역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13.020.3. 지명위원회 위원

지명위원회 위원은 존 또는 존 내 구역의 각 지구에서 1명씩, 아래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구 소속 클럽들이 선출한다. 각 위원은 지명위원회 선출 당시 전 총재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존 또는 구역 내 클럽의 회원이어야 한다. 또한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하기 전의 3년 동안 이사 피지명자를 선출하는 존의 로타리 연수회에 2회 이상 참석하고 국제대회에 1회 이상 참석한 회원이어야 한다. 단, 지구는 지구대회에 참석해 투표하는 클럽 선거인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된 결의를 통해 위 자격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의는 직후 이사 지명위원회에 대해서만 효력을 갖는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회장, 차기 회장, 전 회장, 이사 또는 전 이사는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이사 지명위원회 위원직을 2회 수행한 로타리안은 다시 위원이 될 수 없다. 모든 위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13.020.4. 선출

본 세칙 제 13.020.9.항 및 13.020.10.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 위원 및 교체 위원은 지명위원회 소집 예정일 전년도의 연차 지구대회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13.020.5. 지명

지구 내 클럽은 지명 위원으로 봉사할 의사가 있고 그러한 능력을 갖춘 자격있는 회원을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클럽은 서면으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한 추천서에는 클럽 회장과 총무가 서명하여야 한다. 추천서는 지구대회 클럽 선거인단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지구총재 앞으로 보내져야 한다. 각 클럽은 클럽의 투표권을 모두 행사할 선거인 1명을 지정해야 한다. 2표 이상의 투표권을 갖는 클럽은 모든 표를 동일한 후보자에게 행사

하여야 한다. 3명 이상의 후보자에 대해 단일이양식 투표가 요구 또는 실시될 경우, 클럽은 모든 투표에 후보자들에 대한 동일한 선호 순서를 명시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13.020.6. 위원 및 교체 위원

과반수 득표자가 지명위원회 위원이 된다. 차점자는 교체 위원이 되며, 지명위원이 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으로 봉사하게 된다.

13.020.7.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확정된 후보자

지구에 후보자가 단 1명인 경우에는 투표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지구총재는 그 후보자를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확정, 발표한다.

13.020.8. 위원 및 교체 위원의 임무 수행 불능

지명 위원과 교체 위원 모두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지구총재는 지구 내 한 클럽의 자격있는 다른 회원을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13.020.9. 우편 투표에 의한 지명위원회 위원 선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는 우편 투표를 통한 지명위원회 위원과 지명위원회 교체 위원 선출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구총재는 지구 내 모든 클럽 총무에게 위원 추천용 공식 요청서를 준비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모든 추천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클럽 회장과 총무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추천서는 지구총재가 정한 마감일까지 지구총재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지구총재는 가다나순으로 자격있는 후보자 성명이 기재된 투표용지를 각 클럽에 보내 우편 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지구총재가 정한 마감일 전에 후보자가 서면으로 투표용지의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이름은 투표용지에서 삭제된다. 각 클럽은 최소한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원 수가 25명이 넘는 클럽은 추가 회원 25명당 또는 그 과반수에 대하여 추가로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클럽의 회원 수는 투표 예정일 이전의 가장 최근 클럽 회비 청구서 일자를 기준으로 한 회원 수로 결정된다. 그러나 이사회에 의하여 RI 회원 자격이 정지된 클럽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 지구총재는 다음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우편 투표를 담당할 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13.020.10. 우편 투표에 의한 선출

지구대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 우편 투표에 의한 위원 및 교체 위원 선출을 결정할 수 있다. 우편 투표는 본 세칙 제13.020.9.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해당 연도 5월 15일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13.020.11. 위원 지명을 사무총장에게 보고

지구총재는 지명위원회 위원과 교체 위원을 선출한 직후, 해당 연도의 6월 1일 이전까지, 위원 및 교체 위원의 명단을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020.12. 제13.020.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우발적 사태

이사회는 본 조항들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투표와 관련된 우발적 사태의 발생시에 따라야 할 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13.020.13. 회의 소집자, 회의 일시 및 장소 지정, 위원장 선출

이사회는 이사 및 교체 이사 피지명자를 지명하는 연도의 전년도 6월 15일 이전에 지명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1명을 소집자로 지명하고, 회의 개최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회의는 9월 15일과 30일 사이에 개최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13.020.14. 클럽 추천서의 위원회 제출

사무총장은 7월 1일 이전에 존 또는 위원회가 구성된 구역 내 클럽들에게 지명위원회 구성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존 또는 구역 내 클럽들에게 위원회가 심사할 이사 피지명자들을 추천해줄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추천서 수신처로 지명위원회 소집자의 주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추천서는 이사회가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 지명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클럽 추천서에는 추천된 후보자의 로타리 및 기타 활동에 관한 약력과 최근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천서는 9월 1일 이전에 회의 소집자를 수신인으로 하여 지명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한다.

13.020.15. 지명위원회 회의

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9월 중에 이사회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정족수는 과반수이다. 이사 피지명자 선출을 제외한 위원회의 모든 의사 처리는 과반수 투표로 결정된다. 이사 및 교체 이사 피지명자는 위원회의 60퍼센트 이상의 투표수를 얻어야 한다. 지명위원회 위원장은 이사 및 교체 이사 피지명자 지명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명위원회 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경우의 결정 투표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다른 안건 처리에는 투표권이 없다.

13.020.16. 위원회가 피지명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이사 지명위원회가 폐회되고 이사 피지명자 후보 중 그 누구도 지명위원회 위원 중 60퍼센트의 지지를 얻지 못했으면 이사 피지명자는 우편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우편 투표는 제13.030.항에 명시된 우편 투표 절차를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지명위원회에서 심사된 모든 후보자들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한다.

13.020.17. 위원회의 지명

위원회는 존 또는 존의 구역에 있는 클럽 회원으로서 클럽들에 의해 명단이 제출된 후보자들 중에서 이사 및 교체 이사 피지명자를 선출한다. 이렇게 제출된 후보자가 3명이 안될 경우, 위원회는 해당 존이나 구역에서 다른 자격있는 로타리안들을 심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위원회는 가장 유능한 사람을 지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13.020.18. 위원회 선출 보고서

위원회는 이사 및 교체 이사 피지명자를 선출하고 폐회한 후 10일 이내에 이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10월 15일까지 해당 존이나 구역 소속 클럽들에게 지명위원회의 선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3.020.19. 피지명자의 임무 수행 불능

위원회가 선출한 이사 피지명자가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원회는 전에 선출된 교체 이사 피지명자를 자동적으로 이사 피지명자로 지명한다.

13.020.20. 도전 후보자의 추천

존 또는 구역에 있는 모든 클럽은 도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도전 후보자는 지명위원회에 정식으로 추천되어야 한다. 도전 후보자의 성명은 정기모임에서 정식으로 채택한 클럽의 결의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한 결의는 지구 소속 클럽의 과반수 또는 2개 존 이상에 있는 지구의 경우에는 이사가 지명되기로 되어 있는 존의 지구 소속 클럽들의 과반수 동의 를 얻어야 한다. 그러한 동의는 대회나 우편 투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총재가 이를 사무총장에게 확인, 통보하여야 한다. 결의에는 자신이 봉사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내용의 도전 후보자의 진술서와 구체적인 이력서(이사회가 정한 양식) 및 최근 사진 1매를 첨부시켜야 한다. 상기의 절차는 해당 연도 12월 1일까지 이행되어야 한다.

13.020.21. 이사 피지명자의 발표 및 우편 투표에 의한 선출

상기의 도전 후보자 추천 동의서가 12월 1일까지 사무총장에게 접수되지 않을 경우, 회장은 지명위원회가 선출한 후보자를 해당 존의 이사 피지명자로 발표하여야 한다. 그러한 발표는 12월 15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상기 항에 기술된 추천서와 동의서가 12월 1일까지 사무총장에게 접수될 경우, 도전 후보자와 지명위원회가 지명한 후보자 중에서 본 세칙 제 13.030.항에 따라 우편 투표로 이사를 선출한다.

13.030. 우편 투표 절차

본 세칙 제13.020.항에 따라 이사 피지명자를 우편 투표로 선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3.030.1. 투표

본 세칙 제13.020.1. 또는 13.020.2.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가 한 구역 내의 각 지구 위원들로 구성되는 존을 제외하고는 존 내의 모든 클럽들이 투표에 참여한다. 그러한 존에서는 RI 이사가 지명되기로 되어 있는 구역 내 클럽들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13.030.2. 투표위원회

회장은 투표용지를 검사하고 집계할 투표위원회를 임명하여야 한다.

13.030.3. 투표용지 양식

사무총장은 가능한 한 단일양식 투표용지를 준비하여야 한다. 모든 투표용지에는 추천 클럽이 제공한 각 후보자에 대한 이력 요약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러한 이력 요약서는 이사회가 정한 서식에 따라야 한다. 투표용지에는 클럽이 정식으로 추천한 도전 후보자들의 명단이 기입되어야 한다. 그러한 명단은 지명위원회가 선출한 후보자의 명단 다음에 가나다순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지명위원회가 선출한 후보자의 성명은 지명위원회가 선출한 후보자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투표용지 상에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13.030.4. 투표용지 접수 마감 기한

사무총장은 투표용지에 사진과 이력 요약서를 첨부하여 12월 31일 이전에 존 또는 구역 내에 있는 각 클럽들에게 투표용지 1부를 우송하여야 한다. 투표용지는 3월 1일 이전에 세계본부 사무총장에게 반송되어야 한다는 안내서와 함께 우송되어야 한다.

13.030.5. 클럽 투표

각 클럽은 최소한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회원 수가 25명이 넘는 클럽은 추가 회원 25명당 또는 그 과반수에 대하여 추가로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클럽의 회원 수는 투표 예정일 이전의 가장 최근 클럽 회비 청구서 일자를 기준으로 한 회원 수에 의거한다. 그러나 이사회에 의하여 RI 회원 자격이 정지된 클럽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

13.030.6. 투표위원회 회의 및 보고서

투표위원회는 투표용지를 검사하고 집계하기 위하여 회장이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회의는 3월 5일 이전에 개최되어야 한다. 투표위원회는 회의 후 5일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3.030.7. 투표용지 집계

과반수 표를 얻은 이사 후보자가 피지명자로 발표된다. 득표 계산 시, 교체 이사 피지명자 선출을 위하여 차점자와 다른 후보자들의 득표수도 계산한다.

13.030.8. 이사 피지명자 발표

회장은 3월 10일 이전에 그러한 우편 투표로 선출된 이사 피지명자의 명단을 발표하여야 한다.

13.030.9. 동수 득표

우편 투표의 결과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 나온 경우, 2차 우편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2차 투표용지의 준비 및 우송을 감독하여야 한다. 우편 투표 용지에는 1차 우편 투표에서 최고 동수 득표를 한 후보자들의 명단을 기입하여야 한다. 투표용지에는 그러한 후보자의 이력 요약서와 사진이 첨부되어야 한다. 투표 용지와 기타 자료는 3월 15일까지 해당 존이나 구역 내 모든 클럽들에게 우송되어야 한다. 투표용지는 오는 5월 1일 이전에 세계본부의 사무총장에게 반송되어야 한다는 안내서와 함께 우송되어야 한다. 투표위원회는 투표용지를 검사, 집계하기 위하여 회장이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회의는 5월 5일까지 개최되어야 한다. 투표위원회는 회의 후 5일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회장은 5월 10일까지 해당 존 내의 모든 클럽들에게 이사 피지명자를 통보한다.

13.030.10. 기간 연장

이사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존 내의 클럽들에게는 본 조항의 날짜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13.040. RIBI 임원 지명

RIBI 의 회장, 부회장, 그리고 명예 재무는 RIBI 세칙에 따라 선출, 추천 그리고 지명된다.

제14조 총재 지명 및 선거

14.010. 총재 피지명자의 선출

14.020. 총재 지명 절차

14.030. 우편 투표에 의한 선출

14.040. 우편 투표 서식

14.050. 총재 피지명자의 확인

14.060. 총재 피지명자의 거부 또는 일시 보류

14.070. 특별 선거

14.010. 총재 피지명자의 선출

지구는 총재 취임일자로부터 최대 36개월, 최소 24개월 전까지 총재 피지명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피지명자는 선출된 즉시 차차기 총재 내정자의 직위를 가지며, 취임하기 2년 전 7월 1일부로 차차기 총재의 직위를 가진다. 이사회는 정당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 조항에 규정된 기간을 연장할 권한을 갖는다. 피지명자는 국제협의회에서 연수를 받기로 예정된 연도 직전에 개최되는 RI 국제대회에서 차기 총재로 선출되며, 차기 총재로서 1년의 임기를 마친 후 선출된 다음 해의 7월 1일부로 총재직에 취임한다.

14.020. 총재 지명 절차

14.020.1. 지구총재 지명 방법

RIBI 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구는 본 조항에 명시된 지명위원회 절차나 제14.030. 및 14.040.항에 의한 지구 우편 투표, 혹은 제 14.020.13.항에 의거하여 지구대회에서 총재 피지명자를 선출해야 한다. 총재 피지명자 선출 방법은 지구대회에 참석한 클럽의 선거인단 다수가 찬성하여 통과된 결의안에 의거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14.020.2. 총재 지명위원회

지명위원회 절차를 채택한 지구의 경우, 총재 지명위원회는 총재 피지명자 후보자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물색하여 추천할 책임이 있다. 위원 선출 방법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권한은

지구대회 클럽 선거인단이 투표하여 채택하는 결의에 따른다. 그러한 권한은 세칙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14.020.3. 지명위원회 절차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

본 세칙 제14.020.2.항의 규정에 의거한 지구총재 선출을 위한 지명위원회 절차는 채택하였으나, 적합한 위원을 선발하지 못한 지구는 현재 해당 지구 클럽 회원으로 있는 가장 최근의 전 총재 5명을 지명 위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는 본 세칙 제13.020.항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전 총재가 5명이 되지 않을 경우, RI 회장은 해당 지구 내의 책임자를 추가로 지명하여 위원회 위원이 5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4.020.4. 클럽의 총재 추천

지명위원회 절차나 지구대회에서의 선출 방법을 선택한 지구의 경우, 지구총재는 각 클럽에 총재 지명을 위한 추천서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명위원회 절차를 선택한 경우, 총재가 정하여 발표한 기일 내에 추천서가 도착하면 지명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추천서의 지명위원회 접수 마감일 2개월 전까지 그러한 내용이 지구 내 클럽들에게 발표되어야 한다. 발표 내용에는 추천서를 우송해야 하는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후보자를 추천하는 클럽은 정기모임 결의로 채택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한 결의는 클럽 총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클럽은 소속 클럽 회원 중 1명만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14.020.5. 위원회의 최적적 로타리안 지명

지명위원회는 지구 클럽들이 추천한 후보자들 중에서 총재를 지명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총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적적의 로타리안을 지명하여야 한다.

14.020.6. 지명 통보

지명위원회 위원장은 선출한 후보자를 지명위원회 폐회 후 24시간 이내에 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총재는 지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지구 클럽들에게 피지명자의 성과와 소속 클럽을 발표한다. 지구 클럽들에 대한 발표는 서신이나 이메일, 또는 팩스 등의 서면 발표여야 한다.

14.020.7. 위원회가 피지명자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

지명위원회가 후보자 선출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총재 피지명자는 본 세칙 제14.040.항의 규정에 따라 우편 투표로 선출되어야 한다. 또는 제16.050.항에 따라, 지구대회에서 지명위원회에 추천된 후보자들 중에서 선출할 수도 있다.

14.020.8. 도전 후보자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활동한 클럽은, 지명위원회에 후보자를 추천하였을 경우, 그 후보자를 총재 피지명자에 대한 도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 활동한 클럽의 경우라도, 후보자가 클럽 회원이면 도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그러한 도전 후보자는 기히 지명위원회에 정식으로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도전 후보자의 명단은 클럽 정기모임에서 채택한 결의로 제출되어야 한다. 클럽은 그러한 결의를 총재가 정하는 마감일까지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한 마감일은 지구총재가 총재 피지명자 선출 발표로부터 14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14.020.9. 도전 후보자에 대한 동의

총재는 상기 조항에 따라 추천된 도전 후보자의 명단을 RI가 정한 양식을 사용해 모든 클럽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총재는 또한 도전에 동의 의사를 표하고자 하는 클럽이 있는지도

문의하여야 한다. 도전에 동의하고자 하는 클럽은 정기모임에서 채택한 결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결의서는 총재가 정한 마감일까지 총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피지명자에 대한 도전은 해당 연도의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활동한 지구 내 타 클럽 10개 이상 또는 해당 연도의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활동한 지구 클럽 총 수의 20퍼센트 이상 중 더 큰 수의 클럽들로부터 동의를 얻고, 동의를 표한 클럽들의 결의서가 클럽 세칙에 따라 정기모임에서 채택되었다고 지구총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각 클럽은 1명의 도전 후보자에 대해서만 동의를 표할 수 있다.

14.020.10. 도전 후보자가 없는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도전 후보자 추천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총재는 지구 지명위원회가 지명한 후보자를 총재 피지명자로 발표한다. 그러한 발표는 도전 후보자 추천서 마감일 이후 15일 이내에 지구 내 모든 클럽들에게 하여야 한다.

14.020.11. 도전 후보자의 지명

마감일 이전에 유효한 도전 후보자 지명서가 접수되면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구총재는 이를 지구 클럽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보에는 도전 후보자의 명단과 자격 요건, 도전 클럽 및 이에 동의하는 클럽들의 명단을 포함하여 만일 도전 후보자가 지구총재가 정한 날짜까지 자격을 유지할 경우 그러한 후보자를 상대로 우편 투표 또는 지구대회 투표가 실시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4.020.12. 유효한 도전 후보자 지명이 없는 경우

유효한 도전 후보자 지명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총재는 지구 지명위원회가 지명한 후보자를 총재 피지명자로 발표하여야 한다. 총재는 지구 소속 모든 클럽들에게 15일 이내에 총재 피지명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14.020.13. 지구대회에서의 총재 피지명자 선출 투표

지구대회에서의 투표는 우편 투표 규정과 최대한 유사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2표 이상의 선거권을 가진 클럽은 모든 표를 동일한 후보자에게 행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표로 처리된다. 각 클럽은 주어진 모든 표를 행사할 선거인 1명을 지명하여야 한다.

14.030. 우편 투표에 의한 선출

제14.020.1.항 규정에 의해 우편 투표가 필요하고 이사회가 이를 승인할 경우, 지구는 지명위원회의 도움없이 우편 투표로 총재 피지명자를 선출할 수 있다.

14.030.1. 절차

총재는 지구의 모든 클럽 총무들에게 총재 지명 공식 요청서를 우송하여야 한다. 모든 지명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클럽의 회장과 총무가 서명하여야 한다. 클럽은 클럽 회원 중 1명을 총재 피지명자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지명서는 총재가 정한 마감일까지 총재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마감일은 총재 지명 공식 요청일자부터 최소한 1개월 후가 되어야 한다. 클럽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1명뿐일 경우에는 투표할 필요가 없으며, 총재는 그 후보자를 총재 피지명자로 발표하여야 한다.

14.030.2. 2명 이상의 후보자가 클럽들로부터 지명된 경우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총재는 지구 내 모든 클럽들에게 각 후보자의 명단과 자격 조건을 알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우편 투표를 실시한다고 통보하여야 한다.

14.040. 우편 투표 서식

총재는 우편 투표를 위한 투표용지를 클럽당 1매씩 준비하여야 한다. 투표용지에는 지구 지

명위원회가 선출한 후보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아래에 총재에게 접수된 모든 후보자들의 명단을 가나다순으로 기재한다.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투표는 단일이양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총재는 클럽의 모든 투표위원회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작성된 투표용지를 총재에게 반송하여야 한다는 지침과 함께 각 클럽에 1매씩 우송하여야 한다. 투표용지는 총재가 정한 마감일까지 반송되어야 한다. 마감일은 총재가 투표용지를 우송한 날짜로부터 15일 이후 30일 이내가 되어야 한다.

14.040.1. 클럽 투표

각 클럽은 최소한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회원 수가 25명이 넘는 클럽은 추가 회원 25명당 또는 그 과반수에 대하여 추가로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클럽의 회원 수는 투표 예정일 이전의 가장 최근 클럽 회비 청구서 일자를 기준으로 한 회원 수로 결정된다. 그러나 이사회에 의하여 RI 회원 자격이 정지된 클럽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 만약 클럽이 2표 이상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클럽은 모든 표를 동일한 후보에게 행사하여야 한다. 클럽이 투표한 후보자의 이름은 클럽 회장과 총무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밀봉된 봉투에 넣어 지구총재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14.040.2. 투표위원회

총재는 투표용지 집계 장소와 일시를 결정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장소를 준비하고 유효 투표를 확인, 집계하는 일을 담당할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임명하여야 한다. 유효 투표의 확인은 투표용지 집계와는 별도로 행해져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조치도 강구하여야 한다. 후보자나 후보자의 대리인이 투표용지의 집계를 참관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해져야 한다. 각 클럽이 투표한 후보자의 이름이 담긴 밀봉된 봉투는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참관한 가운데 개봉되어야 한다.

14.040.3. 과반수 혹은 동점 투표

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해당 지구의 총재 피지명자로 발표하여야 한다. 만약 두 후보자가 각각 50퍼센트를 득표하였고, 그 중 한 후보자가 지명위원회가 선출한 후보자라면, 지명위원회가 선출한 후보자가 총재 피지명자가 된다. 만약 두 후보자 중 누구도 지명위원회가 선출한 후보자가 아니라면 지구총재가 두 명 중 한 명을 총재 피지명자로 선출한다.

14.040.4. 투표위원회 보고

투표위원회는 과반수 표를 얻은 후보자가 있을 경우 총재에게 투표 결과를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각 후보자별 득표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총재는 각 후보자들에게 투표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투표위원회는 총재가 후보자들에게 투표 결과를 통보한 후 15일 동안 모든 투표용지를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한 투표용지는 그 기간 동안 모든 클럽의 대표들이 검사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투표위원회 위원장은 15일 후에 투표용지들을 파기하여야 한다.

14.050. 총재 피지명자의 확인

총재는 피지명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총재 피지명자의 성명을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14.060. 총재 피지명자의 거부 또는 일시 보류

14.060.1. 자격 미달

소정의 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총재 피지명자의 지명은 거부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은 그러한 피지명자의 명단을 국제대회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14.060.2. 지명의 일시 보류

총재 피지명자가 서명한 진술서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명자가 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임무와 책임을 충분히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는 그러한 지명을 일시 보류시킬 수 있다. 이사회는 그러한 보류 사실을 총재와 피지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피지명자에게는 총재의 임무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추가 정보를 총재와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피지명자가 제출하는 그러한 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상황을 심의한 후, 3분의 2의 찬성에 의해 피지명자의 지명을 거부하거나 그러한 보류를 해제할 수 있다.

14.060.3. 피지명자의 거부

피지명자의 지명이 이사회에 의하여 거부된 경우, 사무총장은 관련 지구의 총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거부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총재는 이를 해당 피지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간이 허락할 경우, 총재는 다른 총재 피지명자를 선출하기 위해 세칙 규정에 따라 지구 우편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구가 자격있는 총재 피지명자를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피지명자는 본 세칙 제14.070.항에 따라 선출되어야 한다.

14.070. 특별 선거

지구가 총재 피지명자를 선출하지 못했거나 총재 피지명자가 선출 자격을 상실한 경우 혹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지구가 국제대회 연차 임원 선출 전까지 다른 피지명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지구총재는 본 세칙 제14.020.항에 따라 지명 절차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제대회에서 선출된 지구총재 피지명자가 최소한 국제협의회를 3개월 넘겨놓고 자격을 상실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지구총재는 본 세칙 제14.020.항에 따라 지명 절차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지 이사회는 지명된 로타리안을 차기 총재로 선출하여야 한다. 그 이후 만약 차기 총재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이사회는 본 세칙 제16.070.항에 따라 자격있는 로타리안을 선출하여 공석을 메우도록 한다. 차기 총재 또는 총재 피지명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후임자가 지명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되었으며 해당 후임자가 동의할 경우, 지구는 그 후임자로 공석을 메울 수 있다. 단, 해당 후임자는 국제대회나 이사회가 실시하는 필요한 선거를 거쳐야 한다.

14.070.1. 특별 선거에 대한 특별 조항

지구총재가 제14.070.항에 의거하여 지명위원회 절차를 다시 적용할 경우, 이전 지명위원회 절차 동안 클럽들로부터 지명위원회에 추천된 후보가 없었다면 제14.020.4항에 명시된 절차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제15조 관리 집단 및 관리 구역 단위

15.010. 이사회 권한

15.020. 감독

15.030. 관리 구역 단위(RIBI)

15.010. 이사회 권한

지구 내 클럽들이 총재의 직접적인 감독에 의해 관리될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고 또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위원회, 협의회 또는 기타 총재 보좌관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5.020. 감독

이사회는 클럽들에 대한 지구총재의 감독이외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 이상의 지구로 구

성되어 있는 지역 내의 클럽들에 대해서는 다른 감독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절차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규정은 지구 내 클럽들과 국제대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15.030. 관리 구역 단위(RIBI)

RIBI 지역에 있는 클럽들은 RI의 관리 구역 단위로 편성, 조직된다. RIBI는 규정심의회에서 승인된 정관에 의하여 운영된다. RIBI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RI에 클럽을 가입시키고, RI 지구 편성 위원회의 임무를 맡으며, 세칙 규정 및 이사회의 승인하에 RI 재정 문제를 처리한다.

15.030.1. RIBI의 정관

RIBI의 정관은 RI의 정관 및 세칙의 정신과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RI와 RIBI의 정관 및 세칙은 내부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5.030.2. RIBI 정관의 개정

관리 구역 단위의 권한과 목적 그리고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내부 관리를 규정하는 RIBI 정관 규정들은 규정심의회 승인하에 RIBI 연차 대회 결의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규정심의회가 내부 관리와 관련이 없는 RI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 RIBI의 정관을 RI 정관에 부합시키기 위한 필요한 상관적인 개정은 사실상 자동적으로 RIBI 정관 자체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된다.

15.030.3. RIBI 세칙의 개정

RIBI 세칙은 RI의 정관 및 정관 문서의 규정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RIBI 정관 및 RI 정관 문서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6조 지구

16.010. 지구 창설

16.020. 지구연수협의회

16.030. 차기회장연수회(PETS)

16.040. 지구대회 및 지구입법회

16.050. 지구대회 및 지구입법회에서의 투표

16.060. 지구 재정

16.070. 총재 피지명자 자격요건

16.080. 총재 자격요건

16.090. 총재 임무

16.100. RIBI 지구총재의 임무

16.110. 해임

16.120. 지구 우편 투표

16.010. 지구 창설

이사회는 클럽들을 지구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회장은 그러한 지구의 목록과 그 경계 구분을 공포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이사회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이사회는 인터랙티브 활동을 실시하는 클럽을 어느 지구에도 배정할 수 있다.

16.010.1. 지구 경계 폐지 및 변경

이사회는 100개를 초과하는 클럽이나 1,100명 미만의 로타리안을 보유한 지구의 경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계 변경과 관련하여 해당 지구의 클럽들을 이웃 지구

에 편성할 수 있다. 이사회는 또한 그러한 지구를 다른 지구와 병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지구 소속 클럽들의 과반수가 반대할 경우 지구 경계를 변경할 수 없다. 이사회는 관련 지구의 총재 및 소속 클럽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이들에게 제안된 변경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준 후에만 지구 경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사회는 지구 경계 설정에 있어 지역 분포, 지구의 성장 가능성, 문화, 경제, 언어를 비롯한 기타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구 경계를 폐지 또는 변경하기로 한 이사회의 결정은 적어도 2년 동안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사회는 신생 지구 또는 합병 지구의 관리, 리더십 및 대표 등과 관련된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16.010.2. 동일 지역에 있는 클럽

같은 도시 혹은 도시 내의 행정 구역에 여러 개의 클럽들이 공존하는 경우, 해당 클럽들의 과반수 승인 없이는 동 클럽들을 서로 다른 지구에 편성할 수 없다. 동일 지역에 소재한 클럽들은 동일 지구에 편성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는 해당 클럽들의 과반수가 이사회에 청원함으로써 행사될 수 있다. 이사회는 그러한 청원 접수 후 2년 이내에 동일 지역에 공존하는 모든 클럽들을 동일 지구에 편성하여야 한다.

16.020. 지구연수협의회

회원 기반의 유지 및 확장, 국내의 지역사회의 필요에 대처하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실시, 프로그램 참여 및 재정 기부를 통한 로타리재단 후원 등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 그리고 동기부여의 능력을 갖춘 로타리클럽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지구연수협의회 또는 다지구연수협의회가 매년 가급적이면 3월, 4월, 또는 5월에 개최되어야 한다. 지구연수협의회는 차기 총재가 책임진다. 지구연수협의회는 차기 총재의 지시와 감독하에 계획, 실시되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본 항에 규정된 시기 이외에 지구연수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차기 클럽 회장과 차기 연도에 주요 지도자 직책을 맡도록 차기 클럽 회장의 임명을 받은 클럽 회원들은 반드시 초청되어야 한다.

16.030. 차기회장연수회 (PETS)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지구에 소속된 클럽 차기 회장들에 대한 교육과 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매년 PETS, 혹은 다지구 PETS가 개최되어야 한다. PETS는 가급적이면 매년 2월 또는 3월에 개최하도록 한다. 차기회장연수회는 차기 총재가 책임진다. 차기회장연수회는 차기 총재의 지시와 감독하에 계획, 실시되어야 한다.

16.040. 지구대회 및 지구입법회

16.040.1. 일시 및 장소

매년 각 지구 내 로타리안들의 대회가 총재와 지구의 과반수 클럽 회장들이 합의한 일시 및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대회 개최 시기는 지구연수협의회나 국제협의회, 또는 국제대회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사회는 2개 이상의 지구들이 합동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또한 지구는 소속 클럽들에게 개최 21일 전에 통지를 한 경우 총재가 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지구입법회를 개최할 수 있다.

16.040.2. 개최지 선정

총재 피지명자가 선출되고 사무총장이 확인한 경우, 총재 피지명자가 총재로 봉사할 연도에 개최될 지구대회는 미리 계획될 수 있다. 총재 피지명자와 해당 지구 소속 클럽들의 현 회장 중 과반수가 그러한 대회 개최지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승인하에, 지구는 총재 피지명자 및 그와 동일한 기간에 클럽 회장으로 봉사할 사람들의 투표로 총재 피지명자

가 총재로 봉사할 연도에 개최되는 지구대회의 개최지를 선정할 수 있다. 차기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클럽의 경우에는, 현 회장이 그러한 지구대회 개최지에 대하여 투표하여야 한다.

16.040.3. 지구대회 및 지구입법회에서의 결의

지구대회 및 지구입법회에서는 지구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권고사항들을 채택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조치는 정관 및 세칙에 부합되어야 하며 로타리의 정신과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각 지구대회 및 지구입법회에서는 이사회회의 심의를 위해 제출된 모든 사안을 심의, 결정하여 이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16.040.4. 지구대회 총무

총재는 주관 클럽 회장과 협의하여 지구대회 총무를 지명하여야 한다. 지구대회 총무는 지구대회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진행 사항을 기록하는 총재를 보좌하여야 한다.

16.040.5. 지구대회 보고서

총재 또는 지구대회 위원장은 총무와 함께 지구대회 폐회 후 30일 이내에 지구대회 의사록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준비, 작성하여야 한다. 이들은 그러한 보고서 3부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지구 소속 클럽들의 총무들에게도 1 부씩 제공하여야 한다.

16.050. 지구대회 및 지구입법회에서의 투표

16.050.1. 선거인

각 클럽은 최소한 1명의 선거인을 선출, 증명하여 지구대회 및 지구입법회(개최되는 경우)에 파견해야 한다. 회원 수가 25명을 초과하는 클럽은 추가 회원 25명당 또는 그 과반수에 대하여 추가로 1명의 선거인을 파견할 수 있다. 즉, 회원 수 37명까지는 1명의 선거인을, 38명에서 62명까지는 2명의 선거인을 63명에서 87명까지는 3명의 선거인을 선출할 권리를 갖는다. 클럽의 회원 수는 투표 예정일 이전의 가장 최근 클럽 회비 청구서 일자리를 기준으로 한 클럽의 회원 수에 의거한다. 그러나 이사회에 의해 RI 회원 자격이 정지된 클럽은 선거인을 파견할 수 없다. 각 선거인은 해당 클럽의 회원이어야 한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구대회 또는 지구입법회에 참석하여 투표하여야 한다.

16.050.2. 지구대회 및 지구입법회에서의 투표 절차

클럽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회원으로서 지구대회 또는 지구입법회에 참석한 모든 로타리안들은 지구대회 또는 지구입법회 표결에 회부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단, 총재 피지명자 선출, 이사 지명위원회의 위원 및 교체 위원 선출, 총재 지명위원회의 구성이나 위임사항에 관한 결정, 규정심의회 및 결의심의회에 파견할 지구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 선출, 그리고 1인당 지구 회비 액수에 관한 결정 등은 예외이다. 그러나, 선거인이면 누구나 지구대회 또는 지구결의회에 제출된 사안에 대하여 표결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투표는 선거인들에게 국한된다. 2표 이상의 투표권을 갖는 클럽의 선거인들은 총재 피지명자 선출, 이사 지명위원회 위원 및 교체 위원 선출, 총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위임사항 결정, 규정심의회 및 결의심의회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 선출에 있어서 모든 표를 동일한 후보 또는 안에 행사하여야 한다. 3명 이상의 후보에 대한 단일 양식 투표가 요구 또는 실시될 경우, 2표 이상의 투표권을 갖는 클럽의 선거인들은 모두 동일한 순서로 지지 후보를 명시한 표를 행사하여야 한다.

16.050.3. 대리인

클럽은 선거인 유고 시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다. 그러한 클럽은 해당 대리인 선정에 대해 총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리인은 해당 클럽의 회원 또는 클럽이 소재한 지구 내 클럽

의 회원이어야 한다. 대리인 지명은 해당 클럽의 회장과 총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대리인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는 기타 투표권 이외에도, 불참 선거인을 대표하는 대리인으로서 투표할 자격을 갖는다.

16.060. 지구 재정

16.060.1. 지구 기금

각 지구는 지구가 후원하는 프로젝트와 지구 내 로타리 관리 및 개발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구 기금이라고 부르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지구 기금은 지구대회 결의로 설치되어야 한다. 지구 기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했거나 16.060.4.항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재정적 문제가 지구 내에서 해결될 때까지 어떠한 RI 또는 지구 임원직도 맡을 수 없다.

16.060.2. 지구 회비의 승인

지구 기금은 클럽 회원들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클럽의 지구 회비로 조성된다. 지구 회비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 (가) 지구연수협의회에서 출석한 차기 클럽 회장 4분의 3의 승인으로 결정. 단, 표준 클럽 정관 제13조 5(다)항에 의거해 차기 총재가 차기 클럽 회장의 지구연수협의회 참석을 면제해 준 경우에는 해당 차기 클럽 회장이 지명한 대리인이 회장을 대신해 투표권을 행사한다.
- (나) 지구대회에서 출석해 투표하는 선거인 과반수의 찬성 투표로 결정.
- (다) 차기회장연수회에서 출석한 차기 클럽 회장 4분의 3의 승인으로 결정. 단, 표준 클럽 정관 제13조 5(다)항에 의거해 차기 총재가 차기 클럽 회장의 참석을 면제해 준 경우에는 해당 차기 클럽 회장이 지명한 대리인이 회장을 대신해 투표권을 행사한다.

16.060.3. 1인당 지구 회비

지구의 모든 클럽들은 의무적으로 회원 1인당 지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총재는 6개월 이상 지구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클럽의 목록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체납된 지구 회비가 납부될 때까지 목록에 포함된 클럽에 대한 RI의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16.060.4. 지구 재정의 연차 보고

총재는 임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독립적으로 감사를 받은 지구 재정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모든 클럽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지구대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회계사 혹은 지구 감사 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지구 감사 위원회가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가) 지구 감사 위원회는 최소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 (나) 모든 위원은 로타리 정회원이어야 한다.
- (다) 최소한 한 명의 전직 총재, 혹은 감사에 경험을 갖춘 위원이 있어야 한다.
- (라) 해당연도에 지구총재, 재무, 은행계좌 서명인, 재정위원회 위원의 직책에 있었던 사람은 감사 위원이 될 수 없다.
- (마) 위원은 지구가 확립한 절차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연차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가) 지구 재정 자원(RI, 로타리재단, 지구, 클럽 등)

- (나) 모금 활동을 통해 지구 이름으로 수령한 모든 기금
- (다) 로타리재단 보조금이나, 지구 용도로 지정된 로타리재단 기금
- (라) 지구위원회의 모든 회계 내역
- (마) 지구총재, 혹은 지구 이름으로 처리된 모든 회계 내역
- (바) 지구 기금의 모든 지출
- (아) RI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기금

연차 보고서는 다음 지구 회합에서 지구 재정에 관한 보고서 채택이 있을 것이라고 30일 동안 공고하여 모든 지구 클럽들의 대표들이 참석한 지구 회합에 제출되어 토론을 거쳐 채택되어야 한다. 그러한 회합이 열리지 않을 경우 차기 지구대회에 제출되어, 토론을 거쳐 채택되어야 한다. 연차 보고서가 토론 이후에 채택되지 않은 경우, 지구대회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되며 모든 지구 클럽들이 대표를 파견할 권한을 갖는 그 다음 지구 회합에서 토론을 거쳐 채택되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최소 30일 전부터 해당 회합에서 지구 재정에 관한 보고서 채택이 있을 것임을 공고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지구 회합이 개최되지 않으면 지구총재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우편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16.070. 총재 피지명자 자격요건

이사회가 특별히 허락하지 않는 한, 총재 피지명자 선출 시기에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로타리안은 총재 피지명자로 선출될 수 없다.

16.070.1. 모범적인 로타리안

해당 로타리안은 지구 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로타리 클럽의 모범적인 회원이어야 한다.

16.070.2. 완전한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로타리안

해당 로타리안은 회원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회원으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의 직업분류의 정당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16.070.3. 클럽 전 회장의 자격을 가진 자

해당 로타리안은 클럽 회장으로 그 임기를 완전히 마친 사람이거나 또는 클럽 초대 회장으로 임기를 창립일부터 6월30일까지 최소한 6개월 이상 마친 사람이어야 한다.

16.070.4. 로타리안의 총재 임무 수행 능력

해당 로타리안은 본 세칙 제16.090.항에 규정되어 있는 총재의 임무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의지와 책임감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16.070.5. 로타리안의 자격 확인

해당 로타리안은 RI 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총재의 자격, 임무 그리고 책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며, 그러한 자격, 임무 그리고 책임 등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는 진술서를 작성, 서명하여 사무총장을 경유, RI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한 진술서는 자신이 총재로서의 자격이 있으며, 총재의 임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어야 한다.

16.080. 총재 자격요건

이사회가 특별히 허락하지 않는 한, 총재는 총재 취임 시, 국제협회의의 전체 일정에 참석했어야 하며, 최소한 7년 이상 1개 또는 그 이상의 로타리클럽의 회원으로서, 본 세칙 제 16.070.항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6.090. 총재 임무

총재는 지구의 RI 임원으로서, 이사회의 전반적인 지휘 및 감독하에 임무를 수행한다. 총재는 지구 소속 클럽들을 지도하고 감독하여 로타리 강령을 증진할 의무가 있다. 지구총재는 지구 및 클럽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이사회가 개발한 지구 리더십 플랜에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지구총재는 지구 내 클럽들에게 영감과 동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지구총재는 또한 효율적인 클럽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전, 현, 그리고 차기 지구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지구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총재는 다음의 지구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가) 신규 클럽의 결성
- (나) 기존 클럽의 강화
- (다) 지구 내 각 클럽에 대한 현실적인 회원 목표 설정을 위해 지구 지도부 및 클럽 회장들과 협력함으로써 회원증강을 촉진
- (라) 프로그램 참여 및 재정 기부를 통해 로타리재단을 후원
- (마) 클럽 간 그리고 클럽과 RI 간의 원활한 관계를 증진
- (바) 지구대회를 계획 및 주재하고, 차기 총재의 차기회장연수회 및 지구연수협의회 계획과 준비를 지원
- (사)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연중 지구총재의 참석으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기에 개별 또는 복수 클럽들과의 공식 회합 실시:
 1. 로타리의 중요한 문제에 관심 집중
 2. 어려움에 처한 취약 클럽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 제공
 3. 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로타리안들에게 동기 부여
 4. 특히 규정심의회 후 클럽들의 정관 및 세칙이 RI 정관 문서에 부합하도록 지도
 5. 지구 내 로타리안들의 탁월한 헌신을 직접 표창
- (아) 지구 내 모든 클럽 회장 및 총무에게 뉴스레터 발송
- (자) 회장이나 이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RI 에 보고
- (차) 클럽 강화에 필요한 권고사항과 함께 클럽 상태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국제협의회 이전까지, 차기 총재 선출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차기 총재에게 제공
- (카) 지구의 임원 지명 및 선출이 RI 정관과 본 세칙, 그리고 RI 의 기존 방침에 따라 시행 되도록 보장
- (타) 지구 내 로타리 단체들의 활동(우정교환, 국가 간 위원회, 글로벌 네트워크링 그룹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 (파) 각종 지구 문서들을 차기 총재에게 인계
- (하) RI 임원으로서의 기타 고유 임무 수행

16.100. RIBI 지구총재의 임무

RIBI 지구총재의 임무는 전체 심의회의 지시하에 RIBI 정관 및 세칙에 부합되는 지역 고유의 관례를 수행하는 데 있다. 또한 RIBI 총재는 회장이나 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RI에 신속하게 보고하며, 지구의 RI 임원 고유의 기타 다른 업무들을 수행하여야 한다.

16.110. 해임

회장은 총재로서의 임무와 책임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총

재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회장은 해당 총재에게 통보하여, 해임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유를 30일 이내에 밝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3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면 회장은 해당 총재를 해임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해임된 총재는 전 총재로 간주되지 않는다.

16.120. 지구 우편 투표

지구 클럽들은 세칙에 의해 지구대회 또는 지구연수협의회에서 실시되도록 규정된 모든 결의 및 선거를 우편 투표로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우편 투표는 제14.040.항에 규정된 절차를 최대한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

제17조 위원회

17.010. 위원 수와 임기

17.020. 위원

17.030. 회합

17.040. 특별위원회

17.050. 임기

17.060. 위원회 총무

17.070. 정족수

17.080. 통신을 이용한 업무 처리

17.090. 권한

17.100. 멤버십 위원회

17.110. 전략 수립 위원회

17.120. 회계 감사 위원회

17.130. 운영 심의 위원회

17.010. 위원 수와 임기

이사회는 통신, 정관 및 세칙, 국제대회, 지구 재조정, 선거 심사, 재정, 그리고 로타랙트 및 인터랙트에 관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RI 에 크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타 위원회를 수시로 구성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와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통신 위원 6명, 이 중 2명은 3년 임기로 매년 임명, (2) 정관 및 세칙 위원 3명, 이 중 1명은 3년 임기로 매년 임명, 단, 규정심의회 연도에는 직전 위원 1 인을 4년 임기로 추가, 전체 위원 수를 4명으로 한다. (3) 국제대회 위원 6명, 이 중 1명은 연차 국제대회 주최국 조직위원회 위원장이어야 한다. (4) 지구 재조정 위원 3명, 이 중 1명은 3년 임기로 매년 이사회가 임명, (5) 선거 심사 위원 6명, 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매년 2명의 위원 임명, (6) 재정 위원 8명, 위원 6명의 임기는 3년이며 매년 2명의 위원 임명, RI 재무 그리고 이사회가 선출한 이사 1명은 투표권이 없는 위원으로서 임기는 1년, (7) 로타랙트 및 인터랙트 위원 6명, 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매년 2명의 위원을 임명하되 최소한 3명 이상의 로타랙터를 위원으로 추가.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기타 각 위원회 위원 수와 임기는 아래 제 17.050.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한다. 이사회는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정하되, 매년 위원회 위원들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020. 위원

세칙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회장은 이사회와 상의하여 각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위원들을 임명하고, 각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도 임명하여야 한다. 회장은 모든 RI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17.030. 회합

세칙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회장이 지정하여 통보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회합을 가져야 한다. 위원의 과반수가 정족수가 되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결정은 정족수의 과반수로 한다.

17.040. 특별위원회

본 세칙 제17.010.항에서 제17.030.항까지의 조항은 제 17.100.항에서 17.13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나 지명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7.050. 임기

세칙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위원은 최고 3년 동안 같은 RI 위원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 3년 동안 한 위원회에서 봉사한 위원은 같은 위원회에 계속 임명될 수 없다. 본 항의 규정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나 특별(ad-hoc) 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과거에 국제대회 위원회 위원으로 2년간 봉사하였으나 위원장으로는 봉사한 적이 없는 로타리안을 국제대회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7.060. 위원회 총무

세칙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또는 위원회 설치에 대해 이사회가 규정하지 않는 한, 사무총장이 모든 위원회의 총무가 된다. 사무총장은 다른 사람을 총무로 임명할 수 있다.

17.070. 정족수

세칙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또는 이사회에 의해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는 한, 모든 위원회 회의의 정족수는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17.080. 통신을 이용한 업무 처리

세칙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위원회는 이사회가 정한 절차 규정에 따라 적절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7.090. 권한

모든 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은 본 세칙 제 5.040.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다. 모든 위원회의 조치와 결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회장 피지명자를 선출하는 회장 지명위원회의 결정은 제외된다. 그리고 본 세칙 제11.060. 및 11.070.항의 위반에 따른 모든 결정과 조치는 전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이다.

17.100. 멤버십 위원회

이사회는 최소한 8명으로 구성된 멤버십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들의 임기는 최소한 3년으로 하고 시차를 두고 교체하며 재임명이 가능하도록 한다.

17.100.항과 관련된 임시 조항

2016 규정심의회에서 제정안 16-90에 따라 채택된 제17.100.항에 대한 개정은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사회에 의해 실행된다.

17.110. 전략 계획 위원회

RI 이사회와 로타리재단 이사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전략 계획 위원회를 임명한다. 위원들은 현직 이사회나 재단 이사가 아닌 사람들로 임명하고 4년을 임기로 하되, 매년 2명씩 새로 임명한다. 이 중 4명은 이사회가, 4명은 로타리재단 이사회가 임명한다. 이사회가 매년 1명을, 재단 이사회가 매년 1명을 임명한다. 전 회장은 동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들은 장기 전략 수립, RI 및/혹은 로타리재단 프로그램 및 활동, 재정 관리 등에 경험

이 있는 로타리안들로 균형있게 선출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회장이나 이사회, 로타리재단 이사장이나 로타리재단 이사회가 정하여 통보한 일시 및 장소에서 회합을 갖는다. 전략 계획 위원회는 RI 이사회와 재단 이사회가 심의할 전략을 개발, 건의 및 개정하고, 전략 계획에 관한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이사회와 재단 이사회에 제시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 3년에 한 번씩 로타리안들과 클럽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그 외에 이사회와 재단 이사회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회장과 로타리재단 이사장이 공동으로 임명한다. 3년 미만 봉사한 위원은 재임명될 수 있다.

17.110.항과 관련된 임시 조항

2016 규정심의회에서 제정안 16-93에 따라 채택된 제17.110.항에 대한 개정은 RI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동 이사회에 의해 실행된다.

17.120. 회계 감사 위원회

이사회는 회계 감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는 재정 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이사회가 매년 현직 이사 중에서 2명을, 그리고 로타리재단 이사회가 매년 현직 재단 이사 중에서 1명을 임명하여 위원으로 활동하게 한다. 또한 이사회는 RI 이사회나 재단 이사가 아닌 4명을 6년 임기로 임명한다. 회계 감사 위원회는 RI 및 로타리재단 재정 보고서, 외부 회계 감사, 내부 출납 관리 제도의 통제, 내부 감사 및 기타 이와 관련된 모든 재정 문제들을 감사하고 이를 전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회장, 이사회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여 통보한 시간과 장소에서 연 3회까지 회합을 갖는다.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회장 또는 이사회가 결정하여 통보한 시간과 장소에서 추가 회의를 가질 수 있다. 운영 심의 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위원회 연락 위원으로 봉사한다. 이 위원회는 본 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RI 이사회 및 재단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17.120.항과 관련된 임시 조항

발효일인 2016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이사회나 재단 이사가 아닌 1명의 추가 위원이 2017년 7월 1일부터 6년 임기를 시작하고, 이사회나 재단 이사가 아닌 다른 1명의 추가 위원이 2018년 7월 1일부터 6년 임기를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

17.130. 운영 심의 위원회

이사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 심의 위원회를 임명하여야 한다. 각 위원은 단임으로 6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회 규모를 6명으로 유지하기에 적절하도록 매년 1명의 위원이 임명되어야 한다. 전 회장이나 현직 이사 또는 로타리재단 이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들은 경영, 리더십 개발, 또는 재정 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로타리안들로 균형있게 선임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회장이나 이사회가 정하여 통보한 일시 및 장소에서 회합을 갖는다. 이사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운영 심의 위원회는 운영 절차의 효율성, 관리 절차, 행동 기준 등을 포함한 모든 운영상의 문제를 심의한다. 위원회는 이사회와 자문 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며, 본 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활동한다. 운영 심의 위원회는 이사회 전체 회의에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재정 사항

18.010. 회계 연도

18.020. 클럽 보고서

18.030. 회비

18.040. 납부일

18.050. 예산

18.060. 5개년 재정 전망

18.070. 회계 감사

18.080. 보고서

18.010. 회계 연도

RI의 회계 연도는 7월 1일에 시작하여 6월 30일에 끝난다.

18.020. 클럽 보고서

모든 클럽은 매년 이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7월 1일과 1월 1일 또는 이사회가 정한 다른 날짜를 기해 클럽의 회원 수에 대한 증명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8.030. 회비

18.030.1. 회원 1인당 회비

모든 클럽들은 클럽 회원 각각에 대한 1인당 회비를 RI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6-2017년도 반기별 1인당 회비는 미화 28.00달러, 2017-2018년도 반기별 1인당 회비는 미화 30.00달러, 2018-2019년도 반기별 1인당 회비는 미화 32.00달러, 2019-2020년도 및 그 이후 반기별 1인당 회비는 미화 34.00달러이다. 이 회비는 규정심의회에서 변경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18.030.2. 추가 회비

각 클럽은 차기 규정심의회 및 결의심의회 예상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매년 회원 1인당 미화 1달러, 또는 이사회가 정한 유사한 금액의 추가 회비를 RI에 납부하여야 한다. 클럽이 RI에 회비로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은 없다. 만일 규정심의회 임시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1인당 추가 회비는 회의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이러한 추가 회비는 이사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의 경비와 심의회 운영 경비에 사용하기 위해 용도가 제한된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수입 및 지출 보고서를 클럽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8.030.3. 회비의 환불 도는 감액

이사회는 상기 회비 중 이사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액수를 클럽에게 환불할 수 있다. 요청에 따라, 이사회는 자연재해 또는 이와 유사한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소재한 클럽이 납부할 1인당 회비를 감액시키거나 그 납부일을 연기할 수 있다.

18.030.4. RIBI의 회비 납부

RIBI 지역의 모든 클럽들은 제18.030.1.항의 규정에 따라, RI를 대행하는 RIBI를 통해 RI에 회원 1인당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RIBI는 제18.030.1.항의 규정에 의거해 산정된 RI 1인당 회비의 절반을 보유하고, 나머지 금액을 RI에 납부하여야 한다.

18.030.5. 납부 회비의 조정

이사회는 어떤 국가의 통화가 평가 절하되어 그 지역의 클럽들이 RI에 대한 재정 의무 이행을 위해 과도한 자국 통화를 납부하여야만 될 경우, 해당 국가 클럽들의 납부 회비를 조정할 수 있다.

18.040. 납부일

18.040.1. 1인당 회비 납부일

1인당 회비는 본 세칙 제18.030.1.항에 따라 매년 7월 1일과 1월 1일 혹은 이사회가 정하는

다른 날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8.030.2.항과 관련된 회비는 7월 1일 혹은 이사회가 정하는 다른 날짜에 납부하여야 한다.

18.040.2. 비례 할당 회비

클럽 회원으로 선출된 각 회원에 대하여 클럽은 다음 회비 청구 주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비례 할당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비례 할당 월 회비는 RI 회원 1인당 연회비의 1/12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그러나, 본 세칙 제 4.030.항에 규정된 이직 회원 또는 다른 클럽의 전 회원에 대해서는 비례 할당 회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1인당 비례 할당 회비는 7월 1일과 1월 1일 혹은 이사회가 정하는 다른 날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금액은 규정심의회에서 변경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18.040.3. 통화

회비는 미화로 RI에 납부한다. 그러나 미화 납부가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일 경우, 이사회는 다른 통화로 납부하는 것을 클럽에 허가할 수 있다. 또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회비 납부 일자를 연기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 이사회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8.040.4. 신규클럽

모든 신규클럽은 가입 승인일 이후 제18.040.1.항에 따른 1인당 회비 납부일까지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18.050. 예산

18.050.1. 이사회회의 채택

매년 이사회는 다음 회계 연도의 RI 예산을 채택하여야 한다. 예산에 반영된 총 예상 지출이 총 예상 수입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18.050.2. 예산 수정

그러한 예산은 총 예상 지출이 총 예상 수입을 초과하지 않는 한, 이사회에 의해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

18.050.3. 예산 지출

이사회가 승인한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한 어떠한 RI 기금 지급도 실행할 수가 없다. 사무총장은 이 조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18.050.4. 예산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 비상 사태 및 예기치 못한 상황

이사회는 비상 사태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한하여, 전체 이사 4분의 3의 찬성으로, 예산 수입을 초과하는 비용의 지출을 승인할 수 있다. 단, RI의 순자산액을 초과하여 부채를 초래하는 지출은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회장은 60일 이내에 그러한 초과 경비의 내역과 이를 초래한 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RI의 모든 임원에게 보고하고, 또한 다음 국제대회에서도 보고하여야 한다.

18.050.5. RI의 연간 예산 공표

본 세칙 제18.050.1.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RI의 예산은 이사회가 결정한 양식으로 공표되어야 하며, 각 로타리 연도 9월 30일 이전까지 모든 로타리클럽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8.050.6. 예산 수입을 초과한 경비와 일반 잉여금

제18.050.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잉여금이 일반 잉여금으로부터의 지출과 연례 국제대회 및 규정심의회에 대한 자체 충당 경비를 제외한 가장 최근 3년간의 최고 연간 경

비의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는 4분의 3의 찬성으로 예상 수입을 초과하는 경비 지출을 승인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지출로 인해 일반 잉여금이 상기 85 퍼센트 수준의 100 퍼센트 이하로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회장은 60일 이내에 이러한 초과 경비의 내역과 이를 초래한 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RI의 모든 임원에게 보고하고, 또한 다음 국제대회에서도 보고하여야 한다.

18.060. 5 년 재정 전망

18.060.1. 5개년 계획의 매년 심사

이사회는 매년 재정 5개년 계획을 심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계획에는 RI 의 총 수입과 총 지출의 진전 내역이 기술되어야 하고, RI의 자산, 부채 및 기금 잔액의 진전 내역도 기술되어야 한다.

18.060.2. 5개년 계획의 규정심의회 제출

이사회는 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 중인 모든 입법안의 배경 자료로써 재정 5개년 계획을 규정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8.060.3. 계획 연도와 규정심의회 개최 연도의 일치

5개년 재정 계획의 1차 연도는 규정심의회 개최 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18.060.4. 로타리 연수회에 5개년 재정 계획 제출

이사회 이사 혹은 이사회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의해 로타리 5개년 재정 전망이 각 로타리 연수회에 제시되어야 한다.

18.070. 회계 감사

이사회는 최소한 연 1회 RI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감사는 공인 회계사나 감사사가 실시되는 국가나 주 또는 도에서 인정한 회계 감사인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사무총장은 이사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언제나 회계 장부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18.080. 보고서

사무총장은 회계 연도 종료 후 12월말 이전에 감사필 RI 연차 보고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그러한 보고서는 회장과 차기 회장, 차차기 회장 그리고 각 이사에게 지출된 경비 변제와 그들을 대신하여 집행된 모든 지출을 각 직책별로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회장, 이사회, 국제대회, 기타 사무국의 주요 관리 및 운영 부서들의 지출 내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들 각 항목을 본 세칙 제18.050.1.항에 따라 채택된 예산과 비교한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8.050.2.항에 의거 수정한 것을 첨부한다. 보고서에는 각 비용 항목별로 승인된 예산과 10 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지출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보고서는 RI의 모든 현 및 전 임원들에게 배포되어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클럽에게도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규정심의회 개최 직전 연도의 보고서는 규정심의회 개최 최소한 30일 전에 사무총장에 의해 모든 규정심의회 의원들에게 우송되어야 한다.

제19조 명칭 및 휘장

19.010. RI 지적소유권 보호

19.020. RI 지적소유권 사용 제한

19.010. RI 지적소유권 보호

이사회는 RI의 휘장, 배지 및 기타 기장 등을 모든 로타리안들의 독점적인 사용과 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를 유지, 보호하여야 한다.

19.020. RI 지적소유권 사용 제한

어떠한 클럽이나 회원도 RI 및 클럽의 명칭, 휘장, 배지 또는 기장 등을 등록상표나 특수 상품명으로 또는 기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RI는 그러한 명칭, 휘장, 배지 또는 기장 등을 다른 명칭이나 휘장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제20조 기타 회의**20.010. 국제협의회****20.020. 로타리 연수회****20.030. 전 회장 심의회****20.040. 회의 절차****20.010. 국제협의회****20.010.1. 목적**

국제협의회는 매년 개최된다. 국제협의회는 차기 총재들에게 로타리에 대한 교육, 관리 업무 안내, 동기 부여 및 영감을 제공하고, 다음 연도 동안의 로타리 프로그램과 활동의 실행 방안에 관하여 토의하고 계획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20.010.2. 시기 및 장소

이사회는 국제협의회 개최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차기 회장이 국제협의회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지며, 협의회 준비를 감독하기 위하여 구성된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국제협의회는 2월 15일 이전에 개최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국제협의회 개최 지 선정 시, 단지 국적을 이유로 로타리안들의 참가자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0.010.3. 참가자

국제협의회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자는 회장, 이사, 차기 회장, 차기 이사, 차차기 이사, 사무총장, 차기 총재, RIBI 지역의 차기 임원, RI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기타 이사회가 지정한 사람들이다.

20.010.4. 특별 또는 구역별 협의회

이사회는 긴급 또는 특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2개 이상의 특별 협의회나 구역별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20.020. 로타리 연수회

회장은 RI 전, 현, 차기 임원들과 컨비너가 초청한 게스트들이 참석하는 로타리 정보를 위한 연례 회합인 로타리 연수회 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로타리 연수회는 RI, 단독 존, 존 내 지역 또는 존 합동으로 개최될 수 있다.

20.030. 전 회장 심의회**20.030.1. 구성 방법**

전 회장 심의회는 상임 기구로서, 클럽 회원 자격을 갖고 있는 전 회장들로 구성된다. 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갖는다, 그러나 의사 진행 과정에서 투표권은 없다.

20.030.2. 임원

전 회장 심의회의 의장은 직전 회장의 그 전 회장이 된다. 직전 회장은 전 회장 심의회의 부의장으로 봉사한다. 사무총장은 전 회장 심의회의 총무가 되나 위원은 아니다.

20.030.3. 임무

전 회장 심의회는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회장이나 이사회가 조회한 사안을 심의하며 그에 관하여 이사회에 자문과 권고를 할 수 있다. 심의회는 또한 이사회에 요청에 따라 클럽, 지구 그리고 임원들 간의 문제를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030.4. 회합

전 회장 심의회 위원들의 협의를 거친 심의와 권고가 필요할 경우, 회장이나 이사회는 전 회장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한 회의에는 회장이나 이사회가 조회한 주제를 포함한 의사일정이 있어야 한다. 전 회장 심의회 의장은 회합 후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회가 이 보고서 전체나 일부를 발표하지 않는 이상, 이 보고서는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20.030.4.1. 국제대회 및 국제협의회에서의 회합

전 회장 심의회는 국제대회 또는 국제협의회에서 개최된다.

20.040. 회의 절차

로타리 회합, 협의회, 대회 또는 국제대회 등의 위원장은 정관 및 세칙 또는 RI가 채택한 특별 절차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모든 절차상의 문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공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각 회의의 특정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제21조 공식잡지

21.010. 공식잡지 발행 권한

21.020. 구독료

21.030. 잡지 구독

21.010. 공식잡지 발행 권한

이사회는 RI의 공식잡지의 발행을 책임진다. 공식잡지는 이사회 승인에 따라 여러 종류의 판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기본판은 영어로 하고, 영문판의 명칭은 “더 로타리안(The Rotarian)”으로 한다. 공식잡지의 목적은 RI의 목적과 로타리 강령을 증진시키는 이사회에 도움을 주는 매체로 공헌하는 데 있다.

21.020. 구독료

21.020.1. 구독료

이사회는 모든 공식잡지의 구독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21.020.2. 구독 의무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클럽 회원들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공식잡지의 유료 구독자가 된다. 2명의 로타리안이 같은 주소에 거주할 경우 공동 구독할 수 있다. 클럽은 회원들로부터 구독료를 수급하여 이를 회원을 대신하여 RI에 송금하여야 한다. 각 로타리클럽은 로타리 잡지를 책자로 구독할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구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21.020.3. 잡지 수입

잡지 연간 수입은 잡지의 발행 및 개선 방안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지출

대비 수입 초과분은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연도 말에 RI의 일반 잉여금으로 이월되어야 한다.

21.030. 잡지 구독

21.030.1. 구독 의무

미국과 캐나다 외의 국가에 소재한 클럽의 모든 회원은 RI 공식잡지와 이사회가 승인한 지역 로타리 잡지 중 1가지를 의무적으로 구독하여야 한다. 2명의 로타리안이 같은 주소에 거주할 경우 공식잡지 또는 이들의 클럽 또는 클럽들을 위해 이사회가 승인, 지정한 로타리 잡지를 공동 구독할 수 있다. 회원들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계속 정기 구독을 하여야 한다. 각 회원은 인쇄 잡지의 우편 구독과 전자 잡지가 발행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구독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21.030.2. 구독 의무 면제

공식잡지나 이사회가 승인한 지역 로타리 잡지에 사용된 언어를 회원들이 읽을 수 없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클럽에게 본 항의 의무 구독 규정을 면제해 줄 수 있다.

제22조 로타리 웹사이트

이사회는 웹상에 RI 사이트를 개설하여 유지할 책임을 진다. 이 웹사이트는 로타리 웹사이트로 부르며, 이사회가 승인한 여러 개의 언어로 개설되어야 한다. 이 웹사이트의 목적은 이사회가 RI 목적과 로타리 강령을 증진하는 것을 돕는 데 있다. RI, 지구, 클럽은 각각 적절한 언어로 된 웹사이트를 보유할 것이 권장되며, 동 웹사이트에는 가능한 한 로타리 웹사이트로의 링크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 로타리재단

23.010. 재단의 목적

23.020. 재단 이사회

23.030. 재단 이사의 임기

23.040. 재단 이사의 보수

23.050. 재단 이사회에 의한 지출

23.060. 재단 이사회 보고서

23.010. 재단의 목적

RI의 로타리재단은 재단의 법인 설립 규약 및 세칙에 따라 로타리재단 이사회에 의하여 자선 및 교육 목적에 국한하여 운영된다. 재단의 법인 설립 규약 및 세칙은 RI 이사회의 동의 하에 재단 이사회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23.020. 재단 이사회

재단 이사회는 임기 시작 전년도에 차기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한 15명의 재단 이사로 구성된다. 재단 이사 중 4명은 전 RI 회장이어야 한다. 모든 재단 이사는 재단의 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3.020.1. 재단 이사직의 공석

재단 이사직에 공석이 생겼을 경우, 잔여 임기를 수행할 새로운 재단 이사를 회장이 지명하여 RI 이사회가 선출한다.

23.030. 재단 이사의 임기

재단 이사의 임기는 4 년으로 한다. 재단 이사는 재임명될 수 있다.

23.040. 재단 이사의 보수

모든 재단 이사는 무보수로 봉사한다.

23.050. 재단 이사회에 의한 지출

재단 이사회는 RI 이사회의 승인하에서만 재단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단, 다음 2가지 유형의 지출은 재단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다: (1) 재단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재단에 기증된 자산의 수입금이나 원금을 기증이나 유증 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지출하는 경우.

23.060. 재단 이사회 보고서

재단 이사회는 재단의 각종 프로그램과 재정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RI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한 로타리재단 연차보고서에는 모든 재단 이사 개인 앞으로 지출된 경비 변제와 그 들을 대신하여 집행된 모든 지출이 각 직책별로 기술되어야 한다.

제24조 면책

이사회는 RI 이사, 임원, 직원, 그리고 대리인 등에 대한 면책 정책을 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5조 중재와 화해

25.010. 분쟁

25.020. 화해 혹은 중재 일정

25.030. 화해

25.040. 중재

25.050. 중재인 혹은 판정인의 결정

25.010. 분쟁

RI 이사회 결정을 제외하고 로타리클럽의 전 회원 혹은 현 회원과 지구, 국제로타리, RI 임원 간의 분쟁 혹은 기타 우호적으로 타결되지 않는 모든 분쟁은 한 쪽 당사자가 사무총장에게 요청할 경우 화해 절차에 의해 타결되며, 화해가 거부될 경우 중재에 의해 타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화해나 중재 요청은 분쟁이 발생한 지 6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5.020. 화해 혹은 중재 일정

화해 혹은 중재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회는 분쟁 요청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화해 혹은 중재를 위한 날짜를 결정한다.

25.030. 화해

화해 절차는 RI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분쟁 당사자 중 한 쪽이 사무총장에게 혹은 이 같은 목적을 위해 사무총장이 임명한 사람에게 분쟁 당사자들이 소속된 클럽이 아닌 다른 로타리클럽 소속으로 이 분야의 적절한 능력과 경험을 지닌 화해자의 임명을 요청한다.

25.030.1. 화해 결과

화해 절차를 통해 합의된 결정이나 결과는 문서화하여 양쪽 당사자와 화해자가 보관하고, 사무총장이 보관할 사본 1부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수락할 수 있는 화해 결과를 담은 요약서도 양측을 위해 준비된다. 만약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화해 입장을 크게 후퇴할 경우, 사무총장을 통하여 화해를 또다시 요청할 수 있다.

25.030.2. 성공하지 못한 화해

화해가 요청되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본 조 제25.040.항의 규정에 따라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25.040. 중재

중재 요청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중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중재인은 판정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분쟁 당사자들의 소속이 아닌 다른 로타리클럽의 회원만이 중재인, 혹은 판정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25.050. 중재인 또는 판정인의 결정

중재가 요청된 경우, 중재인들에 의한 결정이나, 혹은 중재인들이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판정인의 결정이 최종적이며, 이는 모든 당사자들을 기속하며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5.060. 화해 혹은 중재 비용

화해 혹은 중재에 의한 분쟁 타결의 비용은 화해자나 판정인의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분쟁 당사자 양쪽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26조 개정

본 세칙은 제7.060.항의 규정심의회 임시 회합 규정을 제외하고는 규정심의회에 출석한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4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조	제목	페이지
1	정의	77
2	명칭	77
3	목적	77
4	소재지	77
5	강령	77
6	5대 봉사	78
7	정기모임 및 출석 조항에 대한 예외	78
8	회합	78
9	회원 자격 조항에 대한 예외	79
10	회원	79
11	직업분류	80
12	출석	80
13	이사, 임원 및 위원회	82
14	회비	83
15	회원 자격의 존속 기간	83
16	지역사회, 국가 및 국제 문제	86
17	로타리 잡지	86
18	강령의 수락과 정관 및 세칙의 준수	86
19	중재와 화해	86
20	세칙	87
21	해석	87
22	개정	87

로타리클럽 정관*

제1조 정의

본 정관에 사용된 단어들은, 문맥상 분명히 다르게 정의할 필요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1. 이사회: 본 클럽 이사회
2. 세칙: 본 클럽 세칙
3. 이사: 본 클럽 이사회의 구성원
4. 회원: 본 클럽 명예회원 이외의 회원
5. RI: 국제로타리 (Rotary International)
6. 위성클럽: 스폰서 클럽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잠재적 클럽(해당될 경우)
7. 연도: 7월 1일에 시작되는 12개월의 기간

제2조 명칭

본 조직의 명칭은 _____ 로타리클럽이라고 한다.
(국제로타리 회원)

(본) 클럽의 위성클럽(해당될 경우)의 명칭은 _____ 로타리 위성클럽이라고 한다.
(로타리클럽의 위성클럽)

제3조 목적

본 클럽은 로타리 강령을 추구하고, 5대 봉사부문에 기초한 봉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멤버십 강화와 로타리재단 지원 그리고 클럽 차원을 넘어 로타리에 봉사할 지도자 육성 등을 통해 로타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소재지

본 클럽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_____

제5조 강령

로타리의 목적은 봉사의 이상을 모든 가치 있는 사업 활동의 기초가 되도록 고취하고 육성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힘써 행하는 데 있다:

- 첫째, 봉사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우의 범위를 넓힌다.
- 둘째, 사업과 전문직업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진가를 인식하며, 로타리안 각자는 자기 직업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직업의 품위를 높인다.
- 셋째, 로타리안 각자의 개인 생활이나 사업 활동 및 사회 생활에서 봉사의 이상을 실천한다.

* 국제로타리 세칙은 국제로타리 회원으로 가입한 각 로타리클럽이 본 로타리클럽 정관을 채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 봉사의 이상으로 결합된 사업인과 전문직업인들은 세계적 우의를 통하여 국제간의 이해와 친선과 평화를 증진한다.

제6조 5대 봉사

로타리의 5대 봉사는 로타리클럽 활동의 철학과 실질적인 골격을 이룬다.

1. 클럽봉사, 첫 번째 봉사 부문으로, 클럽이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회원이 클럽 내에서 해야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직업봉사, 두 번째 봉사 부문으로, 사업과 직업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진가를 인식하며, 모든 직업에서 봉사의 이상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의 역할은 개인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 로타리의 원칙에 따라 생활하고 사회적 문제와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 클럽이 개발한 프로젝트에 자신의 직업 기술을 기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사회봉사, 세 번째 봉사 부문으로, 클럽이 속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펼치는 클럽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4. 국제봉사, 네 번째 봉사 부문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돕기 위한 클럽의 모든 활동과 프로젝트를 포함하며, 이를 위한 서신 연락이나 독서를 통하여, 그 나라의 국민과 문화, 관습, 성취, 염원, 문제 등에 익숙해짐으로써, 국제 이해와 선의 그리고 평화를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 봉사, 다섯 번째 봉사 부문으로, 리더십 개발 활동과 국내외 봉사 프로젝트, 세계 평화 및 이해 증진을 위한 교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들과 젊은 성인들에 의한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제7조 정기모임 및 출석 조항에 대한 예외

클럽 세칙은 본 정관의 제8조 1항, 제12조, 그리고 제15조 4항에 부합하지 않는 규칙 또는 요건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규칙 또는 요건은 동 정관 조항들에 명시된 규칙 또는 요건을 대체한다. 그러나 클럽은 매달 최소한 2회 모임을 가져야 한다.

제8조 회합

제1항 - 정기모임

[본 항의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제7조 ‘정기모임 및 출석에 대한 예외’ 참조]

- (가) 날짜 및 시간. 본 클럽은 매주 1회, 세칙에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정기모임을 갖는다. 출석은 대면 모임에 참석하거나, 온라인 모임에 참석하거나, 혹은 대면 모임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대신 온라인을 통해 참석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또한 클럽은 대면 모임 대신 매주 1회, 혹은 사전에 정한 주간에, 클럽 웹사이트에 인터랙티브 활동을 게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웹사이트에 인터랙티브한 활동이 게재된 날짜에 모임이 개최된 것으로 간주한다.
- (나) 일정 변경.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이전 모임 다음 날부터 그 다음 정기모임 전날까지 중의 다른 날짜에, 또는 정기모임 날짜 중의 다른 시간에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모임 장소도 변경할 수 있다.
- (다) 취소. 만일 정기모임 날짜가 일반 공휴일을 포함한 법정 공휴일에 해당되거나, 일반 공휴일을 포함한 법정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 해당되거나, 클럽 회원이 사망했거나,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전염병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클럽 회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력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는 모임을 취소할 수 있

다. 본 클럽의 이사회는, 재량에 의해, 본 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다른 이유가 있을 경우, 한 로타리 연도 중에 4회까지 정기모임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연속적으로 3회를 초과하여 취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라) 위성클럽 회합(해당될 경우). 세칙에 규정된 경우, 위성클럽은 회원들이 정한 장소, 날짜 및 시간에 정기모임을 갖는다. 정기모임의 날짜, 시간 및 장소는 본 조 1(나)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본 클럽의 모임과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다. 위성클럽의 정기모임은 본 조 1(다)항에 열거된 사유 중 하나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투표 절차는 세칙에 규정된 바를 따른다.

제2항 - 연차 총회

- (가) 클럽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연차 총회는 클럽 세칙의 규정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최되어야 한다
- (나) 위성클럽(해당될 경우). 위성클럽을 관리할 임원 선출을 위해 연차 총회는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최되어야 한다.

제3항 - 이사회. 매 이사회마다 서면으로 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회의록은 해당 이사회 60일 이내에 모든 회원들이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 회원 자격 조항에 대한 예외

클럽 세칙은 본 정관의 제10조 2항과 4~8항에 부합하지 않는 규칙 또는 요건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 또는 요건은 동 정관 조항들에 명시된 규칙 또는 요건을 대체한다.

제10조 회원

[본 정관 제10조 2항 그리고 4~8항에 대한 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제9조 ‘회원 자격 조항에 대한 예외’를 참조]

제1항 - 일반 자격 조건. 클럽은 선량한 인격과 정직성 및 리더십을 갖추고, 사업이나 종사하는 직업 분야 그리고/또는 지역사회에서 평판이 좋은 성인으로서, 소속 지역사회 그리고/또는 전 세계를 위해 봉사하려는 의지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다.

제2항 - 종류. 본 클럽은 2종류의 회원, 즉,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제3항 - 정회원. RI 정관 제5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회원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본 클럽의 정회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제4항 - 위성클럽 회원. 위성클럽의 회원은 동 위성클럽이 RI에 회원 클럽으로 정식 가입될 때까지 스폰서 클럽의 회원이 된다.

제5항 - 이중 회적. 어떠한 사람도 본 클럽과 본 클럽의 위성클럽을 제외한 다른 클럽에서 동시에 정회원이 될 수 없다. 어떠한 사람도 본 클럽의 정회원과 명예회원 자격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

제6항 - 명예회원

- (가) 명예회원 자격. 로타리 이상 증진에 있어서 탁월한 공적이 있는 사람과 로타리 운동을 지원해 주고 있어 로타리의 친구로 생각되는 사람은 본 클럽의 명예회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그러한 회원 자격의 기간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2개 이상의 클럽에서 명예회원 자격을 보유할 수 있다.
- (나) 권리 및 특전.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가 면제되나, 투표권이 없고, 본 클럽의 어떤 직책도 가질 수 없다. 명예회원은 직업분류를 보유할 수 없으나, 모든 클럽 회합에 참석할 수 있으며 본 클럽의 다른 모든 특전을 누릴 자격이 있다. 본 클럽의 명예회원은 로타리안의 게스트(Guest)가 되지 않고도 다른 클럽을 방문할 수 있는 권리를 제

외하고는 기타 다른 클럽에서 어떠한 권리와 특전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제7항 - 공직 보유자. 특정 기간 동안 공직에 선출되거나 임명된 사람은 그러한 공직의 직업분류 하에서 본 클럽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다. 이 제한은 학교, 대학 또는 기타 교육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나 사법관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회원으로 특정 기간 동안 공직에 선출되거나 임명된 사람은 공직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기존의 직업분류로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8항 - 국제로타리 피고용인. 본 클럽은 RI의 피고용인을 회원으로 보유할 수 있다.

제11조 직업분류

제1항 - 일반 조항

(가) 주된 활동. 본 클럽의 정회원은 회원의 사업이나 종사하고 있는 직업, 혹은 지역사회 봉사 활동의 종류에 따라 분류된다. 각 정회원의 직업분류는 본인이 관계하고 있는 회사 또는 단체의 주된 업무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업 활동이거나, 또는 본인 자신의 주된 생업 활동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업 및 직업 활동, 혹은 회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성격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야 한다.

(나) 수정 또는 조정. 이사회는, 만일 사정상 필요하다면, 재량으로 회원의 직업분류를 수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정 또는 조정은 해당 회원에게 예고되어야 하며, 해당 회원에게는 이에 대한 청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2항 - 제한. 동일한 직업분류에 5명 이상의 정회원이 있을 경우, 더 이상 그 직업분류에 정회원을 추가할 수 없다. 단, 회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해당 직업분류의 회원수가 클럽 정회원 총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본항의 내용과 상반되는 경우, 클럽은 1개 또는 그 이상의 직업분류에 해당하는 정회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위에 명시된 회원의 수를 초과할 수는 없다. 은퇴자는 직업분류를 보유한 회원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적 회원, 전 회원, 로타랙터 혹은 RI 이사회가 규정한 로타리 동창의 직업분류로 인해 클럽의 직업분류 제한이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들이 클럽의 정회원으로 선출되는 일이 제한을 받아서서는 안 된다. 만일 회원의 직업분류가 변경되면, 클럽은 이러한 규정에 관계없이 새로운 직업분류 하에 해당 회원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시킬 수 있다.

제12조 출석

[본 항의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제7조 '정기모임 및 출석에 대한 예외' 참조]

제1항 - 일반 조항. 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본 클럽 또는 세칙에 규정된 경우 위성클럽의 정기모임에 출석하여야 한다. 회원이 정기모임 개최 시간에 직접 혹은 온라인으로 최소한 60 퍼센트 이상을 출석하거나, 또는 출석 중에 갑작스러운 일로 호출되어 차후에 그러한 행동이 합리적이었다고 이사회가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또는 클럽 웹사이트에 정기모임이 게재된 후 1주일 내에 해당 인터랙티브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다음에 기술된 한 가지 방법으로 출석보전을 할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가) 회합 전후 14일. 해당 회합의 정규 시간 전후 14일 이내에, 해당 회원이
 - (1) 타 클럽 또는 가클럽의 정기모임이나 혹은 타 클럽의 위성클럽 정기모임의 60 퍼센트 이상을 출석하거나,
 - (2) 로타랙트 클럽 또는 인터랙트 클럽, 로타리 지역사회 봉사단, 로타리 동호회 또는 가로타랙트 클럽이나 가인터랙트 클럽, 가로타리 지역사회봉사단, 가로타리 동호회에 참석하거나,

- (3) 로타리 국제대회, 규정심의회, 국제협의회, 국제로타리 이사회나 이사회를 대표하는 국제로타리 회장이 승인하여 개최되는 전/현/차기 임원 연수회 또는 기타 회의, 로타리 지역대회, 국제로타리 위원회, 로타리 지구대회, 로타리 지구연수협의회, 국제로타리 이사회에의 지시에 따라 개최된 지구 모임, 지구총재의 지시에 따라 개최되는 지구 임원회나 정식으로 공고된 로타리클럽의 도시간 합동 모임 등에 참석했거나,
- (4) 타 클럽 정기모임 또는 타 클럽의 위성클럽 정기모임에 출석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 출석했으나 해당 클럽이 그 시간과 장소에서 회합을 갖지 않았거나,
- (5) 클럽의 봉사 프로젝트나 클럽이 스폰서하는 지역사회 행사 또는 이사회가 승인한 회합에 참석하거나,
- (6) 이사회에 출석하거나, 이사회가 승인한 것으로 해당 회원의 소속 봉사위원회 회합에 참석하는 경우,
- (7) 클럽 웹사이트에서 30분 이상 회원들간의 상호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회원이 14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 본 조항에서 정한 기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원은 여행 기간 중 어느 때라도 외국에서 개최되는 클럽 또는 위성 클럽의 모임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출석은 회원이 해외 여행을 하는 동안 국내 소속 클럽의 정기모임에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하게 출석보전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 회합 개최 시, 클럽의 정기모임이 개최되는 시간에,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회원은 출석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 (1) 본 항 (가) (3)에 명시된 한 회합에 참석하기 위하여 여행 중이거나,
- (2) 국제로타리의 임원이나 위원회 위원 또는 로타리재단 이사로 로타리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 (3) 지구총재의 특별 대표로서 신규 클럽 결성을 위한 로타리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 (4) 국제로타리의 피고용인으로 로타리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 (5) 출석보전이 전혀 불가능한 먼 지역에서 지구가 스폰서하거나 국제로타리나 로타리재단이 스폰서하는 봉사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거나,
- (6) 본 클럽의 이사회가 승인한 로타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인해 본 클럽의 정기모임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제2항 - 외지 파견 근무에 따른 장기간 결석. 회원이 장기간 파견 근무를 하게 될 경우, 본 클럽과 해당 회원의 근무지 지정 클럽 간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면 근무지 클럽 정기모임의 출석을 본 클럽 모임의 출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항 - 출석 면제.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이 면제된다.

- (가) 이사회가 인정하는 조건과 여건에 따른 결석. 이사회는 적절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회원의 출석을 면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면제 혜택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의료상의 사유로 혹은 출산, 입양, 자녀 양육과 같은 사유로 출석이 면제된 경우, 이사회는 출석 면제 기간을 첫 12개월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
- (나) 회원 연령과 1개 이상의 클럽에서의 회원 연수를 합한 수가 85년 이상이며 1개 이상의 클럽에서의 회원 연수가 적어도 20년 이상임과 더불어 회원이 출석 면제 요청서를 클럽 총무에게 제출하여 이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 해당 회원의 출석을 면제할 수 있다.

제4항 - RI 임원의 결석. RI의 현직 임원 또는 그 로타리안 배우자의 결석은 용납된다.

제5항 - 출석기록. 본 조 3(가)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을 면제받은 회원이 정기모임에 결석한 경우 그 회원의 결석은 출석기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본 조 3(나)항 및 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을 면제받은 회원이 정기모임에 출석한 경우 그 회원의 출석은 클럽의 출석을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이사, 임원 및 위원회

제1항 - 관리 기관. 본 클럽의 관리 기관은 본 클럽 세칙에 따라 구성된 이사회이다.

제2항 - 권한. 이사회는 모든 임원과 위원회를 통괄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어떤 임원이나 위원도 해임시킬 수 있다.

제3항 - 이사회 결정의 최종성. 클럽의 모든 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정은 최종적이다. 단, 클럽에 이의는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의 자격을 종결시키는 결정에 있어서는 본 정관 제15조 6항에 따라, 해당 회원이 클럽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화해 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가 지정한 정기모임에서 정족수의 출석으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사회 결정은 반복할 수 있다. 이 경우 총무는 해당 정기모임 개최일로부터 최소한 5일 전에 이의 사항을 모든 회원들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이의 제기의 경우에는, 클럽의 결정이 최종적이다.

제4항 - 임원. 본 클럽의 임원은 회장, 직전 회장, 차기회장, 총무, 그리고 재무이며, 1명 또는 수명의 부회장이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이사회의 이사가 된다. 사찰 1명이 클럽 임원에 포함될 수 있으며, 동 사찰은 클럽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이사가 될 수 있다. 세칙에 규정된 경우, 클럽 임원들은 위성클럽 정기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제5항 - 임원의 선출

(가)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각 임원은 클럽 세칙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다.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선출 직후의 7월 1일에 취임하여 규정된 임기 또는 후임자가 선출되어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 봉사한다.

(나) 회장의 임기. 회장은 클럽 세칙의 규정에 따라 회장 취임 전 18개월에서 2년 사이에 선출되어야 하며, 선출되면 차차기 회장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차차기회장은 회장으로 취임하는 연도 1년 전 7월 1일부로 차기회장이 된다. 회장은 재임 예정 로타리 연도의 7월 1일에 취임하여 선출된 임기 동안 또는 후임자가 선출되어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 봉사한다.

(다) 자격. 각 임원과 이사는 본 클럽의 모범적인 정회원이어야 한다. 클럽 회장직에 후보로 추천되기 위해서는 추천에 앞서 최소한 1년 이상 동 클럽의 회원으로 활동해야 한다. 단, 지구총재가 1년 미만의 회원경력이 추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경우는 예외이다. 클럽 회장의 임무와 책임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클럽 회장은 차기 지구총재로부터 출석을 면제받지 않는 한, 차기회장 연수회와 지구연수협의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만약 출석 면제가 허락되면 차기회장은 클럽이 지명한 대리인을 출석시켜 그 결과를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차기회장이 차기총재로부터 차기 회장 연수회와 지구연수협의회 출석을 면제받지 않고 불참하거나, 면제 받았음에도 대리인을 참석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클럽 회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현 회장은 그 후임자가 차기회장 연수회와 지구연수협의회에 완전히 참석하거나 정식으로 선출된 차기총재에 의해 교육을 받아 회장의 자격을 갖춘 후 회장직을 승계할 때까지 회장직을 계속 수행한다.

제6항 - 본 클럽의 위성클럽 관리 (해당될 경우). 위성클럽은 스폰서 클럽의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 (가) 위성클럽의 감독. 본 클럽은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위성클럽에 대해 일반적인 감독 및 지원을 제공한다.
- (나) 위성클럽 이사회. 일상적인 운영을 위해, 위성클럽은 매년 회원들 중에서 이사를 선출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세칙 규정에 따라 위성클럽의 임원들과 4 내지 6명의 다른 회원들로 구성된다. 이사회의 의장이 위성클럽의 최고 임원이 되며, 직전 의장, 차기 의장, 총무 및 재무가 나머지 임원이 된다. 위성클럽 이사회는 로타리 규범, 의무, 방침, 목표 및 목적에 의거하여, 그리고 본 클럽의 지도에 의하여 위성클럽과 그 활동의 일상적인 관리와 운영을 책임진다. 위성클럽은 본 클럽 내에서 또는 본 클럽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갖지 아니한다.
- (다) 위성클럽 보고 절차. 위성클럽은 매년 회원 현황,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재정 보고서 및 감사필 계좌 정보와 함께 본 클럽의 회장과 이사회에 제출하여 본 클럽의 연차 총회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본 클럽이 다른 보고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항 - 위원회. 본 클럽은 다음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클럽 관리
- 멤버십
- 홍보
- 로타리재단
- 봉사 프로젝트

또한 필요에 따라 추가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

제14조 회비

클럽의 각 회원은 클럽 세칙에 규정된 일정 금액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원 자격의 존속 기간

제1항 - 기간. 회원 자격은 다음의 규정에 의거하여 종결되지 않는 한 본 클럽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제2항 - 자동 종결

- (가) 회원 자격. 회원 자격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 자동적으로 종결된다
 - (1) 이사회는 클럽의 소재 지역 또는 주변 지역으로부터 전출하는 정회원이 로타리 회원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경우, 전출할 지역사회의 로타리클럽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1년 한도 내에서 출석 의무 규정의 특별 면제를 허가해 줄 수 있다.
 - (2) 이사회는 정회원이 클럽의 소재 지역 밖으로 전출해 나가더라도 로타리 회원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하면, 회원 자격을 계속 보유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 (나) 재입회 방법. 본 조항의 (가)항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회원 자격 상실 이전에 모범적인 회원이었을 경우, 동일 직업분류 또는 다른 직업분류로 회원 입회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다) 명예회원 자격의 종결. 명예회원의 자격은 이사회가 결정한 명예회원 자격 기간의 최종일에 자동적으로 종결된다. 그러나 이사회는 명예회원의 자격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사회는 언제든지 명예회원 자격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3항 - 자격 종결 - 회비 미납

- (가) 절차. 회원이 규정된 납부 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총무는 최종 확인된 주소로 서면 독촉을 해야 하며, 독촉 통지일 10 일 이내에 회비가 수금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의 재량으로 회원 자격을 종결시킬 수 있다.
- (나) 자격 회복. 이와 같이 회원 자격을 상실한 회원이 재입회 신청을 하고 클럽에 대한 납부금을 완납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재량으로 회원 자격이 회복될 수 있다. 단, 해당 직업분류가 정관 제 11조 2항과 상치되는 경우 이러한 재입회 회원은 원래의 직업분류를 보유한 정회원으로 복귀할 수 없다.

제4항 - 자격 종결 - 결석

[이 항의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제7조 ‘정기모임 및 출석에 대한 예외’ 참조]

- (가) 출석률. 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반드시
 - (1) 클럽 정기모임에 최소한 50 퍼센트 이상 출석 또는 출석보전을 하거나, 클럽 프로젝트, 기타 행사나 활동에 최소한 12시간 이상 참여하거나, 혹은 출석 및 참여를 합하여 이와 비등한 활동을 보여야 하며,
 - (2) 로타리연도 매 반기별로 클럽 또는 위성클럽 정기모임에 최소한 30퍼센트 이상 출석하거나 클럽 프로젝트, 기타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RI 이사회가 규정한 지역대표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회원이 위의 출석 의무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가 그 회원의 결석에 정당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회원 자격은 종결될 수 있다.

- (나) 계속적인 결석. 클럽 회원이 4회 연속 클럽 정기모임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가 정당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본 정관 제 12조 3항 또는 4항에 따라 출석을 면제받지 않는 한, 이사회는 해당 회원에게 결석으로 인한 본 클럽의 회원 자격 종결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 후 이사회는 과반수 투표로 그 회원의 자격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5항 - 자격 종결 - 기타 원인

- (가) 정당한 이유. 본 클럽의 회원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또는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이사회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로 해당 회원의 자격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사회는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제10조 1항, 네 가지 표준 그리고 로타리클럽 회원으로서 지켜야 할 높은 윤리적 기준에 의거하여 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 (나) 통지. 본 조항의 (가)항에 의거하여 어떠한 결정이 취해지기 전에 해당 회원에게 이러한 안건에 관하여 적어도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사회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다) 직업분류 총원. 이사회가 본 조항에 의거하여 회원의 자격을 종결시킨 경우, 본 클럽은 이의 제기 청문회 시한이 종료되어 본 클럽 또는 중재자의 결정이 공표될 때까지 해당 회원의 직업분류에 새 회원을 총원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사회의 회원 자격 종결 조치가 반복되더라도 새 회원의 직업분류에 따른 인원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6항 - 이의 제기 또는 화해, 중재를 통한 자격 종결

- (가) 통지. 총무는 이사회의 회원 자격 종결 또는 정지 결정이 있는 후 7일 이내에 이사회 의 결정을 서면으로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회원은 통지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총무에게 서면으로 클럽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화해를 요청하거나, 또는 본 정관 제19조에 규정된 중재를 요청할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
- (나) 청문회 개최 날짜. 이의가 제기되면, 이사회는 서면 접수 후 21일 이내에 개최되는 클 럽의 정기모임에서 이의 신청에 관한 청문회 날짜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클럽 정 기모임 개최와 특별 안건은 적어도 5일 이전에 서면으로 클럽의 모든 회원들에게 통 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의 제기가 심의되는 청문회에는 본 클럽의 회원만이 출석할 수 있다.
- (다) 화해 혹은 중재. 화해 혹은 중재의 절차는 본 정관 제19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다.
- (라) 이의 제기. 이의 제기의 경우, 클럽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모든 당사자들을 기속하며 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마) 중재인 또는 판정인의 결정. 중재가 요청된 경우, 중재인들에 의한 결정이나, 혹은 중 재인들이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판정인의 결정이 최종적이고, 이는 모든 당사자 들을 기속하며 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바) 성공하지 못한 화해. 만약 화해를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회원은 본 항(가)의 규정에 따라 클럽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7항 - 이사회 결정의 최종성. 클럽에 이의 제기가 없거나 또는 중재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 의 결정이 최종적이다.

제8항 - 탈퇴.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 또는 총무에게 탈퇴의사를 서 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는 해당 회원의 클럽에 대한 모든 미납금이 완납되었을 경우에 한해 이를 수리한다.

제9항 - 재산권의 상실. 클럽 가입 시 지역법에 따라 클럽의 기금 혹은 재산에 대한 권리 를 부여받았더라도, 어떤 이유든지 클럽의 회원 자격이 종결된 자는 본 클럽에 속한 모 든 기금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제10항 - 회원 자격의 임시 정지

본 정관의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회원 자격을 임시 정지시 킬 수 있다.

- (가) 회원이 본 정관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했다는 신빙성있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 혹은 회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행동이나 클럽의 이해에 불이익을 끼쳤다는 신빙 성있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
- (나) 그러한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 회원 자격 종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다) 사안이 현재 심의 중이거나 이사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 (라) 회원 자격에 관한 지지 및 반대 투표는 실시되지 않았지만,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임시로 정지시켜, 정기모임 참석을 비롯한 클럽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회원이 맡을 수 있는 직책이나 모든 임원직에서 사퇴시키는 것이 클럽을 위한 최상의 방법일 경 우.

이사회는 투표를 통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적절한 기간 동안 그리고 동일 사안에 대해 새로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회원의 자격을 임시로 정지시킬 수 있다. 자격을 정지당한 회원은 15조 6항에 명시된 대로 이의 제기, 화해,

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자격 정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사회는 해당 회원의 자격을 종결시킬 것인지 혹은 자격을 정상 복귀시킬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제16조 지역사회, 국가 및 국제 문제

제1항 - 적절한 주제. 지역사회, 국가 및 세계의 일반적인 복지 문제와 관련된 공공 문제는 클럽 회원들의 공동 관심사이므로, 이러한 공공 문제들을 클럽 회합에서 공정하고 지식적인 연구 및 토론의 적절한 주제로 삼아 모든 회원들이 밝은 식견을 갖게 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회원 각자가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 클럽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어떠한 공공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해서는 아니된다.

제2항 - 지지 불가. 본 클럽은 어떠한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할 수 없으며, 클럽 회합에서 그러한 후보자의 장단점을 논의해서도 아니된다.

제3항 - 비정치성

(가) 결의 및 견해. 본 클럽은 정치적 성격을 띤 세계 문제 또는 국제 정책에 관하여 결의 또는 견해를 채택하거나 배부할 수 없으며, 또한 이에 대한 단체 행동을 하여도 아니된다.

(나) 호소. 본 클럽은 정치적 성격을 띤 특정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다른 클럽, 국민 또는 정부에 호소할 수 없으며, 서신, 연설문 또는 건의서를 배부해서도 아니된다.

제4항 - 로타리 창립 목적 인식. 로타리 창립일인 2월 23일이 속한 로타리 창립 기념 주간은 세계 이해와 평화의 주간으로 알려져야 한다. 이 주간에 본 클럽은 로타리 봉사를 축하하며, 과거의 업적을 돌이켜보고, 지역사회 그리고 전세계적인 평화, 이해 및 선의에 관한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다.

제17조 로타리 잡지

제1항 - 의무 구독. 본 클럽이 국제로타리 세칙에 따라 국제로타리 이사회에 의해 본 조항 규정 이행을 면제 받지 않는 한, 본 클럽의 모든 회원들은 회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공식잡지나, 국제로타리 이사회가 본 클럽을 위하여 승인하여 지정한 잡지를 유료 구독하여야 한다. 2명의 로타리안이 같은 주소에 거주할 경우 공식잡지 또는 이들의 클럽 또는 클럽들을 위해 이사회가 승인, 지정한 로타리 잡지를 공동 구독할 수 있다. 구독료는 본 클럽의 회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국제로타리 이사회가 정하는 1인당 회비 납부 일자에 납부되어야 한다.

제2항 - 구독료 징수. 클럽은 각 회원으로부터 구독료를 사전 수급하여 국제로타리 사무국 또는 RI 이사회가 지정한 해당 지역잡지 사무국으로 송금하여야 한다.

제18조 강령의 수락과 정관 및 세칙의 준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로타리 강령에 나타난 로타리의 원칙을 수락하고, 클럽 정관 및 세칙을 준수하며 이에 기속을 받게 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비로소 회원은 본 클럽의 특전을 부여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정관 및 세칙 문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준수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9조 중재와 화해

제1항 - 분쟁. 현 또는 전 회원과 본 클럽, 클럽 임원 또는 이사회 사이에 이사회 결정 사항이 아닌 다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이미 규정된 절차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총무에게 화해나 중재를 요청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한다.

제2항 - 화해 혹은 중재 일정. 화해 혹은 중재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회는 분쟁 요청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화해 혹은 중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화해 혹은 중재를 위한 날짜를 결정한다.

제3항 - 화해. 화해를 위한 절차는 국가 혹은 지방 사법권 등 적절한 권위를 가진 기관이나, 분쟁 해결에 조예가 깊은 전문적인 기관이 추천한 절차, 혹은 RI 이사회나 로타리재단 이사회가 정한 문서화된 지침에 의거한 절차이어야 한다. 로타리클럽 회원만이 화해자(들)로 임명될 수 있다. 클럽은 지구총재나 지구총재 대리인에게 화해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로타리클럽 회원을 화해자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가) 화해 결과. 당사자들과 화해자는 화해를 통해 당사자들간에 이루어진 결정을 문서화하여 각각 사본 1부씩을 보관하며, 사본 1부는 이사회에 제출하고 1부는 클럽 총무가 보관한다.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한 화해 결과를 클럽에 보고하기 위한 요약서도 준비되어야 한다. 만약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화해 입장을 크게 후회할 경우, 클럽 총무나 회장을 통하여 화해를 또다시 요청할 수 있다.

(나) 성공하지 못한 화해. 만약 화해가 요청되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회원은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항 - 중재. 중재 요청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중재인(들)을 선임하여야 하며 중재인(들)은 판정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로타리클럽의 회원만이 중재인, 혹은 판정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5항 - 중재인 또는 판정인의 결정. 중재가 요청된 경우, 중재인들에 의한 결정이나, 혹은 중재인들이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판정인의 결정이 최종적이며, 이는 모든 당사자들을 기속하며 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20조 세칙

본 클럽은 클럽 운영을 위하여 국제로타리의 정관 및 세칙, RI가 수립한 관리 구역 규정, 그리고 본 정관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추가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세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그러한 세칙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제21조 해석

본 정관에서 사용된 우편, 우송, 그리고 우편 투표 등의 용어에는 비용 절감과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전자우편 (이메일)과 인터넷 기술의 활용을 포함한다.

제22조 개정

제1항 - 개정 방법. 본 조의 제2항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본 정관은 RI 세칙에 규정된 RI 세칙 개정을 위한 방법과 같이 규정심의회에서만 개정될 수 있다.

제2항 -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 본 정관 제2조 (명칭) 및 제4조 (소재지)는 본 클럽의 정속수가 출석한 정기모임에서 모든 투표 회원의 3분의 2의 찬성 투표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단, 개정안은 적어도 이것을 토의할 정기모임 개최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그리고 지구총재에게 우편으로 통고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국제로타리 이사회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을 때에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지구총재는 제안된 개정안에 대해 RI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권장 로타리클럽 세칙

조	제목	페이지
1	정의.....	89
2	이사회.....	89
3	선출 및 임기.....	89
4	임원의 임무.....	90
5	회합.....	90
6	회비.....	90
7	투표 방식.....	90
8	위원회.....	90
9	개정.....	91
10	회원 선출 방식.....	91
11	개정.....	91

로타리클럽 세칙

클럽 세칙은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보충하여 클럽의 일반적인 관행과 절차를 규정한다. 로타리클럽은 국제로타리 정관 및 세칙,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별도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그리고 로타리 정책 규약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세칙을 클럽 사정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다음은 세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조항들이다.

제1조 정의

1. 이사회: 본 로타리클럽의 이사회
2. 이사: 본 로타리클럽 이사회 멤버
3. 회원: 명예회원을 제외한 본 로타리클럽의 회원
4. 정족수: 표결을 위해 참석해야 하는 클럽 회원 수: 클럽 표결인 경우 클럽 회원의 3분의 1이며, 이사회 결의인 경우 이사회 이사의 과반수
5. RI: 국제로타리 (Rotary International)
6. 연도: 7월 1일에 시작되는 12개월의 기간

클럽은 또한 투표를 위한 정족수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조 이사회

이사회는 본 클럽의 관리 기구로서 최소한 클럽 회장, 직전 회장, 차기 회장, 총무 그리고 재무로 구성된다.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은 상기 조항이 클럽 세칙에 반드시 포함될 것을 요구한다. 상기 클럽 임원들은 반드시 클럽 이사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클럽 이사회는 부회장, 회장 피지명자, 사찰 등을 이사회에 추가시킬 수 있다. 위성클럽을 둔 경우 위성클럽의 임원들도 이 조항에 함께 명시한다.

제3조 선출 및 임기

제1항 - 회원들은 선거일로부터 1개월 전에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그리고 새로 임명이 필요한 이사직의 후보자를 지명한다. 지명은 지명위원회에 의해, 해당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에 의해, 또는 양자 모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제2항 - 각 직책에 대해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해당 임원직에 선출된 것으로 공표된다.

제3항 - 이사 또는 임원직에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나머지 이사들이 결정하여 충원한다.

제4항 - 차기 임원직 또는 차기 이사직에 공석을 생겼을 때에는 나머지 차기 이사들이 결정하여 충원한다.

제5항 - 각 직책별 임기는 다음과 같다.

- 회장 - 1년
- 부회장 - _____
- 재무 - _____
- 총무 - _____

사찰 - _____

이사 - _____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은 세칙에 반드시 선거 절차를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지명위원회 방식을 채택할 경우 지명위원의 임명 방식을 함께 명시한다. 클럽 회장의 임기는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에 1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4조 임원의 임무

- 제1항 - 회장은 클럽 모임과 이사회 회의를 주재한다.
- 제2항 - 직전 회장은 이사회 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제3항 - 차기 회장은 임기 연도를 준비하고 이사회 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제4항 - 부회장은 회장 부재 시 클럽 모임과 이사회 회의를 주재한다.
- 제5항 - 이사는 클럽 모임과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다.
- 제6항 - 총무는 회원 및 출석 기록을 담당한다.
- 제7항 - 재무는 모든 자금을 관리하고 연도별로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결산한다.
- 제8항 - 사찰은 클럽 모임의 질서를 유지한다.

클럽 임원의 직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로타리클럽 임원 매뉴얼을 참조한다.

제5조 회합

- 제1항 - 차기 로타리 연도 임원 및 이사 선출을 위한 클럽의 연차 총회는 12월 31일 이전에 개최된다.
- 제2항 - 본 클럽은 정기모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_____. 정기모임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클럽 전원에게 적절히 사전 통지한다.
- 제3항 - 이사회는 매월 회의를 갖는다.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혹은 이사 2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이러한 경우 적절한 사전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은 상기 제5조 2항을 클럽 세칙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제6조 회비

클럽 회원의 연 회비는 _____원이며, 다음과 같이 납부된다: _____. 클럽 회원의 연 회비는 RI 1인당 회비, 공식 영문잡지 또는 지역잡지 구독료, 1인당 지구 회비, 클럽 회비, 그리고 그 외 로타리 또는 지구의 1인당 청구액으로 구성된다.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은 상기 제6조를 클럽 세칙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제7조 투표 방식

클럽의 안건은 구두 또는 거수 표결로 처리한다. 단, 임원 및 이사의 선출은 투표에 의한다. 이사회는 일부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투표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위성클럽의 표결 절차도 이 조항에 함께 명시한다.

제8조 위원회

- 제1항 - 클럽 위원회들은 클럽의 연차 목표 및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클럽은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제 13조 7항에 명시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항 - 회장은 모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며, 위원이 갖는 모든 권리를 행사한다.

제3항 -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정규 회의와 활동을 책임지며, 위원회의 업무를 감독 및 조정하고, 위원회의 모든 활동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9조 재정

제1항 - 각 회계 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이사회는 예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연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2항 - 재무는 클럽 자금을 클럽 운영과 봉사 프로젝트 등 2개의 계정으로 분류하여 이사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3항 - 청구서는 임원 또는 이사 2명의 승인을 얻어 재무 혹은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임원에 의해 지불된다.

제4항 - 클럽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은 매년 자격있는 사람에 의해 철저히 검토된다.

제5항 - 클럽 회원들에게는 클럽의 연차 재무제표가 포함된 재정보고서가 제공된다.

제6항 - 회계 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제10조 회원 선출 방식

제1항 - 회원이 가입 후보자의 이름을 이사회에 추천하거나 혹은 타 클럽이 이적하는 회원 또는 전 회원을 추천한다.

제2항 - 이사회는 30일 이내에 후보자의 회원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추천자에게 통보한다

제3항 - 이사회가 가입을 승인하면, 동 예비 회원은 클럽 가입을 위해 초대된다.

해당 추천에 대한 기존 회원의 반대 절차를 이곳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1조 개정

본 세칙은 클럽의 정기모임에서 개정될 수 있다. 클럽 세칙을 개정하려면 개정 사실을 해당 모임으로부터 1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 통지한 후, 투표 정족수가 모임에 출석하고, 그 중 3분의 2 이상이 개정안에 찬성하여야 한다. 본 세칙의 개정은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과 국제로타리 정관 및 세칙, 그리고 로타리 정책 규약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6 국제로타리 로타리재단의 세칙

조	제목	페이지
1	법인의 목적	93
2	회원	93
3	재단 이사회	93
4	재단 이사회 회의	95
5	법인의 임원	96
6	위원회	97
7	재단 이사회와 법인회원 이사회의 합동 위원회	98
8	재무 보고	99
9	기타	99

국제로타리 로타리재단의 세칙

(2010년 11월 개정본)

제1조 법인의 목적

제1.1항 - 목적. 본 법인의 목적은 법인 설립 규약에 규정된 바와 같다.

제2조 회원

제2.1항 - 회원. 본 법인은 “법인회원”이라 일컫는 한 분류의 회원만을 가지며, 이 분류에 속하는 회원은 단 하나이다. 최초의 법인회원은 일리노이주의 비영리법인인 국제로타리 또는 통합, 정리, 명칭 변경에 따른 그 계승자이다. 어떠한 이유로든 법인회원이 공석이 될 경우 본 법인의 이사회가 법인회원을 새로 선출한다.

제2.2항 - 선출 및 임명. 매년 법인회원은 임기가 만료되는 재단 이사를 대체하고 공석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재단 이사를 임명한다. 법인회원에 의한 이러한 결의는 연례 회의에서 행해진다.

제2.3항 - 결의 방법. 법인회원은 본 항의 규정과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RI 이사회의 과반수 투표로 결의한다. 법인회원 중 1명의 임원이 결의 내용을 진술하여 서명한 문서로 이 법인의 의장 또는 사무총장에게 통고한다.

제2.4항 - 법인회원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재단 이사회의 다음 조치들은 법인회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재단 재산의 지출. 단, 다음은 예외이다.

- 1) 재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 2) 증여 또는 유증이라는 조건이 붙은 재단 기부 수익 또는 원금의 지출은 모두 재단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충분하다.

(나) 법인 설립 규약 또는 세칙에 있는 조항을 개정 또는 다시 수정하는 경우

(다) 법인의 모든 실질적 재산을 통합하고 정리하며, 해산 또는 매각, 임대차교환, 저당을 잡히거나 담보물로 제공할 경우

(라) 법인 설립 규약에 설명되어 있는 목적을 위하여 제안된 본 법인의 모든 프로그램 또는 사업과 활동 등을 공표하기 전에 또는 기금이 조성되기 전에 실시할 경우

제2.5항 - 법인회원의 책임. 법인회원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가) 국제로타리의 임원과 모든 로타리안들에게 개인적인 참여와 재정적인 기부를 통하여 재단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또는 각종 활동들을 후원하고 클럽 및 지구 활동, 국제회의, 지도력 개발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간행물 등을 통해 재단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홍보할 것을 권장한다.

(나) 재단 이사회에 재단의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또는 활동을 제안한다.

제3조 재단 이사회

제3.1항 - 일반 권한. 본 법인의 이사는 재단 이사회라고 한다. 본 세칙 제2.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어떤 사안에 대해 법인회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법인의 모든 업무는 재단 이사회에 의해 처리된다.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재단 이사회는 1986년의 일리노이주 일반 비영리법인법 또는 미국 일리노이주가 채택하

는 그 이후의 법에 따라 현재 또는 앞으로 재단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단, 이러한 권한은 로타리재단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거나 1986년 미국 내국세 징수법 제501조 (c)3항에서 규정한 단체로서의 자격에 부합되는 재단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 (가) 재단의 모든 기금과 재산을 보관하고, 투자, 관리, 운용한다. 이러한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재단 이사회는 법령이나 재단 세칙이 인정하는 권한 이외에 다음 사항들을 이행할 권한이 있다.
- 1) 최대한 많은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되는 가격과 조건 그리고 기타 방법으로 재단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 양도 또는 교환하는 일
 - 2)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위임장 발행, 대리권의 부여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일
 - 3) 재단 기금의 투자로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대부, 증권 또는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채투자하는 일
 - 4) 재단에 들어오는 자금 또는 재산을 재단의 일반 목적 달성을 위한 비제한기금으로 보유할 것인지 또는 특별 목적 사업을 위한 제한기금이나 중여기금으로 보유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비제한 또는 제한 기금에 대한 경비나 손실 금액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충당하거나 할당하는 일
 - 5) 법인의 기금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재단 이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관할법이 허용하는 권한을 위임받는 투자 매니저를 고용하는 것을 포함한 적절한 중개인과 대리인을 선정하고 고용하며, 그들에게 합당한 보수와 비용을 지급하는 일
 - 6) 재단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을 위하여 예산을 채택하고 기금을 충당하는 일
 - 7) 법인회원의 이사회가 달리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 한, 재단 이사회의 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재단 운영비를 재단 기금에서 지급하는 일
- (나) 비록 수탁인이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단을 대신하여 수탁인으로서의 입장을 평가, 수용, 거절하거나 일리노이주 신탁법과 기타 적용 가능한 일리노이주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모든 합법적인 수탁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며, 수탁인의 자격이든 기타 다른 자격이든 재단이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할 때 어떤 재산이나 기금 또는 기타 법적 또는 수익상의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양도를 거절, 승인 또는 보류할 수 있다.
- (다) 공동 투자 기금과 같은 투자 합작 활동을 시작하거나, 이를 관리, 경영하거나, 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 (라) 재단의 모든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그리고 활동을 관리한다. 단, 재단 이사회의 대리인으로서 법인회원이 또는 이들 양자의 협조하에 관리하기로 재단 이사회와 법인회원이 동의한 재단의 특정 프로그램이나 사업 또는 활동 등은 예외이다.
- (마) 재단이 기금을 마련한 모든 프로그램, 사업 그리고 여러 활동을 계속 평가하고 재단이 지급한 모든 장학금과 보조금에 관하여 법인회원에게 매년 보고한다.
- (바) 로타리재단을 발전시키고 재단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며 재단을 후원해 준 개인과 로타리클럽, 그리고 기타 여러 사람 등을 적절히 표창한다.
- (사) 재단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또는 활동을 개발하고 새로 제안하는 데 1차적인 책임을 진다.
- (아) 전세계 어떤 국가나 지역에서 관련 하부조직 또는 기타 자선 단체, 재단, 신탁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를 설립하거나 이와 제휴할 수 있다.

(자) 법인회원 이사회가 제출한 재단과 관련된 결의안이나 재단 관련 세칙 및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규정심의회가 심의하기 전에, 심의, 승인한다. 만약 그러한 개정안과 결의안을 다른 관계자가 제안하였을 경우 재단 이사회와 법인회원 이사회는 규정심의회가 심의하기 전에 그러한 개정안에 대하여 공동으로 심의한다.

(차) 재단 이사회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재단 운영을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추가로 채택하고 개정한다. 단, 그 세칙과 규정이 법인회원의 정관과 세칙 또는 재단법인 설립 조항과 본 세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제3.2항 - 인원수, 임명, 그리고 임기. 재단 이사는 15명이다. 재단 이사는 법인회원의 회장이 법인회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재단 이사들 중에서 4명은 법인회원의 전 회장이어야 한다. 재단 이사의 임기는 4년이다. 재단 이사는 임기 만료 후에 재임명 될 수 있으나, 그런 경우 그들은 본 항과 본 세칙 제3.3항에 규정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각 재단 이사는 사망하거나 사임 또는 임무 수행 불능으로 해임될 때까지 자격 상실 사유가 없다면 임기 동안 또는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갖게 될 때까지 이사직을 보유한다.

제3.3항 - 자격 요건. 모든 재단 이사는 로타리클럽의 명예회원이 아닌 정회원이어야 한다. 모든 재단 이사는 풍부한 로타리 경험을 갖고 있으며, 특히 재정이나 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각종 활동 분야의 관리직 및 정책 결정의 경험이 있는 로타리안이어야 한다. 재단 이사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임명되어야 한다.

제3.4항 - 사임. 재단 이사는 누구나 재단 이사회 회의에서 구두로 사임하거나 본 법인의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사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재단 이사의 사임은 정식으로 수리되지 않아도 그러한 의사 표시를 한 경우 발효되는 것으로 한다.

제3.5항 - 해임. 본 세칙 제3.3항에 설명된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재단 이사는 법인회원 또는 나머지 재단 이사의 결의없이 그 시점에서 재단 이사의 직위를 상실한다. 본 조항에 의해 재단 이사의 자격이 상실되면 본 세칙 제3.6항에 따라 교체되어야 한다. 재단 이사회 및 법인회원의 판단에 따라 어느 재단 이사가 신체적 장애가 있어 임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다고 간주될 경우 해당 재단 이사는 이러한 결정에 따라 재단 이사직에서 사퇴하여야 하며 본 세칙 제3.6항의 규정에 따라 교체된다. 충분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청문할 기회가 주어짐), 모든 재단 이사들과 관련 위원에게 통보한 경우, 법인회원 이사회의 4분의 3의 찬성 투표로 재단 이사를 해임시킬 수 있다. 그러한 해임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법인회원의 차기 국제대회에서 과반수 투표로 비준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3.6항 - 결원. 사망, 사임, 자격상실, 임무 수행 불능 또는 해임 등으로 인한 재단 이사의 결원은 본 세칙 제3.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법인회원이 잔여 임기를 맡을 사람을 임명한다. 후임 재단 이사는 모든 권리와 재량권을 가지며 전임자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임무를 갖는다.

제3.7항 - 이사장. 재단 이사회는 매년 재단 이사들 중에서 1명을 차기 재단 이사장으로 선출한다. 차기 재단 이사장은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된 다음 연도에 이사장이 된다.

제3.8항 - 보수. 재단 이사는 무보수로 봉사한다.

제4조 재단 이사회 회의

제4.1항 - 연례 회의. 재단 이사회는 매년 동 위원회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연례 회의를 개최하며, 그 장소는 일리노이주 안이거나 밖이 될 수 있다.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

고 여결 경우, 재단 이사회와 법인회원의 이사회는 연례 회의 기간 동안 합동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2항 - 기타 회의. 재단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재단 이사들의 과반수가 다른 재단 이사들에게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수시로 소집될 수 있다.

제4.3항 - 회의 공고. 서면 통보가 면제되지 않는 한, 모든 재단 이사회 회의의 개최 시간(날짜와 시간)에 대한 서면 또는 인쇄물 통지서는 회의 개최일 최소한 30일 전에 해당 위원의 거주지나 통상적인 사업장으로 우송되거나, 혹은 회의 개최일 최소한 20일 전에 전신, 전화 또는 개별적인 전달 방법으로 해당 이사에게 전해져야 한다. 특별 회의를 알리는 경우는 적어도 회의 10일 전까지 통지서가 우송될 수 있도록 하거나 6일 전까지 전보나 전화로 통보하여야 한다. 재단 이사가 회의에 참석하면 통지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회의가 정당하게 소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의 처리를 반대할 목적으로 이사가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제4.4항 - 정족수와 결의 방법. 그 당시 자격이 있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단 이사들의 과반수가 모든 재단 이사회 회의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족수가 되며, 재단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모든 문제는 본 세칙이나 규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출석 재단 이사의 과반수 찬성 투표로 결정된다. 정족수가 안될 경우,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족수가 될 때까지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회의가 연기된 경우, 통지할 필요가 없다.

제4.5항 - 비공식 결의. 재단 이사회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안건들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투표 자격이 있는 재단 이사 전원이 그 사안이 기재되어 있는 서면에 동의 서명을 할 경우,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서도 결의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그 문제가 기존의 방침에 속할 경우 우편 투표를 발송할 권한이 있다. 그 문제가 기존의 방침 밖일 경우 재단 이사장이 우편 투표를 실시할 것인지 또는 다음 재단 이사회 회의 때까지 보류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제4.6항 - 전화를 이용한 회의. 회의에 참가하는 모든 재단 이사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회의용 전화나 기타 통신 장비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재단 이사회 회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또한 결의할 수 있다. 이러한 원거리 통신 방법에 의한 회의는 재단 이사들이 실제로 회의에 직접 참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7항 - 회의 주재자. 재단 이사장이 모든 재단 이사회 회의를 주재한다. 이사장, 차기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이 없을 경우 재단 이사들이 이사 중에서 임시 이사장을 선출한다.

제5조 법인의 임원

제5.1항 - 호칭. 본 법인의 임원은 재단 이사장("의장"), 차기 이사장, 부이사장, 그리고 사무총장이다.

제5.2항 - 선거, 임기, 그리고 보수. 차기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1년 임기로 매년 재단 이사회가 선출한다. 차기 이사장은 부이사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차기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임기는 선출 후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차기 재단 이사장으로 선출된 재단 이사는 차기 이사장으로서 1년 봉사를 후, 1년 임기의 이사장에 취임한다. 부이사장의 임기는 1년이다. 사무총장은 법인회원의 이사회가 선출하며 법인회원의 사무총장과 동일인이다. 각 임원은 사망하거나 사임 또는 임무 수행 불능으로 자격상실이나 해임되지 않으면 임기 동안 또는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갖출 때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이

사장과 차기 이사장, 그리고 부이사장은 무보수로 봉사한다. 사무총장의 보수는 법인 회원이 결정한다.

제5.3항 - 사임. 임원은 누구나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사임을 표명할 수 있으며, 그의 사임은 정식으로 수리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의사 표시를 한 경우 발효되는 것으로 한다.

제5.4항 - 해임. 이사장과 차기 이사장 그리고 부이사장은 이유 유무에 상관없이 재단 이사회 회의에서 재단 이사들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법인회원의 이사회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제5.5항 - 결원. 이사장직이 공석일 경우, 차기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승계한다. 그 외 임원직의 결원은 잔여 기간 동안 후임자에 의해 보충되며, 그 임원을 선출하고 임명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후임자를 선출하여 임명한다.

제5.6항 - 이사장. 이사장은 법인의 최고직 임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가) 재단 이사회를 대표한다.
- (나) 모든 재단 이사회 회의를 주재한다.
- (다) 사무총장에게 조언한다.
- (라) 이사장으로서의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이사장은 재단의 다른 재단 이사나 임원에게 이사장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사장은 모든 상임 위원회와 임시 위원회의 위원들을 임명하며,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되나, 투표권은 가부동수일 경우에만 행사한다. 이사장은 긴급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재단 이사회나 집행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재단 이사회를 대신하여 이에 대해 조치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재단 법인 설립 규약과 세칙, 그리고 RI 정관 및 세칙에 포함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 의거한 조치는 10일 이내에 재단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5.7항 - 차기 이사장. 차기 이사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차기 연도 이사장으로서의 임기 준비 및 계획 수립
- (나) 이사장 또는 재단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 수행

제5.8항 - 부이사장. 부이사장은, 재단 이사회가 개최되었을 때 또는 다음 재단 이사회가 개최될 때까지, 이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이사장을 대신하여 활동한다. 그 밖에, 이사장이나 재단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9항 -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재단의 최고 운영 임원으로서, 재단 이사회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재단 이사회에 방침을 집행하고 재단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책임진다.

제5.10항 - 기타 임무. 상기에 열거된 임무와 권한 이외에 법인의 여러 임원들은 재단 이사회가 수시로 위임하거나 결정하는 또는 이사장이나 기타 상위직 임원이 그들에게 부여하는 임무와 권한을 본 세칙에 따라 이행한다. 재단 이사회를 대신하여 일을 처리하는 임원은 누구나 그 일에 관한 처리 사항을 다음 재단 이사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제6.1항 - 위원수 및 임기. 법인의 재단 이사회는 법인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위원회들을 수시로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규정할 수 있다. 각 위원회의 위원 수와 임기는 재단 이사회가 정한다. 단, 위원회 위원들의 과반수가 재단 이사로 구성되지 아니한 어떠한 위원회도 법인의 운영에 대한 재단 이사회회의 권한을 보유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제6.2항 - 위원회 구성. 이사장은 위원회 위원과 소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고, 각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명한다. 각 위원회는 적어도 2명의 재단 이사로 구성된다.

제6.3항 - 회의.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재단 이사장이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그리고 그 통보에 따라 회의를 갖는다. 위원회의 과반수로 정족수가 구성되며 정족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출석 위원 과반수의 결의가 그 위원회의 결의가 된다.

제6.4항 - 상임 위원회. 연례 회의 또는 기타 회의에 참석한 재단 이사의 과반수 찬성 투표에 의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인은 집행 위원회, 재정 위원회, 프로그램 위원회, 개발 위원회, 그리고 스텝어드십 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의 위원 수와 임무는 재단 이사회가 수시로 정할 수 있다.

제6.5항 - 임시 위원회. 재단 이사장은 수시로 임시 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위원과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들 위원회는 항상 투표권이 있는 재단 이사와 재단 이사장의 재량에 따라 투표권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비 재단 이사로 구성된다.

제7조 재단 이사회와 법인회원 이사회의 합동 위원회

제7.1항 - 위원 자격과 임기. 재단 이사회와 법인회원 이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재단 이사회와 법인회원 이사회의 합동 위원회가 설치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합동 위원회는 3명 내지 5명의 법인회원 이사와 동수의 재단 이사들로 구성된다. 합동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이사는 법인회원의 회장이 임명하며 재단 이사는 재단 이사장이 임명한다. 합동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재임명 될 수 있다.

제7.2항 - 권한. 합동 위원회는 재단 이사회와 이사회의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며 재단 이사회와 법인회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권고 의견을 제출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7.3항 - 회의. 합동 위원회는 법인회원의 회장과 재단 이사장의 공동 소집으로 회의를 갖는다.

제7.4항 - 결원. 재단 이사장과 법인회원의 회장은 각각 그들이 임명한 회원이 사망하거나 사임 또는 임무 수행 불능으로 자격상실이나 해임될 경우 그 결원을 보충할 권한이 있다.

제7.5항 - 통고. 서면 통보가 면제되지 않는 한, 모든 위원회 회의의 개최 시간(날짜와 시간)에 대한 서면 또는 인쇄물 통지서는 회의 개최일 최소한 30일 전에 해당 위원의 거주지나 통상적인 사업장으로 우송되거나, 혹은 회의 개최일 최소한 20일 전에 전신, 전화 또는 개별적인 전달 방법으로 해당 위원에게 전해져야 한다.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면 통지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회의가 정당하게 소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의 처리를 반대할 목적으로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제7.6항 - 정족수와 결의 방법. 합동 위원회에 임명된 재단 이사와 법인회원 이사들의 과반수가 모든 회의에서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족수를 구성하며, 정족수가 참석한 모든 회의에서 출석 위원 과반수의 결의가 합동 위원회의 결의가 된다. 정족수가 안될 경우,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족수가 될 때까지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회의가 연기된 경우, 통지할 필요가 없다.

제8조 재무 보고

제8.1항 - 장부와 회계 기록. 재단 이사회는 법인에 접수된 모든 재산이 오로지 법인 설립 규약에 규정된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단의 영수증, 지출 및 투자 내역 그리고 기타 모든 재산의 정확한 장부와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8.2항 - 보고. 재단 이사회는 법인회원의 이사회에 재단의 지출 현황과 재단 목적을 증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8.3항 - 회계감사. 본 법인은 매년 운영비로 법인회원의 회계감사를 위하여 고용한 회계사로 하여금 재단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재단 이사회와 법인회원 이사회에 배포하고 그 보고서를 적당한 형식으로 발행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제8.4항 - 보증서. 재단 이사회는 재단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보증서의 필요성과 그 금액을 결정하고 재단 관리비의 예산에서 보증서의 비용을 지급한다.

제8.5항 - 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법인회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8.6항 - 예산. 재단 이사회는 매년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채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그 예산을 수정할 수 있다.

제8.7항 - 법인회원의 봉사에 대한 비용 상황. 재단은 법인회원들에게 제반 운영비와 재단 이사들이 신청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재단 이사회가 재단의 연간 예산을 채택할 때 이러한 경비 예상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산액에 따라 재단 이사회는 회계연도 동안 수시로 이러한 비용을 지급한다. 회계연도 말에 재단과 법인회원이 공동으로 심의하고 회계감사를 한 후, 초과액이든 부족액이든 예산과 실제 봉사 활동 경비 사이에 발생한 차액을 적의 조정한다.

제9조 기타

제9.1항 - 면책. 재단은 본 조항과 관련된 1986년 일리노이주 비영리법인법 또는 미국 일리노이주가 채택한 승계 법에서 인정하는 최대 한도까지 현 및 전 재단 이사와 임원들에게 손해가 없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재단은 재단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동 비영리법인법에서 인정하는 최대 한도까지 모든 위원회 위원 또는 대리인에게 손해가 없도록 보장해 줄 수 있다. 재단은 재단 이사회가 수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원 및 이사의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2항 - 인감. 재단의 인감은 재단 이사회가 수시로 채택하는 것으로 한다.

제9.3항 - 보조금 방침.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이나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가) 로타리안. 단, 재단 이사회가 인정하는 모든 자원봉사자는 예외로 한다.

(나) 클럽, 지구, 그리고 기타 로타리 단체 또는 국제로타리의 직원.

(가) 또는 (나)항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의 배우자, 직계 비속(적자·적손 및 모든 합법적인 양자), 직계 자손의 배우자 또는 존속(혈연 관계에 있는 부모나 조부모).

제9.4항 - 세칙 개정. 재단 이사회는 본 세칙을 시기에 맞게 수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검토할 수 있다. 재단 이사회가 그 수정을 승인하면 그 개정안은 법인회원 이사회에 회부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칙의 개정안이 법인회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법인회원의 정관이나 세칙의 규정에 위배되는 세칙은 규정 심의회에서 승인을 받기 전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색인

색인

1인당 지구 회비 62
1인당 회비 납부일 68
5년 재정 전망 70
5개년 계획의 규정심의회 제출 70
5대 봉사 7, 77~78

(ㄱ)

가장 훌륭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거두어 들인다 3

감사보고서 70
강령 6, 11, 77
개최지 선정 30, 38, 60
결의 보고서 38
결의심의회 30~33, 37, 61
결의안 22, 30~31, 50, 61
결의안 검토 31
결의안 제안자 30~31
결의안 제출 마감일 30
결의안 채택 31
공식잡지 72
과반수 득표 31, 41, 44, 46, 50~53, 57,
60
관리 13, 17, 27, 39, 58~60, 62, 66~67,
70
교체 위원 42, 44~45, 51, 61
교체 이사 23, 49, 50~53
구독 의무 72~73
국제대회 13~14, 23~26, 38~41, 48, 58,
65~66, 69
국제대회 대의원 39
국제대회 등록비 38, 40
국제대회 임원 39
국제대회 정족수 40
국제대회 특별 대의원 13, 40
국제대회 프로그램 41
국제로타리 모토 3, 7
국제로타리 사명 7
국제로타리 세칙 17
국제로타리 정관 11
국제봉사 78
국제협의회 71
규정심의회 14, 22, 27, 28~34, 36~38

규정심의회 대의원 30
규정심의회 의원 31, 35~36, 70
규정심의회 임원 32, 35
규정심의회 절차 36
규정심의회에 회부되지 않는 입법안 29

(ㄴ)

납부일 67~69
네 가지 표준 6

(ㄷ)

대리인 39, 61
대의원 32~34, 39~41, 48
대의원 선출 34~35, 39, 61
대의원 자격 14, 33, 40
대의원 좌석 41
도전 후보자 26, 46~48, 52~53, 55~56

(ㄹ)

로타리 강령 6, 11, 77
로타리 목적 6, 11
로타리 연수회 70~71
로타리 웹사이트 73
로타리 잡지 72~73, 86
로타리 지도 원리 3
로타리재단 7, 19, 28, 32, 44, 60, 63,
66~67, 73, 81, 93
로타리재단 모토 7
로타리재단 모토 7
로타리재단 사명 7
로타리재단 세칙 93
로타리재단 이사 28, 32, 44, 66~67, 73
로타리클럽 세칙 89
로타리클럽 정관 77
로타리클럽 정관의 채택 17
로타리클럽의 목적 7

(ㄴ)

멤버십 위원회 66
면책 74, 99
명예회원 12, 14, 20~21, 79, 83~84, 95

명칭 및 휘장 11~12, 18, 19, 70~72, 77, 87
모범 로타리안 63
무임소 의원 31~32, 36

(ㅂ)

법인 목적 93
부총재 26
부회장 선임 24~26, 39, 41, 54, 82, 89
분쟁 43, 74~75
비례 할당 회비 69
비상 사태 13, 69
비정치성 86

(ㄷ)

사무총장 20~32, 34~35, 37~42, 44~48, 50~54, 57~58, 61, 63, 66, 70, 72, 74, 93
사회봉사 3~5, 7, 78
사회봉사 성명서 3, 5
선거 심사 절차 41~43, 47, 65
선거 운동 41~43
선거인 13, 34~35, 38, 40~41, 50~51, 54~56, 61~62
수정안 제출 29~30, 36
신규 클럽 17~18, 64, 69, 81
심의회 결의 36~37, 49
심의회 결의 발효 37~38
심의회 결의 효력 유보 37
심의회 결의에 대한 반대 37~38

(ㄹ)

업무 처리 66
여론 조사 2
연차 보고서 27, 62~63, 70
연차 총회 79, 90
예기치 못한 상황 69
예산 12, 68~70, 91, 94, 99
예산 공표 69
예산 수정 69
예산 지출 69
예외 12, 18, 20~25, 38, 61, 76, 78~80, 82, 84, 89, 93~94, 96, 98~99
우편 투표 15, 22, 25, 28, 30~31, 35, 37, 43~44, 46~49, 51~56, 58~59, 63, 65, 87, 96

운영 심의 위원회 65, 67
운영위원회 32, 36
위성클럽 20~21, 77, 79~84, 89~90
위성클럽 회원 79
위원 22, 32, 34, 36, 40, 42, 44~46, 50~51, 55, 61~62, 65~66, 71, 81
위원 임기 45, 50, 65~66
위원 자격 32~33, 98
위원회 보고서 26, 43, 47
유사한 입법안 29
유세 42
의사규칙 33, 36
의사진행법 전문가 32~35
이사 23, 25, 32, 49, 50~53, 65
이사 지명 49, 53
이사직의 공석 23
이사회 79
이사회 결의안 심사 31
이사회 결정 84
이사회 권한 25
이사회 심의 42
이사회 입법안 심사 29
이사회 회의 23
이사회 권한 21
이사회 의 예산 채택 69
이의 제기 36, 42~43, 75, 82~83
이적 로타리안 20, 69, 80
이중 회원 20
이중 회적 79
일반 잉여금 12, 69~70, 73
임무 수행 불능 52
임시 회의 38
임원 13, 24~25
임원 공석 24~25
임원 공석 25
임원 보수 25
임원 선출 24, 40~42, 82
임원 자격 24
임원 지명 41
입법안 검토 29
입법안 공표 29
입법안 규정심의회 회부 29
입법안 심의 30
입법안 제안자 28
입법안 종류 27
입법안 채택 30

(ㄹ)

자격 요건 42, 63
 자격 정지 19
 자격 존속 기간 83
 자격 종결 19, 83
 자격심사 위원회 40, 36
 자격요건 12, 44, 57, 63, 73, 83, 95
 자동 종결 83
 잡지 구독 72~73, 90
 재단 7, 14, 19, 28, 32, 44, 60, 63, 66~67,
 73, 81, 93
 재단 목적 73
 재단 이사 28, 32, 44, 66~67, 73, 94~95
 재단 이사직의 공석 73
 재단 이사회 28, 32, 44, 66~67, 73
 재단 이사회 73, 93~95
 재단 이사회 보고서 74
 재무 27
 재무 선임 24
 재정 27, 59, 62~63, 65~68, 91
 전 회장 32
 전 회장 심의회 71
 전략 계획 위원회 66
 정관 및 세칙 위원회 32, 36
 정관 및 세칙의 승인 12
 정기모임 78
 정식으로 제안된 결의안 31
 정식으로 제안된 입법안 28
 정족수 36, 46, 66
 정회원 12, 14, 20~21, 62, 79, 83
 제정안의 채택 38
 존 경계 49
 존 구역 49
 존 재조정 49
 중재 74~75, 86
 지구 59
 지구 경계 59
 지구 기금 62
 지구 재정 62
 지구 재정의 연차 보고 62
 지구 회비 62
 지구대회 60~61
 지구연수협의회 60
 지구의 입법안 승인 28
 지구의 클럽 결의안 승인 30
 지구입법회 60~61

지구총재 13, 19, 21, 24~28, 33~35, 37,
 43, 50~59, 64
 지구총재 공석 25
 지명 부적격자 44
 지명위원회 25, 42~43, 50, 52, 54
 지명위원회 절차 25, 50
 지적 소유권 70~71
 직업봉사 78
 직업분류 80
 집행위원회 23
 징계 19

(ㄷ)

차기 회장 25, 27, 48, 49
 차기회장연수회 60
 청소년 봉사 78
 청소년과의 활동을 위한 행동 선언문 7
 총재 임무 64
 총재 자격 63
 총재 지명 54
 총재 추천 55
 총재 피명자 57
 최격격 로타리안 41, 46, 55
 추가 회비 68
 출석 78, 80~81
 출석 면제 81
 출석 보전 80
 출석보고서 20

(ㄴ)

클럽 관리 위원회 83
 클럽 로타리재단 위원회 83
 클럽 멤버십 위원회 83
 클럽 보고서 68
 클럽 봉사 프로젝트 위원회 83
 클럽 위원회 83, 90
 클럽 임원 선출 89
 클럽 임원 임기 89
 클럽 임원의 임무 90
 클럽 투표 45, 48, 53, 57
 클럽 홍보 위원회 83
 클럽봉사 78
 클럽의 권리 포기 19
 클럽의 소재지 17
 클럽의 합병 18

(㉔)

- 타클럽 출석 20
- 통화 69
- 투표 41
- 투표 절차 46, 61
- 투표권 13, 21, 23, 30~37, 39~41, 45, 48, 50~51, 53, 57, 61~62
- 투표용지 40, 45, 48, 51, 53~54, 56~57
- 투표위원회 37, 40, 45, 48, 57
- 특별 대의원 13, 40
- 특별 선거 58
- 특별 협의회 41
- 특별위원회 65, 66
- 판정인 75, 87
- 표준 클럽 정관에 대한 예외 18
- 표준 클럽 정관의 개정 17

- RI 11, 17, 77
- RI 위원회 65
- RI 이사회 12, 21, 43, 66, 74, 80, 84, 86
- RI 임원 13, 24, 33, 40, 42, 45, 64, 81
- RI 전략 계획 21~22, 66~67
- RI 직원 42
- RIBI 13, 24, 28, 44, 59, 64
- RI에 대한 가입 신청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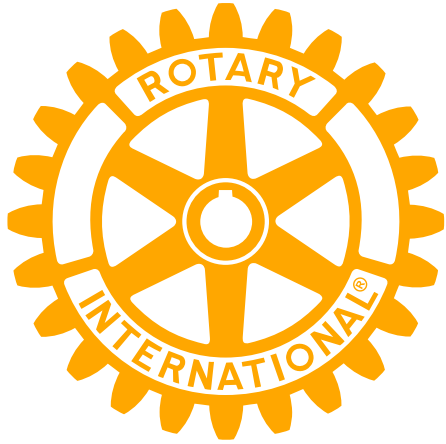
(㉕)

- 하자있는 결의안 31
- 하자있는 입법안 28
- 핵심 가치 6
- 화해 74, 87
- 회계 감사 70
- 회계 감사 위원회 67
- 회비 14, 68, 83, 90
- 회원 11, 12, 14, 20~21, 62, 79, 83
- 회원 1인당 회비 68
- 회원 권리 및 특전 21, 79
- 회원 선출 91
- 회원 자격 12, 13 14, 17, 19~21, 35, 37, 40, 45, 71, 79
- 회원 종류 20
- 회원 호칭 14
- 회의 절차 46, 71~72
- 회장 24, 27, 32
- 회장 권한 25
- 회장 지명 43~44
- 회장 지명위원회 44
- 회합 78, 79
- 후보자 선서 43
- 회장 14

Rotary



**One Rotary Center
1560 Sherman Avenue
Evanston, IL 60201-3698 USA
www.rotary.org**



2016 절차 요람